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18.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8.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1.3조원, 총지출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년도 본예산보다 총지출을 41.7조원(9.7%) 확대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면한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국가채무·재정수지·의무지출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대책 등 주요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각의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8

II. 주요 현안 분석 / 12

- 1.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12
 - 1-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15
 - 1-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17
- 2.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23
 - 2-1.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프로그램)의 사업관리 철저 25
 - 2-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31

III. 개별 사업 분석 / 38

- 1.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38
- 2. 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의 출연금 편성 법적근거 미흡 42
- 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사업추진 시기 조정 필요 46
- 4. 미래환경산업 펀드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51



CONTENTS

5.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등	56
6.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마련 필요	61
7.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64
8.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사업 추진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70
9.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 명확화 필요	73
10.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조정 필요 등	76
11. 물관련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통합 검토	80
12.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85
12-1.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규정 준수 필요	86
12-2.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필요	92
12-3.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95
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98
13-1. 환경산업연구단지 폐수처리비용의 명확한 산출 근거 마련 필요	100
13-2.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의 개발·보급 수요를 감안한 과제발굴 필요	104
13-3.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수수료 수입액 과다 편성 개선 필요	107
14. 환경정책융자금 사후 관리감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11
15. 국립생태원 생태미디어체험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20
16.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123
16-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23
16-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방식 개선 필요	127



CONTENTS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 131

- 1. 현 황 13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6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7

II. 주요 현안 분석 / 140

- 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40
 - 1-1. 실업급여 계정의 적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141
 - 1-2. 고안직능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44
-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등 146
 - 2-1.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구직급여 예산안 심사 필요 147
 - 2-2.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150

III. 개별 사업 분석 / 155

- 1.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취업률 제고 가능성 검토 필요 155
-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신규 가입자 중점 지원 노력 필요 등 159
-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등 163
-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 관리 철저 필요 169
- 5.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 계획 철저 마련 필요 173
- 6.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177
- 7.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발달장애인 등 타 장애 유형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등 .. 180
- 8.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84

CONTENTS

9. 법령 개정 추이를 고려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안 심사 필요	187
1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사업 계획 마련 철저 필요 등	192
1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등	196
12. 일·생활균형 및 장시간 근로조건 개선 홍보 효율화 필요	201
13. 근로감독관 증원 논의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	205
14.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상담 인력 운용 검토 필요	209
1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215
1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218
17.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도말 다음연도에 사용할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지양 필요	220
18.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액 합리적 추정 필요	223
19.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고려한 보증료수입 예산 편성 필요	226
20.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보증손실분에 대한 기금별 부담방안 마련 필요 ...	229
21.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수요가 부족한 공동근로복지지원사업의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32
22.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235
2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스쿨 트랙 II 사업 효과성 검증 후 사업확대 필요	240
2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단계 지원금 사업계획 보완 필요 ..	245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249
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훈련기관 사업관리 철저 필요	258



CONTENTS

[기상청]

I. 예산안 개요 / 265

1. 현 황	26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7

II. 개별 사업 분석 / 269

1.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269
2.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273
3. 기상과학관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필요 등	278
4. APEC기후센터의 출연금 지원 법적근거 미흡 등	283
5. 기상관측 위성개발 사업의 운영비 부담 사전협의 필요	287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290
6-1.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기업 확대 필요	291
6-2. 날씨경영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96



환경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조 7,58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11억원(1.4%)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6,89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57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18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25억원, 영산강수계관리기금 91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31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328,820	4,789,373	4,797,073	4,692,304	△104,769	△2.2
- 일반회계	784	800	800	800	0	0.0
- 환경개선특별회계	5,305,029	4,786,267	4,793,967	4,689,198	△104,769	△2.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	500	500	500	0	0.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983	1,806	1,806	1,806	0	0.0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 금	1,127,680	1,042,283	1,042,283	1,065,915	23,632	2.3
- 한강수계관리기금	589,667	544,957	544,957	557,123	12,166	2.2
- 금강수계관리기금	123,174	125,550	125,550	131,801	6,251	5.0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6,804	250,720	250,720	252,510	1,790	0.7
- 영산강수계관리기금	91,180	87,233	87,233	91,381	4,148	4.8
- 석면피해구제기금	66,855	33,823	33,823	33,100	△723	△2.1
합 계	6,456,500	5,831,656	5,839,356	5,758,219	△81,137	△1.4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조 5,8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50억원(2.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854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2,248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67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36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620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156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5억원, 영산강수계관리기금 830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환경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¹⁾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526,104	6,390,573	6,505,273	6,667,073	161,800	2.5
- 일반회계	590,689	624,333	624,333	685,433	61,100	9.8
- 환경개선특별회계	4,555,509	4,417,632	4,425,332	4,224,806	△200,526	△4.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050	83,677	84,177	66,106	△18,071	△21.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91,949	828,276	828,276	1,067,087	238,811	28.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9,907	436,655	543,155	623,641	80,486	14.8
기 금	936,095	927,404	927,404	920,582	△6,822	△0.7
- 한강수계관리기금	473,698	465,808	465,808	461,998	△3,810	△0.8
- 금강수계관리기금	115,631	121,483	121,483	115,645	△5,838	△4.8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1,824	241,128	241,128	242,506	1,378	0.6
- 영산강수계관리기금	88,742	83,632	83,632	82,975	△657	△0.8
- 석면피해구제기금	16,200	15,353	15,353	17,458	2,105	13.7
합 계	7,462,199	7,317,977	7,432,677	7,587,655	154,978	2.1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환경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4조 6,92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48억원(2.2%)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6,89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억원이다.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84	800	800	800	0	0.0
환경개선특별회계	5,305,029	4,786,267	4,793,967	4,689,198	△104,769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	500	500	500	0	0.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983	1,806	1,806	1,806	0	0.0
합 계	5,328,820	4,789,373	4,797,073	4,692,304	△104,769	△2.2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10조 1,99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29억원(0.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7,537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6,89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6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671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36억원이다.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958,045	4,012,977	4,012,977	3,753,651	△259,326	△6.5
환경개선특별회계	4,988,886	4,786,267	4,793,967	4,689,198	△104,769	△2.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8,050	83,677	84,177	66,106	△18,071	△21.5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91,949	828,276	828,276	1,067,087	238,811	28.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79,907	436,655	543,155	623,641	80,486	14.8
합 계	10,326,837	10,147,852	10,262,552	10,199,683	△62,869	△0.6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659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36억원(2.3%)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5,571억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318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25억원, 영산강수계관리기금 91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331억원이다.

[2019년도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589,667	544,957	544,957	557,123	12,166	2.2
금강수계관리기금	123,174	125,550	125,550	131,801	6,251	5.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6,804	250,720	250,720	252,510	1,790	0.7
영산강수계관리기금	91,180	87,233	87,233	91,381	4,148	4.8
석면피해구제기금	66,863	33,823	33,823	33,100	△723	△2.1
합 계	1,127,688	1,042,283	1,042,283	1,065,915	23,632	2.3

주: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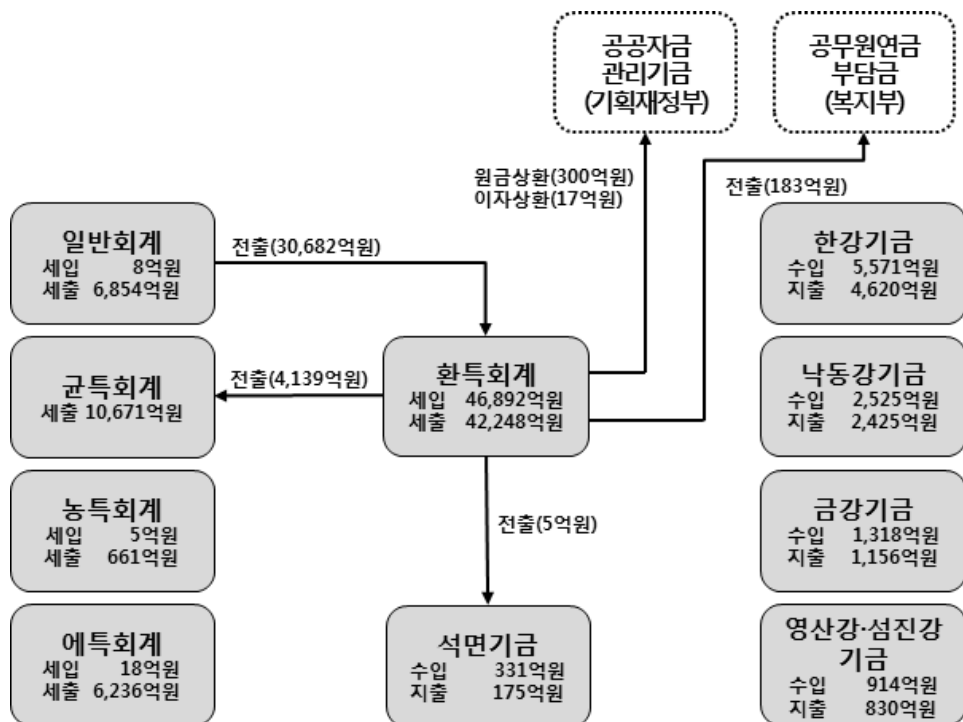
2. 2018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라. 재정구조

2019년도 예산안의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3조 682억원 전출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139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183억원이 전출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로 317억원을 상환한다.



주: 총계기준
자료: 환경부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물환경·수자원 부문 예산이 감액되었고(2018년 3.8조원 → 2019년 3.7조원), ②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보건분야 대응을 위하여 기후대기·환경보건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18년 9,511억원 → 2019년 1조 2,078억원), ③보전·복원사업 추진으로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한 자연부문 예산이 확대되었다(2018년 5,847억원 → 2019년 6,393억원).

2019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수도 사업 중 광역상수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국고 30%, 수공 70%)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종료 시점 뿐 아니라 연차별로도 출자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방상수도 사업 중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2019년도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시행일 2019.6.13.)에 따른 물기술인증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적근거 없이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비목의 수정이 필요하고, 인증업무 수행 시 자체 수입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넷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2차년도 예산 편성 전에 1차년도에 실시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를 연초에 추진하는 등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기간을 3년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정하고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환경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60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은 대산임해 산업지역 신규 산업단지개발 및 공장증설로 용수사용이 증가추세이나, 적정 지표수(담수) 수원이 부족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담수화 개발을 위한 사업이고, 금강광역 노후관 개량(2차)사업은 매설 후 34년이 경과하여 노후 상태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전주계통 및 군산계통 노후관 적기개량(19.1km)을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을 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은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물산업진흥시설, 실증화시설) 조성이 완료(2019.6)됨에 따른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관리 및 주요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운영사업은 기존 한·중 환경협력 자원을 통합하고, 정책교류, 공동연구, 환경기술교류 등 분야를 아우르는 對중국 환경협력 총괄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3개)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R&D)	500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	1,000
	금강광역 노후관 개량(2차)	200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1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5,700
환경개선 특별회계 (14)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R&D)	1,825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R&D)	3,500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R&D)	3,152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R&D)	2,400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1,000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R&D)	3,10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7,200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8,219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상하수도시설 안전관리	500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2,767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사업	446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R&D)	7,600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운영	3,429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7,18
합 계		60,256

자료: 환경부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소규모댐 건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대기개선 추진대책,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노후상수도정비 등이 있다.

① 소규모댐 건설 사업은 원주침댐, 봉화댐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②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수소버스 시범보급 사업추진으로 증액되었고, ③ 대기개선추진대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신규 내역사업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⑤ 노후상수도정비는 각각 신규 내역사업 추진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환경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개)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 연구(R&D)	2,300	2,300	4,280	1,980	86.1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700	700	2,150	1,450	207.1
	수자원종합연구	6,446	6,446	9,199	2,753	42.7
	수자원공사지원	296,400	296,400	340,000	43,600	14.7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사업	400	400	1,000	600	150.0
	광양(I)공업용수도 노후관개량	900	900	1,200	300	33.3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3,600	3,600	7,000	3,400	94.4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량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800	2,000	1,200	150.0
	구미권(I)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2,000	2,000	4,097	2,097	104.9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328	328	578	250	76.2
	수도권(IV)광역상수도 복선화	200	200	1,200	1,000	500.0
	지하수관리	13,704	13,704	24,412	10,708	78.1
	소규모댐건설	0	0	14,100	14,100	순증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	1,163	1,163	2,121	958	82.4
	댐 안전성강화(I 단계) 사업	8,201	8,201	22,000	13,799	168.3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12,400	12,400	16,760	4,360	35.2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8,585	29,835	81,000	51,165	171.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2,657	2,657	4,657	2,000	75.3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11,522	11,522	25,287	13,765	119.5
환경개선 특별회계 (18개)	세입징수비용교부금	113,700	113,700	150,028	36,328	32.0
	환경부 민원 콜센터 구축	296	296	419	123	41.6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1,733	1,733	3,333	1,600	92.3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R&D)	5,700	5,700	11,960	6,260	109.8
	유해폐기물처리및대집행	2,812	2,812	5,351	2,539	90.3
	자원순환 기반구축	2,273	2,273	3,033	760	33.4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6,705	6,705	12,403	5,698	85.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27,009	127,009	151,661	24,652	19.4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1,561	1,561	2,046	485	31.1
	대기개선 추진대책	214,301	214,301	261,430	47,129	22.0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8,723	8,723	11,557	2,834	32.5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R&D)	2,134	2,134	4,176	2,042	95.7
	화학제품 안전관리	0	0	12,490	12,490	순증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¹⁾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513	513	721	208	40.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8,861	18,861	30,418	11,557	61.3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95,214	95,214	114,848	19,634	20.6
	국립공원관리공단출연	160,010	160,010	178,799	18,789	11.7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 지원기반 구축	4,666	4,666	9,772	5,106	109.4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6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자율)	376,865	376,865	542,107	165,242	43.8
	노후상수도정비(지역자율)	99,386	99,386	212,176	112,790	113.5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8,000	8,000	12,925	4,925	61.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4,194	4,194	27,434	23,240	554.1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세종)	3,186	3,186	4,861	1,675	52.6
	생태하천복원사업(세종)	145	145	1,000	855	589.7
한강수계 관리기금 (1개)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설치	80	80	365	285	356.3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1개)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6,903	6,903	9,031	2,128	30.8
영산강 수계관리 기금 (1개)	생태하천 복원사업	2,186	2,186	4,395	2,209	101.1
석면피해 구제기금 (1개)	인건비	716	716	938	222	31.0
합계		1,650,178	1,661,428	2,342,718	681,290	41.0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환경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 예산안 분석

환경부는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소 구축을 지원하는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5.0%(265억원) 증가한 5,60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까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였다면, 2019년 예산안에는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예산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¹⁾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구축된 공공충전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추경 예산대비 97억원 증액된 4,573억원이 편성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비중(81.5%)을 차지하고 있다.²⁾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³⁾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629대→2,000대), 수소충전소 확대(10기→20기), 수소버스 시범보급의 신규추진 등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추경예산 298억원에서 81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⁴⁾은 천연가스버스(CNG⁵⁾버스, CNG하이브리드 버

김태은 예산분석관(t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633-301

2)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은 2018년 예산 국회심의 부대의견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통합되어 사업이 종료되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부대의견) 14.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중 일반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2019년부터 중단하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사업과 운영비 보조사업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2019년부터 통합하여 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3) 코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633-306

4) 코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633-307

스)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추경예산 대비 보급물량 축소로 20억원이 감소한 176억원이 편성되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사업⁶⁾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시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기당 7억원씩 7기를 지원하며,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과 동일한 49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친환경차량 보급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88,282	352,279	447,529	457,256	9,727	2.2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지원	52,492	32,490	32,490	0	△32,490	△100.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7,075	18,585	29,835	81,000	51,165	171.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5,157	19,518	19,518	17,566	△1,952	△10.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4,900	4,900	4,900	4,900	0	0.0
합 계	377,906	427,772	534,272	560,722	26,450	5.0

자료: 환경부

친환경차량 종류별로 지원금과 지원물량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전기차 1,800만원(국비 900만원, 지방비 900만원), 플러그인차 500만원(국비), 수소연료전지차 3,600만원(국비 2,250만원, 지방비 1,350만원)이며, 지원물량은 전기차 33,333대, 플러그인차 300대, 수소연료전지차 2,000대이다. 전기차의 경우 성능 및 배터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한다.

버스의 경우 전기버스 2.5억원(국비 1억원, 지방비 1.5억원), 수소버스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CNG 버스 1,200만원(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CNG하이브리드 6,000만원(국비 3,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이며, 지원물량은 전기버스 300대, 수소버스 30대(시범사업), CNG버스 1,659대, CNG하이브리드 버스

5) CNG(Compressed Natural Gas) : 압축천연가스

6) 코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1633-308

71대이다. 버스의 경우 환경부에서 지원금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상버스⁷⁾의 경우 9,200만원(국비+지방비)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충전소 설치는 급속전기충전기 5,000만원, 완속전기충전기 300만원을 지원하며, 수소충전소는 개소당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지원한다. 천연가스충전소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한 버스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시 7억원을 융자로 지원한다. 지원(설치)물량은 급속전기충전기 1,100개소, 완속전기충전기 12,000개소, 수소충전소 20개소, 천연가스충전소(융자) 7개소이다.

[지원단가 및 지원물량]

(단위: 만원, 대, 개소)

구 분		지원금 (2019년 기준)			지원물량		기타
		국비	지방비	소계	2018 추경	2019년 예산안	
승용차	전기차	900	900	1,800	26,500	33,333	차종에 따라 차등
	플러그인차	500	0	500	300	300	
	수소연료전지차	2,250	1,350	3,600	630	2,000	
버스	전기버스	10,000	15,000	25,000	185	300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지원 별도 (9,200만원)
	수소버스	20,000	20,000	40,000	0	30	
	천연가스버스(CNG버스)	600	600	1,200	1,964	1,659	
	천연가스버스 (CNG하이브리드)	3,000	3,000	6,000	100	71	
충전소 (충전시설)	급속전기충전기	5,000	0	5,000	1,111	1,100	
	완속전기충전기	300	0	300	15,900	12,000	
	수소충전소	150,000	150,000	300,000	10	20	
	천연가스충전소(융자)	70,000	0	70,000	7	7	

자료: 환경부

7)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1-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가. 현 황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⁸⁾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추경 대비 97억 원 증가한 4,573억원 편성되었다.

2019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총 33,333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충전소는 공공급속충전기 1,100기와 완속충전기 12,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88,282	352,279	447,529	457,256	9,727	2.2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196,523	261,250	342,750	362,000	19,250	5.6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88,137	89,505	103,255	91,010	△12,245	△11.9
공공충전시설 관리 등 운영비	3,622	1,524	1,524	4,246	2,722	178.6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급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급계획(지원물량) 또한 증가하여 계획물량을 연내에 다 지원하지 못하고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은 2015년 3,186대에서 2016년 9,192대, 2017년 14,173대, 2018년 20,150대, 2019년 약 33,333대로 2019년 보급계획은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8) 코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01

이러한 지원물량 증가로 보급계획에 비하여 실제 보급이 지연되어 매년 이월 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을 보면, 2015년 808대, 2016년 5,519대, 2017년 5,197대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2018년에는 추경 증가분을 포함할 경우 총 3만 3천대(본예산 2만대 + 전년이월 분 약 5천대 + 추경증가분 8천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2018년 9월 말 기준 실제 보급 실적은 2만 1,375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대)

	보급계획	전년이월	추경증가	총 보급계획	실제 보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	보급 지연 사유
2015	3,186	117	0	3,303	2,338	808	구매수요 부족
2016	9,192	808	890	10,890	4,640	5,519	차량 출고 지연
2017	14,173	5,519	0	19,692	14,275	5,197	차량 출고 지연
2018.9	20,150	5,197	6,535	31,882	21,375		

주: 버스포함

자료: 환경부

이월물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5년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계획한 보급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나, 2017년과 2018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은 이루어졌으나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출고가 지연되어 이월물량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보급 계획의 확대와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2019년에도 집행이 부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구매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2.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가. 현 황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⁹⁾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659대→2,000대), 수소충전소 확대(10기→20기), 수소버스 시범보급의 신규추진 등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추경예산 298억원 대비 512억원이 증가한 8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7,075	18,585	29,835	81,000	51,165	171.5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3,575	3,585	14,835	45,000	30,165	203.3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13,500	15,000	15,000	30,000	15,000	100.0
수소버스 시범보급(신규)	0	0	0	6,000	6,000	순증

자료: 환경부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내연기관(가솔린, 디젤) 차량과의 차액(7,000만원-2,500만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 2,250만원(4,500만원×50%)을 산정하고, 2,000대 지원물량을 고려하여 450억원을 편성하였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약 7,000만원(6,980~7,220만원)이고, 유사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 가격은 약 2,500~4,300만원¹⁰⁾ 수준을 고려하였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은 국고지원금 2,250만원과 지자체지원금 1,350만원을 고려할 때,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 코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06

10) 넥쏘는 산타페와 투싼의 중간급으로 볼 수 있고, 산타페는 2,763~4,295만원, 투싼은 2,351~3,161만원이다.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은 충전소 1기 설치비가 약 30억원 소요되며, 50%를 보조한다. 2019년에는 20기 설치를 목표로 총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수소버스 시범보급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앞서, 지자체·제작사·운수사와 공동으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시범보급을 통해 보급 추진 상 애로사항 등을 미리 점검·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에 수소버스 3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버스 가격은 8억원으로 환경부가 2억원, 지자체가 2억원, 제조사가 2억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9,200만원¹¹⁾을 지원하며 운수사(버스운영업체)의 부담은 1대당 약 1.1억원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 ①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 : 45,000백만원
 - 22.5백만원(내연기관 가격차액 55백만원×50%) × 2,000대 = 45,000백만원
- ②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 30,000백만원
 - 3,000백만원 × 20기 × 50% = 30,000백만원
- ③ 수소버스 시범보급(신규) : 6,000백만원
 - (구매보조금) 200백만원 × 30대 = 6,000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수소연료전지차 지원물량이 201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2017년 138대에서 2018년 659대(추경포함), 2019년(안) 2,000대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계획물량에 미치지 못하게 보급되었는데, 2017년의 경우 138대를 계획하였으나 51대만 보급되었고, 2018년은 659대를 계획하였으나 9월말 기준으로 보급실적은 288대이다.

11)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시 대당 9,200만원(국고보조율 서울 40%, 그 외 50%)을 지원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차 지원계획 및 보급실적]

(단위: 대)

	계획 (A)	전년이월 (B)	총계획 (C=A+B)	보급대수 (D)	누적보급대수
2013	5	0	5	5	5
2014	33	0	33	7	12
2015	71	21	92	41	53
2016	71	35	106	73	126
2017	138	14	152	51	177
2018.9	659	87	746	288	465
2019안	2,00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집행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2017년의 경우 2018년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구매 보류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였고, 2018년에는 추경 편성(국회 중액)과 지방선거(6.13)로 지방의회 원구성 일정 등으로 지방비 추경 편성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수소연료전지차 신차 출시¹²⁾로 구매대기물량이 1,503대(9.6.기준, 현대차)인 점을 감안할 때, 2018년도 잔여물량 536대는 연내에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2,000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출시차량이 1종류에 불과하여 차량크기나 종류(세단, SUV 등)의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고, 2018년 8월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12개소 밖에 없으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가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2019년에 2,000대 보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1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및 구축 계획 : 2018.9월말 기준]

(단위: 개소)

	충전소 운영 및 구축 계획					2019년 수소차 보급계획
	운영중	구축중 (2017년 예산)	2018 계획 (2018년 예산)	2019 계획 (2019년 예산)	합계	
합계	13	8	10	15	46	2,000
서울	2	0	0	3	5	62
부산	0	0	1	0	1	200
인천	1	0	1	2	4	200
광주	1	3	1	2	7	500
대전	0	0	2	1	3	45
울산	3	3	1	0	7	500
경기	3	0	0	0	3	20
강원	0	0	2	1	3	4
세종	0	0	0	-	0	10
충남	1	0	1	1	3	174
충북	0	0	0	4	4	80
경남	2	2	1	1	6	205

주: 2019년 수소충전소 계획물량 20개소 중 5개소는 민간보조로, 추후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
자료: 환경부

둘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통상 입지 선정에서 준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부지선정의 경우 주민반대 등으로 통상 수개월 소요되고, 부지 선정 후 실시설계 2~3개월, 입찰공고 4개월¹³⁾, 건축인허가 2개월, 설치공사 3개월, 가스안전검사 1개월 등 건설에만 1년이 소요된다.

이러한 1년 이상의 소요기간으로 2017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수소충전소는 2018년 9월까지도 구축 중에 있다. 2017년의 경우 광주 3개소, 울산 3개소, 경남 2개소 구축을 위해 지원하였는데, 3개소만 연말(11~12월)에 준공예정이고, 1개소는 설치공사 입찰중이고, 3개소는 설계중에 있으며, 1개소는 현재까지도 부지선정 중에 있다.

13) 설비 구입 입찰(3개월), 설비공사 입찰(1개월)

[2017년도 지원예산 수소충전소 설치 진행상황]

지자체	지역	진행상황
광주	A	설치(설계중)
	B	설치(설계중)
	C	부지선정 중
울산	D	입찰중(설치공사)
	E	설치(11월 준공예정)
	F	설치(12월 준공예정)
창원	G	설치(설계중)
	H	설치(11월 준공예정)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에 수소연료전지차 총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부산 200대, 대전 45대, 강원 4대, 세종 10대, 충북 80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2018년 또는 2019년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인근에 충전소가 없어 차량 구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간 수소 충전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수소공급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2017년까지는 수소차 보급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전소도 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소충전 가격이 각 기관이 수소를 공급받은 가격(주문해서 가지고 온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5,500~10,000원/kg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¹⁴⁾

수소 공급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부생수소, CNG-LPG 개질수소 등)의 일괄 구매 및 운송을 담당하는 전담기관 신설

14) 주로 울산 등 수소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등을 통해 수소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¹⁵⁾ 우선 2019년 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가격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소충전가격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도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나 수소충전 가격의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가격정보 제공만으로는 수소충전 가격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간 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5)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는 현재 수소 공급량·공급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중장기 수소에너지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70원대/km, 넥소 완충시 약 4.5만 원)으로의 공급을 위해 수소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6.25.) : 민관 공동 수소차 산업생태계 구축 가속화)

상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광역상수도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¹⁾

우리나라의 상수도시설 관리는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 관리 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상수도시설 관리 전체가 환경부 소관으로 일원화되었다.²⁾

[시설별 물관리 체계 : 물관리 일원화 전후]

시설별		일원화 전	일원화 후
상수도	광역상수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방상수도	환경부	
하수도		환경부	
지하수		국토교통부	
댐·저수지	다목적댐	국토교통부	
	농업용저수지	농림축산식품부	
	발전댐	산업통상자원부	
하천	국가하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지방자치단체	
	소하천	행정안전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2) 광역상수도와 함께 지하수관리, 댐관리 기능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대청(Ⅲ)광역상수도건설 등 21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지방상수도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2019년도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전체 예산안은 2018년 6,687억원 대비 37.6%(2,515억원) 증가한 9,20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1,191억원으로 전년대비 21.2%(320억원)감소하였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8,012억원으로 전년대비 54.8%(2,835억원) 증가하였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소하였고, 지방상수도 건설은 물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식수원개발³⁾ 지원의 확대와 2018년도 신규 사업인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의 연차별 소요사업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사업인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중 하나로 2019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238억원→1,499억원)하였다.⁴⁾

[2019년도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역상수도(21개 세부사업)	187,190	151,061	151,061	119,075	△31,986	△21.2
- 공업용수도건설	104,948	78,168	78,168	67,293	△10,875	△13.9
- 광역상수도건설	67,492	60,886	60,886	43,994	△16,892	△27.7
- 지방광역상수도	14,750	12,007	12,007	7,788	△4,219	△35.1
지방상수도(6개 세부사업)	466,120	517,638	517,638	801,152	283,514	54.8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414,857	401,252	401,252	567,051	165,799	41.3
- 노후상수도정비	50,561	108,386	108,386	221,176	112,790	104.1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702	8,000	8,000	12,925	4,925	61.6
합 계	653,310	668,699	668,699	920,227	251,528	37.6

주 : 1. 세부사업 수는 공업용수도 건설 8개, 광역상수도건설 11개, 지방광역상수도 2개임

2.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와 노후상수도정비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세부사업 수가 각각 3개(지역자율, 제주, 세종), 2개(지역자율, 제주)임

자료: 환경부

3)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4)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관계부처 합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 2018.8)

2-1.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프로그램)의 사업관리 철저

가. 현 황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⁵⁾은 전국에 수도공급을 위하여 관로개량 및 수도건설,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이었으나,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19년도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프로그램)은 공업용수도건설, 광역상수도건설, 지방광역상수도건설의 3개의 단위사업과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세부사업 기준으로 2018년 예산은 21개 사업이었으나, 4개 사업의 종료, 2개 사업의 신규편성, 1개 사업이 2017년에 이어 채추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개 사업이 감소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억 3,700만원이 감소한 79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프로그램)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코드)	2017 결산	2018예산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공업용수도건설]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200	400	400	1,000	600	150.0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200	1,000	1,000	360	△640	-64.0
광양(Ⅰ단계)공업용수도노후관 개량사업	0	900	900	1,200	300	33.3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	800	2,569	2,569	0	△2,569	종료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공급	300	368	368	0	△368	종료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	1,600	1,241	1,241	0	△1,241	종료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광역Ⅱ 단계)	11,354	10,000	10,000	11,869	1,869	18.7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1,000	3,600	3,600	7,000	3,400	94.4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해수담수화) 사업	0	0	0	1,000	1,000	신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1,300	0	0	5,123	5,123	순증

5) 코드: 일반회계 5000(프로그램)

6) 정부예산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사업코드)	2017 결산	2018예산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광역상수도건설]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0	800	800	2,000	1,200	150.0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11,500	11,179	11,179	8,188	△2,991	△26.8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	3,500	9,830	9,830	3,003	△6,827	△69.5
대청(Ⅲ)광역상수도건설	35,100	19,684	19,684	18,995	△689	△3.5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건설	1,000	1,200	1,200	1,507	307	25.6
구미권(Ⅰ)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2,700	2,000	2,000	4,097	2,097	104.9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	4,507	8,996	8,996	0	△8,996	종료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185	328	328	578	250	76.2
수도권(Ⅲ)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500	1,239	1,239	508	△731	△59.0
수도권(Ⅳ)광역상수도 복선화		200	200	1,200	1,000	500.0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6,500	5,430	5,430	3,718	△1,712	△31.5
금강광역 노후관 개량(2차)	0	0	0	200	200	신규
[지방상수도건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14,600	10,252	10,252	6,150	△4,102	△40.0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SWC 구축 시범사업	150	1,755	1,755	1,638	△117	△6.7
합 계	98,996	92,971	92,971	79,334	△13,637	△14.7

자료: 환경부

사업추진 방식은 주로(17개 세부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사업(국비 30%, 수공 70%)으로 추진되며,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해수담수화)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국고보조율 30%)이고,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국고보조율 48.7%⁷⁾)과 국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SWC 구축 시범사업(국고보조율 50%)은 자치단체보조 사업으로 추진된다.

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8월말 기준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20개 사업⁸⁾ 중 14개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였다.

이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지연된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 신규사업인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2018년 1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나, 공급계획 변경(정수장 신설)으로 부처간 협의 등에 기간이 소요(2018.2~7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 2019년 예산안에 설계비 잔여분 전액(2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 11월 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중반에 설계가 완료(약 1년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배후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수 수위 저하 영향을 우려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수정 25공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시험집수정 1공만 운영되고 있다. 2018년 6월 지하수영향 저감방안(인공함양공법) 시행을 주민들과 합의함에 따라 동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합의 후 당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2011~2017년으로 계획하였으나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사업기간을 1년, 1년, 2년 연장하여, 현재는 202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지자체의 용수공급 중단 반대(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지장물 조사자료 수집 지연(수도권(IV)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 등으로 8월말 기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

8)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은 2018년도 정부예산은 없지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므로 포함하였다.

[2019년도 용수공급 및 개발 프로그램의 세부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8. 8 기준		2019 예산안	집행 부진사유 (사업추진 지연 사유)
		예산	집행액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259,986	800	0	2,000	2018년 신규사업 공급계획 변경으로 설계 착수 지연(11월), 집행 부진 예상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622,130	328	0	578	개발지역 주민들의 사업반대 등으로 사업추진 부진 민원해소 위해 지하수위 저감 방안(인공함양공법 적용* 등) 및 지역발전 지원방안 등을 마련, 지속협의 및 시행 중 *주민합의('18.6) 및 조사용역 발 주완료('18.7)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4,817	1,000	600	360	지자체의 하절기 용수공급 중 단 반대로 사업 지연
수도권(Ⅳ)광역 상수도 복선화	21,300	200	128	1,200	2018년 신규사업 용역 착수 후 설계에 필요한 관계기관 지장물 조사자료 수 집 지연

자료: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나,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주민민원, 사업순연 등의 사유로 금년 연말까지도 계획에 따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공급계획 변경, 민원,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도에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 기간 중 출자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용수공급 및 개발 사업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고 30%, 한국수자원공사 70%이다. 이들 사업들의 2018년 8월까지 국고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매칭 비율을 보면 20개 사업 중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 사업을 제외하고 19개 사업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자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 기준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비율]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수공 집행비율(누적)			사업기간
	2017년말 기준	2018.8 기준	2018.12 예정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3차)	68.4	69.1	70.0	2017~2021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52.8	52.5	66.4	2017~2019
광양(Ⅰ 단계)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0	0	70.0	2018~2022
광양(Ⅱ)공업용수도 복선화	61.0	67.2	70.0	2013~2018(종료)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공급	66.9	69.7	70.0	2014~2018(종료)
장항국가생태산단 용수공급	68.6	65.8	70.0	2016~2018(종료)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광역Ⅱ 단계)	51.5	65.4	66.1	2012~2020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38.7	68.0	70.6	2016~2020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용수공급	15.1	59.7	70.4	2015~2020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0	0	70.0	2018~2022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61.7	67.5	67.7	2014~2020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	73.5	71.4	70.8	2009~2019
대청(Ⅲ)광역상수도건설	67.5	69.3	70.0	2011~2020
영남내륙권(2차)광역상수도건설	64.8	63.6	70.8	2016~2019
구미권(Ⅰ)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64.9	68.7	70.0	2013~2019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조정	76.6	67.0	70.0	2015~2018(종료)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67.5	67.5	66.7	2011~2021
수도권(Ⅲ)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65.9	68.4	67.0	2015~2020
수도권(Ⅳ)광역상수도 복선화	0	61.9	70.0	2018~2021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55.7	64.3	65.2	2014~2019
합 계	66.9	68.7	69.4	

자료: 환경부

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비를 우선집행하고 자부담분을 연말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여건이나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칭비율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의 추진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예산안이나 결산 심사 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나 집행실적을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나 수공의 자부담분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 지연되고 있는 지, 차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5년 정부 추경(390억원⁹⁾)에 따른 국고 투입으로 매칭비율이 일시 하락하였으나,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자부담 집행 상향 노력으로 매칭비율은 매년 상향 중에 있고, 2018년말 기준으로 매칭비율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광역Ⅱ단계), 수도권(Ⅱ)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지원,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수도권(Ⅲ)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등 6개 사업은 2018년도 말까지도 출자비율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¹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자금의 경우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의 재원분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주체별 분담 비율에 대한 원칙 및 연차별 부담계획을 정하고 재원분담 조건의 실행을 전제로 출자규모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별로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동 규정에 부합한다. 또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¹⁾에서 자기자금 부담 능력 유무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사업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사업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9) 대청3광역(150억원), 한강하류2차급수(50억원), 구미국가산단(50억원), 광양2공업복선화(140억원)

10)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동 사업들에 대해 2019년까지 매칭비율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2.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¹²⁾은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도서지역에 섬지역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육지 지역의 상수도 관로와 연결(해저관로)하거나, 섬 지역 내 용수확보를 위한 지하수 관정(우물), 해수담수화¹³⁾, 수도관, 배수지 등의 시설 설치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238억원에서 1,261억원(528.7%) 증가한 1,499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를 재원으로 하며, 국고보조율은 70%이다.

[2019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414,857	401,252	401,252	567,051	165,799	41.3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5,748	23,840	23,840	149,890	126,050	528.7
(지역자율계정)	23,848	23,140	23,140	149,340	126,200	545.4
(제주계정)	1,900	700	700	550	△150	△21.4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을 위해 2019년에 계속사업 13개와 신규사업 92개를 합한 총 105개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는 2015년 29개, 2016년 30개, 2017년 23개, 2018년 14개 사업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9년은 물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위해 105개 사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12) 코드: 균형발전특별회계 2031-301의 내역사업

13)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기 위하여 바닷물 또는 염분이 포함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은 101개소로, 이 중 가동시설은 81개소이고, 미가동 시설은 20개소이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연도별 사업 수]

(단위: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년
계속사업	19	21	19	13	13
신규사업	10	9	4	1	92
소 계	29	30	23	14	105

자료: 환경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관로, 관정, 해수담수화 등 시설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관정 개발이 31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해저관로 21개, 관로와 해수담수화가 각각 20개, 해수담수화 개량 8개, 배수지 3개, 저수지 3개, 급수운반선 1개이다.¹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신규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단위: 개)

구 분	관로	관정	급수 운반선	배수지	저수지	해수 담수화	해수 담수화 개량	해저 관로	합계
계속사업	4(1)	1(1)	0	0	3(1)	2(1)	0	5	13
신규사업	16	30	1	3	0	18	8	16	92
합 계	20(1)	31(1)	1	3	3(1)	20(1)	8	21	105

주: 괄호안은 유형이 2개인 사업 수

자료: 환경부

총사업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계속사업(13개)은 20~50억원 미만인 2개, 50~100억원 미만인 5개, 100억원 이상이 6개로 모두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다. 반면에 신규사업(92개)은 10억원 미만인 50개, 10~20억원 미만인 17개, 20~50억원 미만인 14개, 50~100억원 미만인 8개, 100억원 이상이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이 67개(72.8%)이고, 20억원 이상 사업이 25개(27.2%)로 20억원 미만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4) 1개의 사업이 2개유형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총 사업수는 105개 이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신규사업 총사업비 규모별 분류]

(단위: 개)

구 분	예산액	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 계
계속사업	20,815	0	0	2	5	6	13
신규사업	129,075	50	17	14	8	3	92
소 계	149,890	50	17	16	13	9	105

자료: 환경부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13개는 4~7년이나, 신규사업 92개는 모두 1년으로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으로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확보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4~7년이나, 2019년 신규로 편성된 92개 사업들은 사업유형이나 총사업비와 관련없이 모두 2019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단년도로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사업의 사례를 볼 때 일부 신규사업들은 집행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13개 계속사업들의 2018년도 실적집행실적을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2018년 8월말 기준, 전체적으로는 실적집행률은 35.2%이고, 전남 H, 충남 D, 전북 J, 제주 M 등 4개 지역의 사업만 실적집행률이 50%를 넘고, 9개 사업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도 257억 4,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124억 7,8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이월률이 48.5%에 이른다.

[2019년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18.8월말 기준 집행실적					2019 예산안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전남 A	2014~2019	14,294	1,150	196	1,346	475	35.3	1,725
충남 B	2014~2019	8,083	1,821	150	1,971	459	23.3	1,522
경남 C	2015~2021	29,510	3,000	795	3,795	659	17.4	2,000
충남 D	2015~2020	9,370	486	0	486	350	72.0	2,200
경북 E	2016~2020	28,100	804	348	1,152	156	13.5	3,000
인천 F	2016~2020	24,362	3,155	6,097	9,252	2,148	23.2	2,839
전남 G	2016~2020	7,200	1,500	0	1,500	0	0.0	1,072
전남 H	2016~2020	24,000	5,000	2,669	7,669	5,169	67.4	1,224
전남 I	2016~2020	3,900	0	0	0	0	0	1,417
전북 J	2016~2019	7,500	860	1,392	2,252	1,343	59.6	620
전남 K	2017~2020	6,000	150	0	150	0	0.0	896
전남 L	2017~2021	18,193	1,950	33	1,983	0	0.0	1,750
제주 M	2017~2019	2,500	700	798	1,498	882	58.9	550
합 계			20,576	12,478	33,054	11,641	35.2	20,815

주: 1. 2019년 예산안이 있는 계속사업의 실집행실적으로, 2018년 종료사업(2개, 2018년도 예산 3,264 백만원)은 제외됨에 따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23,840백만원과 차이가 있음

2. 전남 I는 주민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17~2018년 예산 미편성

자료: 환경부

또한 동일한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로개발의 경우 계속사업인 3개 사업¹⁵⁾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E는 2018.8월말 기준 집행률이 13.5%이고, 전남 G는 11월 중 기성금 집행 예정으로 8월말 기준으로는 집행실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남 I는 읍소재지 통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8년도 예산이 미편성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15) 1개 사업은 2개 유형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단순 비교하기 곤란하여 제외하였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중 계속사업의 2018년도 집행실적 - 관로]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기간	총 사업비	2018.8월말 기준 집행실적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경북 E	2016~2020	28,100	804	348	1,152	156	13.5
전남 G	2016~2020	7,200	1,500	0	1,500	0	0.0
전남 I	2015~2020	3,900	0	0	0	0	0

주: 전남 I는 주민민원으로 2017~2018년 예산 미편성

자료: 환경부

2019년 신규사업 중 인천 가(총사업비 98억원), 인천 나(총사업비 67억원), 경남 다(총사업비 40억원) 지역은 전남 G(총사업비 72억원), 전남 I(총사업비 39억원)와 사업유형이 관로개발로 동일하고 총사업비 규모도 비슷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비교 - 관로]

(단위: 백만원)

계속/신규	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유형
		시작	종료		
계속	전남 G	2016	2020	7,200	관로
	전남 I	2015	2020	3,900	관로
신규	인천 가	2019	2019	9,750	관로
	인천 나	2019	2019	6,711	관로
	경남 다	2019	2019	4,000	관로

자료: 환경부

해저관로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사업인 전남 H, 전남 L, 충남 D, 충남 B, 전남 K 등 5개 계속사업의 2018년말 실집행실적은 각각 67.4%, 0%, 72.0%, 23.3%, 0%로 전남 H, 충남 D 지역을 제외하고 3개 지역은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전남 L은 2017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2018년 11월 착공 예정이며, 전남 K는 2017년 신규사업이나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중이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중 계속사업의 2018년도 집행실적 - 해저관로]

(단위: 백만원, %)

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2018.8월말 기준 집행실적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전남 H	2016~2020	24,000	5,000	2,669	7,669	5,169	67.4
전남 L	2017~2021	18,193	1,950	33	3,983	0	0.0
충남 D	2015~2020	9,370	486		486	350	72.0
충남 B	2014~2019	8,083	1,821	150	1,971	459	23.3
전남 K	2017~2020	6,000	150	0	150	0	0.0

자료: 환경부

계속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해저관로 사업의 경우 사업시작 후 설계까지 2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신규사업 중 인천 라, 전북 마, 경남 바, 전남 사 등 4개 사업은 2019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비교 - 해저관로]

(단위: 백만원)

계속/신규	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유형
		시작	종료		
계속	전남 H	2016	2020	24,000	해저관로
	전남 L	2017	2021	18,193	해저관로
	충남 D	2015	2020	9,370	해저관로
	충남 B	2014	2019	8,083	해저관로
	전남 K	2017	2020	6,000	해저관로
신규	인천 라	2019	2019	16,589	해저관로
	전북 마	2019	2019	12,000	해저관로
	경남 바	2019	2019	7,219	해저관로
	전남 사	2019	2019	6,000	해저관로

자료: 환경부

사업지역이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기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유형이 동일하고 사업비가 비슷한 경우에도 계속사업은 사업기간이 4~7년이었으나,¹⁶⁾

2019년 신규사업은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토지보상 등 일반적인 절차 지연요소가 없고 용수 확보 등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기존 관로설치 및 해저관로사업들은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고, 그럼에도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들이 다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6) 2018년에 추진한 14개 사업 중 단년도 사업은 1개(충남 보령시 호도, 소도 식수원 개발사업, 총 사업비 377백만원) 있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¹⁾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시스템 운영,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이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2,614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1억원(22.0%)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원인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예산의 물량 확대(116,169→150,129대) 등에 기인한다.

[2019년도 대기개선추진대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기개선추진대책	159,824	214,301	214,301	261,430	47,129	22.0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9,433	165,391	165,391	192,133	26,742	16.2
- 조기폐차 지원	66,852	93,400	93,400	120,704	27,304	29.2
- PM-NOx 동시저감장치	3,615	22,500	22,500	22,500	0	0.0
자동차배출가스관리	2,243	2,677	2,677	3,027	350	13.1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	334	334	334	334	0	0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000	1,000	1,000	2,400	1,400	140.0

주: 1.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9년도 예산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2. 전기이륜차보급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관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나. 분석의견

첫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하나인 PM-NO_x 동시저감장치²⁾ 3,000대 지원 예산 225억원은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경유차 3,000대에 PM-NO_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225억원 (3,000대×15,000천원×50%)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3년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 185대, 2017년은 249대, 2018년 8월 말 기준 333대 지원되었는데, 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으로 지원물량을 2017년 482대에서 2018년 3,000대로 크게 증가시켰으나, 실제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실적(물량)]

(단위: 대)

	2016		2017		2018.8		2019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PM-NO _x 동시저감장치	200	185	482	249	3,000	333	3,000

자료: 환경부

PM-NO_x 동시저감장치는 장치크기가 커서 부착 대상이 대형차로 한정되고,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주입해야하는 불편(평균적으로 주유 5회시 요소수 1회 주입)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형 경유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형경유차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므로 저감장치 부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최근의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3,000대 지원은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지원물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PM-NO_x 동시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_x)까지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둘째,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 사업은 성과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행사, 친환경 운전문화 및 교통문화(카풀 등) 온오프라인 홍보에 매년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개최하였으나, 10년 동안 참여인원은 총 1,057팀(2,114명)³⁾으로 홍보효과가 크지 않고, 매년 수도권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도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행사 개요]

- 주 최 : 환경부 · 수도권대기환경청
- 주 관 : 환경보전협회
- 일시 및 장소 : 2017.09.02(토) 09:30~15:30, 서울 월드컵공원(평화광장 일대)
- 주요내용
 - 유종별로 휘발유·하이브리드·LPG 각 10팀 총 30팀을 선정하고 주행평가를 통해 친환경운전왕 선발(시상 및 포상)
 - 연료소모율, 운전습관(급출발·급제동·급가속)을 종합평가 진행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는 1회성 행사로 전국민 대상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행 행사 위주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24억원)은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수도권 지역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NO_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녹스보일러(72만원)과 일반보일러(52만원)⁴⁾의 차액(20만원)의 80%(16만원)를 국고에서 8만원, 지방비에서 8

3) 2011~2015년까지는 전국에서 권역별 예선을 거쳐 본대회를 개최하여 예선인원까지 포함하여 전체 참여인원을 산정하였다.

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30,000대 지원을 목표로 2018년 12,500대 지원, 1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24억원(30,000대 ×16만원×50%)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수도권 지역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지원하나 2017년 기준 1만 1,176대 보급 중 저소득층 보급대수는 4대에 불과한 등 저소득층 지원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저녹스보일러 지원 현황]

(단위: 대)

구분	2017년		‘18년 6월 말 기준	
	총보급대수	저소득층 보급대수	총보급대수	저소득층 보급대수
서울	3,500	4	2,291	2
인천	1,246	0	862	0
경기	6,430	0	3,006	0
합계	4,746	4	3,153	2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미세먼지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도권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수요가 적어 저소득층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나, 저소득층은 주택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⁵⁾ 동 지원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4)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효율 비교]

구분	일반보일러	저녹스보일러
NOx 발생평균	173ppm	30ppm

5)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는 저녹스보일러 설치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가. 현 황

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¹⁾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시행일 2019.6.13.)에 따른 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고 동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물기술인증원 운영 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39명), 임차료,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27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물기술인증원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물기술인증원 운영	0	0	0	2,767	2,767	순증

자료: 환경부

[세부 산출내역]

- 인건비 : 1,089백만원 (39명* × 55.8백만원/년 × 0.5년)
 - * 정규직 29명(원장 1명, 실장(1~2급) 2명, 팀장(3~4급) 6명, 팀원(5~7급) 20명), 전문계약직 9명, 파견직 1명
- 임차료(사무실 등) : 123백만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745백만원
- 사무용품(컴퓨터 등) 등 구매비 : 120백만원
- 인테리어비 등 : 370백만원
- 운영·관리비, 위원회 수당, 여비 등 : 320백만원

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26

로, 환경부는 기존에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 업무와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법정민간위탁)하던 상하수도협회의 ‘상하수도인증원’을 모태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각 협회, 조합 등에서 수행하던 관련 인증업무를 물기술인증원에 이관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다.²⁾

나. 분석의견

첫째,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하나,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출연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로,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³⁾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출연금은 보조금이나 일반용역비 등과 비교해서 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높고, 집행관리 등도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근거를 요하며, 「국가재정법」⁴⁾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물기술인증원의 설립과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⁵⁾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출연”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과제명: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2018.8.3.~2018.11.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3)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외에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인 사업출연금(350-02목)이 있다.

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물기술인증원 운영비 지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나 민간위탁 등의 방식으로 지원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며, 비목의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비 규모는 자체 세입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현재는 이러한 인증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 인증을 담당해온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상하수도인증원’의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상하수도인증원은 위생안전인증, KS, 적합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은 인증수수료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의 수입을 보면, KC인증에서 15억원, KS인증 1억원, 적합인증 3억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1억원 등 총 2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KC	KS	적합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합계
2015	1,205,551	-	407,292	22,692	1,635,535
2016	1,036,764	40,655	579,209	66,251	1,722,879
2017	1,472,849	99,408	343,812	72,362	1,988,431

자료: 환경부

한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미흡하며, 이에 대해 환경부는 법정민간위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한다.⁶⁾ 그러나 법정민간위탁사업의 경우 2018년도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상수입액을 공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39명의 인건비 6개월분과, 운영 관리비, 수당, 여비 등 총 27

6) 또한 환경부는 인증원 설립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비목을 변경하고자 한다.

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되는 인증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⁷⁾ 환경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업무 뿐 아니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 업무 등 타 기관에서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물기술인증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므로, 인증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입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환경부 소관 인증업무 현황]

(단위: 백만원)

인증명	근거법률 및 조항	현재 수행기관	2017년 수수료 수입 및 지출	
			수입	지출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수도법 제14조제1항	한국상하수도협회	1,472.8	687.1
적합 인증	수도법 제14조제3항	한국상하수도협회	343.8	156.1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하수도법 제33조	한국상하수도협회	72.3	33.1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하수도법 제52조	한국상하수도협회	17.9	1.6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환경부고시 2017-116호	한국상하수도협회	65.4	29
KS표지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한국상하수도협회	99.4	22.9
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 제27조	한국상하수도협회	336.1	43.4
정수처리기준 배제인증	수도법 제28조	한국상하수도협회	0.0	0.2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21조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85.8	186.3

주: 각 인증업무의 이관여부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논의중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환경부

7) 환경부는 현재 편성된 인건비 27억 6,700만원에는 인건비 6개월분만 반영되어 있어, 2019.6.13일부터 운영될 인증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¹⁾은 기피시설에 에너지자원화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민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예를 들면 퇴액비 자원화시설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도시가스 생산 및 퇴액비 생산을 통해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73억원이 편성되었다. 환경부는 2018년에 계속사업 6개소, 신규사업 5개소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계속사업 8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3년으로, 첫해에는 타당성조사²⁾ 비용 1억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5억원(사업비의 20%), 3년차에는 15억원(잔여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추진방식은 환경부가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면 지자체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한국환경공단³⁾에 사업추진을 위탁하는 구조이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57,089	127,009	127,009	151,661	24,652	19.4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9,564	7,020	7,020	7,300	280	4.0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1433-306)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08의 내역사업

2) 사업 대상 마을 기초자료 조사, 주민의견수렴, 주민수익사업 아이템 발굴, 경제성 분석(B/C), 인·허가 사항 검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예비 선정’ 후, 사업 시기, 에너지 활용성, 관련 법 적합성, B/C분석 등 경제성 분석, 지역주민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6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경우, 2017년에 마을 수익 2.5억원, 일자리 8명, 방문객 3,836명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추진현황]

연도 (신규)	지역	주요설비	추진현황
2014 (1)	홍천	퇴·액비화 시설, 바이오가스 공급 배관, 상수관거 홍보관, 마을 경관개선(태양광 가로등)	운영 중
2015 (5)	청주	온수(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공급 배관, 건조장	2018년말 준공
	아산	기업세탁소(소각 폐열 활용)	
		유리온실(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경주	다목적 캠핑장(소각 폐열 활용), 친환경 사랑방	
	영천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태양광 발전시설	
2016 (3)	양산	그린하우스(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공사 중
	인제	온실 농장(소각 폐열 활용)	
	음성	유리온실, 농산물 선별 및 가공/체험장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2017 (3)	제주시	온실 농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중
	통영	식용 곤충 사육시설(소각 폐열 활용), 건강문화센터	
	군위	온실 농장(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체험시설	
2018 (5)	제주도	관상어 양식장(소각 폐열 활용)	타당성 조사 중
	괴산	소각장 발전 폐열 활용 그린하우스, 클레이아트 체험관 설치	
	군산	소각장 발전 활용 스마트팜, 어린이 원예체험 테마파크 등 설치	
	장성	소각장 발전 폐열 활용 주민 온수 공급 설치 등	
	성주	소각장 발전 폐열 활용 주민편의시설, 곤충체험장 등 설치	
	김해	소각장 발전 폐열 활용 주민편의시설, 온실 설치 등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2차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규사업의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 5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는데, 2개 사업이 사업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취소 되었고, 2개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8년 9월말 까지 실집행실적이 없으며, 1개 사업만 실집행실적이 발생하였다.³⁾ 그리고 2018년에 신규추진하는 사업들은 2018.9월말까지 집행실적이 0원이며, 2018년 10월에 집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지역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18.9월말 기준					2019 예산	비고
		시작	종료	2018 예산	교부	예산 현액	집행액	실 집행률		
강원 AA	5,900	2016	2018	1,520	1,520	1,520	760	50.0	0	2018년 종료
경기 BB	0	2017	2019	1,000	0	0	0	0.0	0	타당성부족으로 사업취소
충남 CC	0	2017	2019	1,000	0	0	0	0.0	0	
경남 DD	5,400	2017	2019	1,000	1,000	1,000	500	50.0	1,500	
경북 EE	5,200	2017	2019	1,000	1,000	1,000	0	0.0	1,500	행정절차 지연으로 2018.8월 교부, 연말 집행예정
제주 FF	5,200	2017	2019	1,000	1,000	1,000	170	17.0	1,500	
충북 GG	5,900	2018	2020	100	100	100	0	0.0	500	2018.8월 교부, 10월중 집행예정
전북 HH	5,600	2018	2020	100	100	100	0	0.0	500	
전남 II	5,200	2018	2020	100	100	100	0	0.0	500	
경북 JJ	5,315	2018	2020	100	100	100	0	0.0	500	
경남 KK	5,200	2018	2020	100	100	100	0	0.0	500	

자료: 환경부

이와같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년도 예산

3) 실집행실적은 다르지만, 경남 통영, 경북 군위, 제주 구좌 지역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는 3개 지역 공동으로 발주(2018.7월)되었다.

이 편성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BB와 충남 CC의 경우, 2017년 신규사업으로 2017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타당성부족으로 사업취소가 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다.

2018년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며, 2019년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⁴⁾, 2차년도 사업비(5억원)를 모두 편성하였다.

타당성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용역기간을 4~6개월 산정하고 있으므로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9월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역	용역기간
2015	청주·아산·경주·영천·양산	2015.7.24.~2016.2.15.(약7개월)
2016	인제·음성·제주1	2016.7.6.~2016.11.11.(약4개월)
2017	통영·군위·제주2	2017.7.3.~2017.12.15.(약5개월)
2018	김해·군산·장성·성주·괴산	2018.9.4.~2019.3.2.(약6개월)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예산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 신규사업(3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신규사업의 경우 2019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잔여사업비(15억원)를 모두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 7월에 공고되었고, 용역기간이 300일

4) 한국환경공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7.27.일에 공고하였고, 2018.8.17.일에 개찰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의 공고문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므로 2019년 5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해 일찍 사업을 시작한 강원 AA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2016~2018년)에서 공사기간을 유추해보면 공사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DD, 경북 EE, 제주 FF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2019년에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실제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정하고,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 AA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경과 (2016~2018년)]

2016.6	타당성조사 공고(착수일로부터 135일까지)
2016.12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착수일로부터 260일)
2018.8	시설공사 공고(착공일로부터 18개월)

출처: 나라장터(<http://www.g2b.go.kr/>)

가. 현 황

미래환경산업펀드 사업¹⁾은 환경기업²⁾의 육성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정부주도로 펀드를 조성하여 환경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과 동일한 13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미래환경산업 펀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환경산업 펀드	20,000	13,000	13,000	13,000	0	0.0

자료: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이 환경기업³⁾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에 약 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⁴⁾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8
- 2)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환경산업체는 57,858개소이다.(대기업 768개소, 중기업 6,081개소, 소기업 51,010개소)
- 3) 환경기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과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을 말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4) 가. 주목적 투자대상(2018년 공고문 기준)
 -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 포함(약정총액 20%이내)

환경부는 2017년 미래환경산업 1호 펀드를 시작으로, 2018년 2호에 이어 2019년에는 3호 펀드를 조성하고자 한다. 1호 펀드는 2017년도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200억원과 민간투자 220억원을 합한 총 420억원으로 결성(2017.12월)되어 현재 환경기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호 펀드는 2018년도 정부예산 130억원 등 최소 217억원의 펀드를 조성(민간투자비율 최소 40%)할 계획이며 2018년 10월에 운용사가 선정되었고 투자조합 설립과정에 있다. 그리고 2019년에도 3호 펀드 조성을 위해 13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환경부는 펀드 관리를 한국벤처투자(주)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벤처투자(주)는 운용사 선정 및 관리 등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미래환경산업 펀드 현황]

	펀드규모 ¹⁾	경과
1호 (2017년)	420억원(결성완료) - 정부 200억원 - 민간 220억원	2017. 6 운용사 선정 2017.12 펀드결성(420억원) 2018. 4 1개사 8억원 투자 2018.9월말 현재 4개사 147억원 투자 (환경기업 97억원, 비환경기업 50억원)
2호 (2018년)	217억원 이상(예정) - 정부 130억원 - 민간 87억원 이상 :	2018. 10. 운용사 선정
3호 (2019년)	217억원 이상(예정) - 정부 130억원 - 민간 87억원 이상	

주: 1) 민간투자비율 40% 이상을 목표로 함
자료: 환경부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나. 주목적 투자비율

(1)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2)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

*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 미적용

나. 분석의견

첫째, 원활한 펀드 조성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

1호 펀드(2017년 예산)의 경우 2017년 6월 운용사가 선정되었으나, 운용사 측의 잠재투자처 변경, 민간자본 유치 지연 등으로 펀드 결성이 12월에 이루어졌고, 실제 투자는 2018년 4월에 최초로 투자되었다.⁵⁾

2호 펀드(2018년 예산)는 2018년 2월부터 운용사 선정을 위해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차 공고에서는 신청사가 없었고, 2차와 3차 공고에서는 1개사가 신청하여 대표자의 투자 실적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며, 10월 현재 4차 공고 후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었다.

[미래환경산업 2호 펀드 운용사 선정 경과]

구분	공고일	경과
1차	2018.2	신청사 없음
2차	2018.5	1개사 지원 → 2차 심의 탈락
3차	2018.7	1개사 지원 → 1차 심의 탈락
4차	2018.8	3개사 지원 → 운용사 최종 선정

자료: 환경부

1호 펀드와 2호 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운용사 선정, 민간자본 유치 등 각각의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사업지연 시 정부의 출자금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지출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망환경기업 등에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펀드 간 동일한 회사에 투자되거나, 특정 기업에 투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호 펀드와 2호 펀드, 3호 펀드는 각각 운용사를 두고 운영되고, 각 펀드는 결

5) 운용사 공고 시 펀드 결성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 운용사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다만 연장사유가 존재할 경우 6개월까지로 연장 가능하다.

성시기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주목적 투자대상이 동일⁶⁾하고 기업당 투자 상한금액이 약정금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원의 동의 시 20%이상 투자도 가능하다.⁷⁾ 따라서 각 펀드는 1개 업체에 집중 투자가 가능하며, 각각의 펀드에서 동일한 1개 업체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8년 9월말 기준 1호 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환경분야 1개사에 8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1호 펀드 결성액 42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호 펀드는 기업당 약정금액 20% 상한기준 존재하나 해당 투자 조합원 총회 결의시(조합원 동의시) 20%이상도 투자 가능하여 추가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향후 결성될 2호 펀드와 3호 펀드도 동일한 회사에 투자가 가능하다.⁸⁾

6) 환경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1호 펀드는 최근 2년간 환경분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2호 펀드의 경우 50%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2017년 공고(1호 펀드)	2018년 공고(2호 펀드)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대주주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 포함(약정총액 20%이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7) 기업당 약정금액 20% 상한기준 존재하나, 해당 투자 조합원 총회 결의시(조합원 동의시) 20%이상도 투자 가능하다.

8)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펀드에서 매년 결성된 각각의 펀드에서 1개 업체에 중복투자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에 산정책처, 2017.10.)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 펀드는 2011~2014년까지 매년 정부가 25억원을 출자하여 4개의 펀드가 결성되었는데, 4개의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중 4개 업체가 2개 내지 3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펀드로부터 중복 투자를 받았다.

[미래환경산업 1호 펀드 투자실적]

	A사	B사	C사	D사	합 계
업종	환경	환경	환경	바이오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투자금액 (9월말 기준)	8억원	84억원	5억원	50억원	147억원
투자시기	2018.4	2018.3/8.(2회)	2018.8	2018.8	

자료: 환경부

미래환경산업 펀드 사업의 목적이 스타 환경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2017년부터 매년 자펀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특정 몇몇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펀드를 조성하여 다양한 환경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투자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펀드별로 투자분야를 정하거나, 각 펀드의 투자한도를 강화하는 등 사전에 방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¹⁾²⁾은 도서해안지역의 지하수 확보를 위해 땅 속에 지하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위를 높이고 해수의 침투를 방지해 용수를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하수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30억 1,000만원으로 인천 용진군 대이작도(총사업비 20억원, 2018~2019년)와 전남 영광군 안마도(총사업비 99억원, 2018~2020년) 2개 지역의 공사비가 각각 15억원과 15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하수관리	11,560	13,704	13,704	24,412	10,708	78.1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0	1,500	1,500	3,010	1,510	100.7

자료: 환경부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은 2013년 타당성조사,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부처에 대한 이견(지방상수도 사업 국토교통부³⁾ 추진 부적절 등) 및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었다가, 2018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2018년 수시배정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8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비율(국고 90%, 지방비 10%)이 정해졌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5131-301의 내역사업

2) 지하수 저류지 사업, 또는 지하수댐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3)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이었으나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 관리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은 지하차수벽 설치와 취수시설인 관정개발, 관측시설인 관측정 개발을 포함한다.

[웅진군 대이작도 및 영광군 안마도 사업 개요]

구 분	인천 웅진군 대이작도	전남 영광군 안마도
개발규모	용수공급계획량 110m ³ /일 취수시설용량 180m ³ /일	용수공급계획량 100m ³ /일 취수시설용량 200m ³ /일
총사업비	공사비 20억원(설계는 2014년에 시행) - 2018년 500백만원 - 2019년 1,500백만원 재원분담 : 국고 90%, 지방비 10%	공사비 99억원(설계는 2014년에 시행) - 2018년 1,000백만원 - 2019년 1,510백만원 (잔여사업비 7,390백만원) 재원분담 : 국고 90%, 지방비 10%
공사기간	2018~2019년	2018~2020년
사업내용	지하차수벽 60m 취수시설 관정 3개소, 취수용량 60m ³ /일/공 관측정 4개소	지하차수벽 460m 취수시설 : 관정 5개소, 취수용량 40m ³ /일/공 관측정 5개소

주 : 2014년에 실시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내용이며, 보완설계 후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8년 수시배정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2018년 8월에 국고 90% 지자체 10%로 사업비 분담 비율이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2018년 9월 분담률 확정에 따른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에 협약체결 및 공사발주 등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4년 12월에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별도의 설계는 없을 예정이나, 설계 후 4년 가량이 경과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지방비 분담이 정해지면서 지방비 확보

가 필요하며, 발주를 위한 사업공고 기간 및 선정 등을 고려할 때 10월 공사발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을 2018~2019년 2개년으로 계획하였고, 2018년도 예산에 5억원, 2019년도 예산안에 15억원이 편성되어 공사비 전액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8년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9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 재원 분담(국비 90%, 지방비 10%)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와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도서지역의 용수확보와 해수침투 방지를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서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할 계획으로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편성되었다.⁴⁾ 그러나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도 사업비를 분담(국고 90%, 지방 10%)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법정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 추진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예를 들어 자치단체 보조사업)하는 경우 소유권 및 관리운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나, 법정민간대행의 경우 국가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므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된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지자체도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소유권과 운영관리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 종료 후 지자체와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 「지하수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셋째, 동 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은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수원 개발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이 다르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은 도서지역의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을 근거로 한다.

한편, 지방상수도의 공급 및 관리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환경부는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⁵⁾를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상수도시설 확충 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 중에는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이 있으며, 도서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이나 관로개발, 해저관로, 저수지 및 배수지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8호⁶⁾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70%이다.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모두 도서지역의 용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지하수법」과 「수도법」 각각을 근거로 하며, 국가 부담 비율은 90%와 70%로 차이가 있다.

[근거 법령 비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 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세부사업명	지하수관리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재원	일반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	3,010백만원	149,890백만원
근거법령	지하수법	수도법
추진방식	법정민간대행(한국수자원공사)	자치단체보조사업
분담비율	국비 90%, 지방비 10%	국비 70%, 지방비 30%

5)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기준보조율 70%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당초 사업추진 부처가 달랐고 또한 근거법률이 달랐기 때문이다.⁷⁾

그러나 사업목적이 도서지역의 용수 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지하수 자원을 확보·활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⁸⁾

7)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2018.6.8.)에 따라 「지하수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동 사업도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8) 환경부는 동 사업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사업들과 기존의 환경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추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¹⁾은 지역간 수자원 편차,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물공급 여건에 대응하여 장래 물 공급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현행 시군 단위의 용수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10억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0	0	0	1,000	1,000	순증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현행 시·군 단위로 구분된 용수 확보·공급체계를 보다 넓은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1개 단위유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역단위로 장기 물수요(생활용수, 공업용수 등)를 도출하고, 이를 충당할 최적의 수자원(빛물, 하수처리수, 대체취수원, 원거리 광역상수원 등)조합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23

나. 분석의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에 대상 유역도 미리 선정하는 등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하며(「물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환경부는 하천유역의 특성, 댐·보 등 주요 하천시설 물 및 물공급 전환을 위한 규모(지자체 5개소 이상)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20개 내외의 유역단위로 구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즉, 5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유역단위로 설정하고 유역단위 내에서 물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행 「수도법」²⁾은 수도를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로 구분하고, 수도의 합리적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전국수도종합계획(환경부)과 광역상수도³⁾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환경부, 정부조직개편 전에는 국토교통부), 지방상수도⁴⁾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지자체)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즉, 전국과 지자체단위로 구분할 뿐 유역단위의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3) 광역상수도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하며,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는 수도,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 4)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현행 수도 관련 계획]

계획	전국 수도종합계획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	환경부	환경부	지자체
근거법	수도법 제5조	수도법 제4조	수도법 제4조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가 전국을 유역단위로 구분하고, 단위유역 별로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부는 2019년에는 1개의 단위유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개 단위유역에 대해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연차별 계획 수립 물량(단위유역 수)만 정하고 있고 대상 지역은 선정되어 있지 않다.

[연도별 수립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물 량	1	4	4	5	6

자료: 환경부

따라서 2019년에 실시하는 사업지역은 다른 단위유역에 대한 용수공급체계 계획 수립 시 확산 매뉴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2차년도부터는 용수확보의 시급성에 따른 연차별 대상유역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¹⁾은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4호에 따라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1% 감소한 341억 1,900만원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계속사업 19개소(28,901백만원)와 신규사업 8개소(3,21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²⁾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억원과 하수처리수 지하수 충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7,122	46,154	46,154	34,119	△12,035	△26.1
하수처리수 재이용	47,122	46,154	46,154	32,119	△14,035	△30.4
물재이용기본계획 수립	0	0	0	1,500	1,500	순증
하수처리수 지하수충전시범사업	0	0	0	500	500	순증

자료: 환경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05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들에 대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2018년 9월말 기준 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57.4%로, 자치단체별로 실집행률을 구분해 보면, 2018년 예산을 지원한 26개 지역(사업) 중 실집행률이 0%가 10개, 10% 이하가 3개, 30% 이하가 2개, 50% 이하가 1개, 70% 이하가 3개, 70% 초과가 7개 사업³⁾으로 조사되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2018.9월말 기준 자치단체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6,154	41,677	41,677	5,877	47,554	27,276			57.4

[2018.9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실집행률 분류]

(단위: 백만원, %)

사업 수	0%	10%이하	30%이하	50%이하	70%이하	70%초과
26(2)	10(1)	3	2	1	3	7(1)

주: 1. 재정지원 사업 24개, 민간투자사업 2개임

2. ()는 민간투자사업

자료: 환경부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지연(10~12월 선급금 지급 예정), 행정절차(재원협의 등)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계속사업 중 경기 나나 지역의 하수재이용 사업의 경우 2018년 8월

3) 충남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충남 예산시 하수재이용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 실집행률(자치단체집행률)은 사업진행경과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기준으로 물 재이용 공급처 변경 등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고 설계자문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경기 마마 지역의 하수재이용 사업, 경기 바바 지역의 재이용 사업, 충남 자자 지역의 하수재이용 사업 등 3개 사업은 2018년 9월말 현재 재원협의중이거나,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

[실집행률 0%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2017 실집행률	2018실집행			2019 예산	집행부진 사유
				예산액	집행	집행률		
충남 가가	4,459 (3,121)	2017 ~2018	0.0	2,621	0	0.0	0	사업계획 및 재원협의 지연으로 착공 지연
경기 나나	15,668 (10,969)	2017 ~2019	26.4	5,227	0	0.0	966	설계용역 중지(물 재이용공급처변경), 설계자문 등 행정 절차 이행중
경기 다다	5,000 (3,500)	2017 ~2020	35.0	1,200	0	0.0	720	설계용역 진행중
경기 라라	800 (560)	2018 ~2019	2018 신규	224	0	0.0	135	설계 용역중 (선급금 미집행)
경기 마마	14,000 (9,800)	2018 ~2020	2018 신규	500	0	0.0	930	행정절차 진행중 (계약심사 완료, 설 계준비중, '18.11월 선급금 집행 예정)
경기 바바	7,498 (5,249)	2018 ~2020	2018 신규	500	0	0.0	1,900	투자심사(도)에 따 른 행정절차 지연
경기 사사	2,861 (2,003)	2018 ~2020	2018 신규	84	0	0.0	768	설계중 (선급금 미집행, '18.12월 54백만원 준공금 집행예정)
충남 아아	5,921 (4,145)	2018 ~2020	2018 신규	2,327	0	0.0	364	설계 용역추진 지연 (20189 설계용역 공고)
충남 자자	3,683 (2,578)	2018 ~2020	2018 신규	100	0	0.0	991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추진중으로 지연

주: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임

자료: 환경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의 2019년도 예산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환경부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경과와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 등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 지자체 실집행률이 사업추진경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충남 AA, 충남 BB, 경기 CC 등 3개 지자체는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 기간	위탁기관	2018.9월말			2019 예산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충남 AA	15,474 (10,832)	2018 ~2020	한국환경공단	3,000	3,000	2,700	2,350
충남 BB	12,900 (9,030)	2018 ~2020	한국환경공단	3,612	3,612	3,612	813
경기 CC	3,000 (2,100)	2018 ~2019	농어촌공사	500	500	500	640

자료: 환경부

사업을 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 실집행률은 높지만 추진경과가 빠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례로 충남 AA 지역의 하수재이용 사업은 예산액은 3억원이나 환경부는 30억원을 교부하였고,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에 27억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체결(계약액 9억원, 사업기간 10개월)되었고, 2019년 4월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교부액 30억원 중 20억원은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사업비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사업을 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 실집행과 실제 공사의 진행경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므로, 환경부는 사업비가 위탁기관의 이월

액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의 집행실적 뿐 아니라 실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대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제2차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재이용실적 제고와 함께 수요처를 고려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11년에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08년 4.3%에서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1단계) 14.2%, 2016년(2단계) 23.4%, 2020년(3단계) 31.1%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수는 하수처리장 내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식수대 등으로 재이용하는 장내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에 활용하는 장외용수로 구분되는데, 장외이용을 2016년(2단계) 기준으로 23.4%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2016년 실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과 비교해보면,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5.6%로 계획 23.4% 대비 66.7%에 불과하고, 장외 재이용률은 7.7%로 당초 계획 17.1%의 45% 수준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단계별 목표 및 실적 비교]

(단위: 천톤/년)

단계 구분	계 획				실적 (2016년)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년도	2008년	2012년	2016년	2020년	2016년
장외 재이용	276,477	504,428	1,090,233	1,576,712	473,296
- 공업용수	15,044	104,834	353,034	507,090	62,226
- 농업용수	26,840	50,052	84,811	106,388	12,428
- 유지용수	213,537	279,248	527,094	777,940	396,626
- 기타 도시용수	21,056	70,294	125,294	185,294	81,778
장내 재이용	401,541	401,541	401,541	401,541	567,989
합계	678,018	905,969	1,491,774	1,978,253	1,121,047
전체 재이용율	10.8 %	14.2 %	23.4 %	31.1 %	15.6%
장외 재이용율	4.3 %	7.9 %	17.1 %	24.8 %	7.7%

주: 장내(하수처리수 재이용장 내) 재이용은 2008년기준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

자료: 환경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 2011.9., 환경부, 「2017환경통계연감」, 2018.5.

장외용수 재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용수별로 살펴보면, 농업용수의 경우 계절적 한시적 이용에 따른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업용수는 당초 목표량 연간 353백만톤 대비 연간 62백만톤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광역상수도를 통한 공업용수 공급(물관리 일원화 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되어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진 만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요처를 고려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주택가 RFID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사업¹⁾은 음식물쓰레기 RFID²⁾ 중량제 방식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50세대 이상)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RFID가 부착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예산안은 4억 4,600만원³⁾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30%)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비 보급 사업	0	0	0	446	446	순증

자료: 환경부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4억 4,600만원은 중량기기(수거통) 850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약 5만세대(60세대/대당)가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등) 1,173만 세대(2017년말 기준) 중 기(既) 보급된 29%를 제외한 833만 세대 중에서 기기보급률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08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시스템)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ex,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3) 446백만원 = 850대 × 175만원 × 30%(보조율)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과거 사업 추진 시 카드사용의 불편, 고장 및 수리비용 발생 등의 사유로 주민 불편이 제기되었던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2007~2009년 전주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표준모델이 구축되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2011년에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 23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2~2014년에는 환경부 단독으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국고보조 사업(총141억원, 국고보조율 30%)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RFID 전자정보시스템 운영만 실시하였다.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도입 경과]

- 2007~2009 : 전주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 2010.6~12 : 행정안전부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 실시(행정안전부 예산 16억원 투입)
 - 2010년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표준모델 구축,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 계속 추진 협의
- 2011.2 : 행정안전부와 공동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확산사업 실시 (10개 지자체 대상, 환경부 예산 23억원, 행안부 예산 10억원 투입)
- 2012~2014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국고보조 지원(총141억원, 보조율 30%)
- 2015 이후 : 지자체사업으로 전환,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RFID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 2017 기준 136개 지자체-총355만세대 적용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는 무게 중심의 종량제 방식으로, 기존의 부피 중심의 종량제 봉투 방식 등에 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

과가 35% 정도 크나, 지자체의 재원부담 등의 사유로 전국적인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자체 독려를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과거 사업 추진 시 카드 사용의 불편함⁴⁾과 고장 및 수리비용 발생⁵⁾ 등의 사유로 주민 불편이 제기되었던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유지 관리 지원체계 마련 등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단된 사업의 재추진이라는 점과 향후 의무화 도입 계획⁶⁾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기한을 명시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대별 ID카드가 필요하며, ID카드를 종량기기에 태그하여 인식시킨 후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5) 연간 고장건수는 전체 장비의 1.5%로 추정되며, 수리비용은 무상~242천원 범위로 추정

6) 환경부는 2018.9.4.일에 발표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에서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가. 현 황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지원 사업¹⁾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국제분담금)이다. 2019년도 예산안으로 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보건기반 강화 협력	5,570	4,667	4,667	5,607	940	20.1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지원	0	0	0	940	940	순증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에 예산안 지원 시 재원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을 명확히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는 WHO²⁾서태평양사무소(WPRO)의 산하기구 성격으로, 환경부가 유치의향서를 제출(2018.1.31.)함으로 유치된 센터이다. 센터는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와 오염물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을 기능으로 한다.

2019년도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무실임차료, 연구비 등 연간 소요액을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204-301의 내역사업

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19.9억원으로 예상하고, 운영비는 환경부가 9.4억원, 유치도시가 5억원을 부담하고, 사무실임차료 2.5억원은 유치도시가 부담³⁾하며, 연구사업비 약 3억원은 센터 자체 조달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19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예산을 19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⁴⁾

[WHO 아시아환경보건센터 단계별 발전계획]

구분	1단계(~2021)		2단계(2022~2024)		3단계(2025~)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인건비	15.5억원 (8명)	정부(19억원) 시(5억원)	15.5억원 (8명)	정부(19억원) 시(5억원)	15.5억원 (8명)	정부(19억원) 시(5억원)
운영비	8.5억원		8.5억원		8.5억원	
사업비	15억원	자체조달	27억원	자체조달	32억원	자체조달
인건비			9.5억원 (8명)		12억원 (10명)	
연구비	15억원		17.5억원		20억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부-WPRO간 MOU 체결(2018.12 예정)로 연구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나, 국제기구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예산확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기상청의 APEC기후센터(APCC)⁵⁾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동의를 통해 설립을 승인받은 아태지역 기후관련 공식 협력기구이나, 기상청에서 운영비와 연구활동비 대부분을 지원(2019년 예산안 기준 80억 6,700만원)하고 있다.⁶⁾

3) 유치의향이 있는 도시는 서울과 인천으로, 서울은 운영비 5억원과 사무실 제공, 인천은 사무실 제공을 제안하였다.

4) 2019년에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생활환경 등 3개팀(8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4팀 20~25명 규모로 지속 확대)

5) APEC 기후센터(APCC : APEC Climate Center) :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APEC 21개 회원국의 동의를 통해 설립을 승인받은 아태지역 기후관련 공식 협력기구로,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다.

6)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지원금은 연 1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어 2014년 이후에는 2016년에 1차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기구가 되지 않도록 설립 전에 기구의 역할 및 WHO와 재원분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¹⁾은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관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3,400만원(3.5%)이 증가한 129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에서 추진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전기울타리, 방조망, 차단시설(철책 등), 포획틀 등) 설치비용을 농가 및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과 동일한 4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포상금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포상금과 밀렵신고 포상금,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고포상금, 생태계조란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이며, 2018년도 동일한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24,883	12,522	12,522	12,956	434	3.5
야생동물 피해예방	5,172	4,974	4,974	4,974	0	0.0
포상금	5	61	61	61	0	0.0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를 근거로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을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 사업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단가 150만원) 500개 설치를 지원하며, 국고에서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를 계획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환경부는 전기울타리, 방조망, 차단시설(철책 등), 포획틀 등 야생동물이 농가 등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포획틀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환경부도 포획틀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의 비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야생동물 피해예방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예산	4,974백만원 (농가 3,774백만원, 지자체 1,200백만원)	300백만원 (농가 300백만원)
근거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원방식	자치단체 보조 (농가) 국고 30%, 지자체 30%, 자부담 40% (지자체) 국고 50%, 지자체 50%	자치단체 보조 (농가) 국고 40%, 지자체 40% 자부담 20%
지원내용	전기울타리, 방조망, 차단시설(철책 등), 포획틀 등	포획틀

자료: 환경부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따라서 사업추진 시 사업간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에 사업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관장하는 부처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사업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포상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아울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신고포상금으로 6,100만원의 포상금을 편성하였는데, 4개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이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포상금과 밀렵신고 포상금,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고포상금, 생태계교란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과 제57조³⁾를 근거로 한다. 4개 중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고포상금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고, 생태계교란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2018년에 신규도입되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신고포상금 내용]

신고포상금명	법적근거	내부규정	비 고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및 제57조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16.12월 도입
밀렵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국제적멸종위기종 신고 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2017.2월 도입
생태계교란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생태계교란생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2018년 신규 도입

자료: 환경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도별 포상금 집행 실적을 보면, 2014~2015년에는 0건이고, 2016년에 밀렵신고에 대한 1건, 2017년에 밀렵신고 1건과 국제적멸종위기종 4건, 2018년 8월 밀렵신고 6건과 국제적멸종위기종 3건으로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은 2017년 기준 6,100만원 중 500만원, 2018년 8월말 기준 6,100만원 중 900만원으로 저조한 편이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신고포상금 연도별 실적]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내역
2014	17	0	0	17	-
2015	55	0	0	55	-
2016	58	1	0	57	밀렵신고 1
2017	61	5	0	46	밀렵신고 1 국제적멸종위기종 4
2018.8	61	9	-	-	밀렵신고 6 국제적멸종위기종 3

자료: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17년에 도입되었고, 생태계교란생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2018년 도입되어 향후 증가할 수 있으나, 2018년 경과를 볼 때 6,100만원의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포상금의 경우 AI 후속조치로 2016년 12월에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야생동식물의 불법포획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환경부는 수자원정보, 지하수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돗물, 상수도, 토양, 지하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5개로 파악되며 한국홍수통제소(소속기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물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시스템명	보유 정보	운영기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이수, 수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지형공간 등	한국홍수통제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 (https://www.gims.go.kr/)	지하수시설, 지하수 정보지도,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등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상수도정보화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web)	수돗물수질자료, 상수도통계, 수도시설 현황 등	한국환경공단 (국가수도정보센터)
토양지하수정보화 시스템 (http://sgis.nier.go.kr/)	토양·지하수수질측정망 정보, 오염현황 및 정화현황 등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물환경측정망, 물환경측정자료(수질), 보모니터링 정보 등	국립환경과학원

자료: 환경부

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은 각각의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 사업¹⁾에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2억 2,000만원, 지하수관리 사업²⁾에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8억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4240-510

2) 코드: 일반회계 5131-301

원,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³⁾에서 상수도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 7억 3,000만원과 토양지하수정보화시스템 운영 예산 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사업⁴⁾은 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2억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물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자원정보 구축 및 운영	2,126	2,200	2,200	2,200	0	0.0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204	210	210	220	10	4.8
지하수관리	11,560	13,704	13,704	24,412	10,708	78.1
지하수 정보화	800	800	800	800	0	0.0
상하수도정보화 시스템구축	1,684	1,723	1,723	2,135	412	23.9
상수도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730	730	730	730	0	0.0
토양지하수정보화 시스템 구축	302	382	382	431	49	12.8
물환경정책시스템 구축	1,370	1,467	1,467	1,320	△147	△10.0
물환경정책시스템 유지보수	248	251	251	222	△29	△11.6

자료: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였으나 2018.6월 정부조직개편으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국가상수도정보화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화 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은 환경부에서 구축·운영하던 정보시스템이다.

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501

4)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3-502

나. 분석의견

동일한 정보를 여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기능 중복성, 업무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시스템 통합 및 물 관련 정보 공동활용체계 마련,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기준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을 11개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는 1개로 통합할 계획이다.

[환경부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통합 일정]

번호	시스템명	운영기관	추진일정
1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청	'19년
2	한강유역관리연구센터	한강청	통합완료('17년)
3	낙동강물길잡이	낙동강청	통합완료('17년)
4	금강유역관리연구센터	금강청	통합완료('17년)
5	영산강섬진강유역관리연구센터	영산강청	통합완료('17년)
6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한강청	'18년
7	낙동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낙동강청	'18년
8	물환경정보시스템	과학원	통합완료('17년)
9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	과학원	'19년
10	수질자동측정망데이터공개시스템	과학원	'19년
11	비점오염원 홍보사이트	환경공단	'19년

주: 한강수계는 다 수계와 달리 상·하류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간 갈등이 극심하고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통합시스템에서 제외함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계획은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 소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계획으로, 상하수도정책관의 국가상수도정보화시스템이나 토양지하수정보화시스템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2018.6) 전에 계획·추진하던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지하수정보센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앞서 살펴본 5개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해보면 각 시스템에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하수수질측정망 관측 자료를 국가지하수정보센터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고, 수도시설현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⁵⁾

[유사 정보 제공 사례 : 지하수수질측정망 자료]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South Korean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s. The top screenshot is the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website, showing a menu with '지하수수질측정망'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highlighted. The bottom screenshot is the 'Soil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 (SGIS)' website, showing a sidebar menu with '지하수 수질측정망'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highlighted under the '사이트맵' (Sitemap) section.

이와 같이 여러 시스템이 구축된 이유는 과거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5) 물 관련 정보시스템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별로 생성되는 자료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화작업을 하였고, 각 부처는 타 부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 발생한 것으로, 2018년 6월 물관리 부처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환경부에서 여러 물관련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여러 정보시스템(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혼동되고 유지관리 등에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는 통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¹⁾으로,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²⁾을 통해 환경공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 받고 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7,700만원 증액된 1,048억 5,200만원이다.

[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공단 출연	95,948	103,475	103,475	104,852	1,377	1.3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2019년 총지출 1,869억 9,500만원에서 공단 자체수입 821억 4,300만원을 제외한 1,048억 5,2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자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13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자원순환제도운영의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수입 142억 5,8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15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검사·분석·인증 50억 7,300만원, 폐기물제도 운영 20억 2,100만원, 통합환경관리정책지원 38억 600만원이 증액된데 기인한다.

[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출연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예산 (A)	2019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지차지원(A-B)	103,475	104,852	1,377	1.3
<지출소요(A=a+b+c+d)>	171,981	186,995	15,014	8.7
□ 인건비(a)	77,471	82,839	5,368	6.9
□ 경상비(b)	7,849	7,743	△106	△1.4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3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예산 (A)	2019예산안 (B)	증감	
			B-A	(B-A)/A
□ 사업비(c)	86,661	96,413	9,752	11.2
○ 환경시설진단	10,705	11,127	422	3.9
○ 검사/분석/인증	10,254	15,327	5,073	49.5
○ 폐기물제도운영	5,968	7,989	2,021	33.9
○ 폐기물자원화	36,362	36,362	-	-
○ 국가정책지원	8,063	11,871	3,806	47.2
○ 교육/홍보/정보화	15,032	13,487	△1,546	△10.3
- 환경사랑홍보교육	3,100	3,100	-	-
- 정보화사업	3,481	3,481	-	-
- keco에듀센터운영	451	430	△21	△4.7
- 한국환경공단연수원 신축	8,000	6,476	△1,524	△19.1
○ 협력사업	277	250	△27	△9.7
<자채수입(B)>	68,506	82,143	13,637	19.9
○ 환경시설진단	19,471	18,198	△1,273	△6.5
○ 검사/분석/인증	13,888	14,364	476	3.4
○ 폐기물제도운영	18,299	33,156	14,857	81.2
○ 폐기물자원화	11,920	11,657	△263	△2.2
○ 기타수입	959	1,599	640	66.7
- 예탁이자	226	132	△94	△41.6
- 기타잡수입(자산매각 등)	733	346	△387	△52.8
- 비출연 수지차	-	1,121	1,121	순증
○ 이월결산잉여금 수입	3,969	3,169	△800	△20.2

자료: 환경부

12-1.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규정 준수 필요

가. 현황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³⁾은 국민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공유 및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교육관 운영·관리, 환경사랑공모전 운영, 환경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안은 3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3 내역사업

[2019년도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공단 출연	95,948	103,475	103,475	104,852	1,377	1.3
환경사랑홍보교육	1,097	3,100	3,100	3,100	0	0

자료: 환경부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홍보교육관 운영·관리로 전국 7개 소(서울, 안성, 부산, 의령, 대구, 광주, 전북)에 환경분야 시청각 교육, 작품 전시, 진로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민에게 환경보전 실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공익광고, 사진, 정크아트(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 등의 공모 사업이다. 그리고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대한민국친환경대전 등 환경관련 전시회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그 외 대국민 환경보호 정책 홍보, 신문광고, 환경관련 콘서트, 시상식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사랑홍보교육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홍보교육관	○ 환경분야 시청각 교육, 작품 전시, 진로교육 등
환경사랑공모전	○ 공익광고, 사진, 정크아트 등 공모전
홍보관 운영	○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대한민국친환경대전 등 전시회 참가
언론홍보	○ 뉴미디어 홍보, 신문지면광고비 등
환경행사지원	○ 환경콘서트 협찬, 환경분야 시상식 협찬 등

자료: 한국환경공단

나. 분석의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뉴미디어 홍보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뉴미디어 정책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홍보대행 용역’을 매년 연례적으로 발주해왔으며 2019년 예산안에도 온라인(SNS) 홍보대행이란 내역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물건비	운영비	1,041	-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제작 156 - 홍보관 관람객 기념품 82 - 인쇄매체(신문 등) 광고비 206 - 환경행사 및 전시회 참가비 129 - 홍보관 운영 공공요금 5 - 서울홍보교육관 임차료 15 - 홍보교육관 집체 및 위탁교육 4 - 홍보교육관 전시물 보수 21 - 사업수행 운영비 21 -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추진 146 - 온라인(SNS) 홍보대행 용역 185 - 환경전시회 설치비 70
	여비	30	- 홍보관 운영 등 국내여비 30
이전지출		129	-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시상금 56 - 녹색경영대상 시상금 38 - 매경 환경경영대상 시상금 36
자산취득비		1,900	- 서울 홍보교육관 리뉴얼 850 - 대구 홍보교육관 리뉴얼 95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등 25 - 홍보관 집기류 등 45 - 홍보관 음향장비 등 30

자료: 한국환경공단

2017~2018년에 공고된 뉴미디어 용역의 과업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도 있지만, 공단 인지도 강화, SNS대응,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

관리 대응 등 기관홍보와 언론대응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뉴미디어 홍보 영역 과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공단 뉴미디어 홍보채널 분석 및 전략 수립	○ 공단 SNS 각 매체별 운영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공 ○ 공단 뉴미디어 운영전략 수립 및 제시 ○ 공단의 인지도, 친밀도, 사업 홍보, 위상 강화 ○ 매체별 방문자(이용자), 조회수 확대 및 댓글 등 소통 강화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및 관리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 운영 및 관리 ○ 신규 홍보채널 제안 및 타기관(기업)과 CO-WORK 방안 제시 ○ SNS 채널 및 다양한 온라인 매체 등에 공단 관련 광고를 진행 ○ 온라인 일일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대응 방안 제시 - 특정 이슈 발생시 즉각 보고, 집중 모니터링 및 악성 이슈 차단 등
공단 서포터즈 운영·관리	○ 서포터즈 모집 홍보 및 선발, 발대식 및 해단식 개최 ○ 서포터즈 운영·관리 - 환경정책·이슈 및 공단사업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자료: 한국환경공단 2017~2018년 영역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의 출연 목적은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 등 대 국민 친환경생활 홍보를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동 영역에 공단 홍보와 언론대응 성격의 과업 내용을 포함하여 출연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출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⁴⁾ 따라서,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뉴미디어 홍보 영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다만, 한국환경공단은 뉴미디어 홍보 영역비용을 출연 사업비와 공단 경상경비에서 일부 집행해 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뉴미디어 홍보 영역비용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경비	37	42	6	-	113	40
환경사랑홍보교육	-	82	18	191	90	-
합계	37	124	24	191	203	40

주: 2013~2017년 결산기준, 2018년은 예산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둘째, 뉴미디어 홍보 용역비 집행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3조⁵⁾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뉴미디어 홍보 용역 비용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2017년 용역(과업기간 2016년 10월 5일~2017년 10월 4일) 비용 1억 200만원을 2016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였고, 2018년 용역(과업기간 2017년 10월 10일~2018년 10월 9일) 비용 1억 12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지출하였다.

[뉴미디어 홍보대행 용역 회계연도 불일치 사례]

(단위: 천원)

지출일시	지출 건명	용역계약기간	금액
2013.09.04	2013년 온라인 홍보대행 선금 지급	13.08.20~14.08.19	36,740
2014.09.02	2013년 온라인 홍보대행 준공금 지급		68,860
2014.09.16	2015년도 뉴미디어 홍보대행 선금 지급	14.08.18~15.08.17	56,000
2015.09.11	2015년도 뉴미디어 홍보대행 준공금 지급		24,000
2016.10.14	2016년 뉴미디어 홍보대행 준공금 지급	15.09.08~16.09.07	89,000
2016.12.27	2017년도 뉴미디어 홍보대행 선금 지급	16.10.05~17.10.04	102,000
2017.11.07	2017년도 뉴미디어 홍보대행 준공금 지급		102,000
2017.12.15	2018년 뉴미디어 홍보대행 선금 지급	17.10.10~18.10.09	101,200
2018.06.22	2018년 뉴미디어 홍보대행 선금 2차 지급		40,480

자료: 한국환경공단

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는 당해연도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사랑홍보교육 사업비에서 연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문화공연 협찬 광고비, 신문 지면 광고비의 홍보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사랑홍보교육 출연 사업비에서 매년 친환경 메시지 전달 등을 위한 문화공연 협찬비, 신문 지면 광고비, 환경분야 시상식 협찬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2017년 기준 3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18년 3억 4,700만원, 2019년 예산안에는 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환경공단 문화공연 등 협찬·광고비 지출 및 계획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공연 협찬 광고	48	64	73	73	85	89	110
신문지면 광고	175	156	179	134	163	185	185
환경분야 시상식 협찬	60	65	65	65	73	73	73
합계	283	285	317	272	321	347	368

주 : 2013~2017년 결산기준, 2018년은 예산, 2019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그런데 문화공연 협찬 광고의 경우 공단의 공식적인 공모 절차나 내부심의 등의 예산 지원 근거가 미흡함에도, 매년 동일한 기관과 기업에게 행사 협찬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2017년도 문화공연 협찬 예산 지원 사례]

그린플러그드 공연 협찬	JTN 미디어 문화공연 협찬
- 목 적 : 환경과 음악을 테마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음악제 협찬을 통해 관람객에게 친환경 메시지 전달	- 목 적 : 증가하는 문화에 대한 국민수요를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 실시로 환경보전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협찬 광고 추진
- 일 자 : '17.5.20~5.21	- 기 간 : '17.1.~12.
- 금 액 : 30,000천원(vat 포함)	- 금 액 : 56,650천원(vat 포함)

자료: 한국환경공단

또한, 2017년 기준 언론사 광고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3개 언론사에 62건의 지면광고 대해 총 1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다. 신문 광고의 경우 정책홍보 효과가 거의 없는 단순한 기관이미지, 사업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에 빈번하게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며, 일반 언론사 이외에도 홍보 효과가 낮은 한국경제학회보, 한국PD연합회보, 환경동우회보 등에도 빈번하게 광고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불필요한 단순한 기관 이미지 홍보를 지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2.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⁶⁾은 도심 거점 지역에 교육지원 및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환경공단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었다.

2019년 예산안은 4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2019년도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공단 출연	95,948	103,475	103,475	104,852	1,377	1.3
K-eco에듀센터운영	399	451	451	429	△22	△4.9

자료: 환경부

K-eco에듀센터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892.56㎡ 면적의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월 1,129만원의 임차료(684만원 관리비 별도)를 지불하고 있다.

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3 내역사업

[K-eco에듀센터운영 운영 현황]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대로 22 8F
- 면적 : 892.56㎡(약 270평)
- 임차기간 : 2017.12.20. ~ 2018.12.19.
- 임차료 : 11,286천원/월(관리비 6,836천원/월)

자료: 한국환경공단

[2019년도 K-eco에듀센터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물건비	운영비	364	- 일반수용비(토너및사무용품등) : 20 - 전화, 전기 등 각종 공공요금 : 103 - 시설장비유지비 : 10 - 사무실임차료 : 163 - 사업수행인력 운영비 : 64 - 교육훈련비 등 기타운영비 : 4
	여비	1	- 시내출장 여비 : 1
	용역비	20	- 전산장비관리용역 : 20
자산취득비		44	- 복사기 구입 : 10 - 청사비품구입 : 10 - 사무용 PC구입 : 10 - 책상 등 기타 조달구매 비용 : 14

자료: 한국환경공단

나. 분석의견

K-eco에듀센터가 본래 사업 목적인 교육지원보다는 환경부, 유관기관 등과의 회의실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K-eco에듀센터 운영 사업 목적은 도심 거점 지역에 교육지원 및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하여 공단의 체계적인 내·외부 교육을 지원하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워킹 시설로 업무효율성 제고하는데 있다.

그러나 K-eco에듀센터가 본래의 사업 목적인 교육지원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주로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회의 및 스마트워킹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K-eco에듀센터 이용현황을 유형별 살펴본 결과, 교육건수는 2015년 13건에서 2016년 12건, 2017년 7건, 2018년 3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1% 미만이며, 대부분은 업무 회의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K-eco에듀센터 연도별·유형별 이용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7
업무협의 및 스마트워킹	1,899	1,945	1,875	1,119
유관기관 회의	141	120	139	73
사업설명회	9	3	1	0
자문회의	27	32	38	31
용역보고회	19	16	34	15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	30	48	52	24
교육	13	12	7	3
합계	2,138	2,176	2,146	1,265

자료: 한국환경공단

따라서, K-eco에듀센터 운영 사업의 당초 사업목적인 교육기능에 맞는 운영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⁷⁾⁸⁾

또한, 현재 환경분야 교육시설로서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이 202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므로 K-eco에듀센터와의 용도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K-eco에듀센터를 서울 지역 사무실과 회의실 임차 용도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출연 사업목적과 맞지 않은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7) 한국환경공단은 공단 업무공간 부족으로 외부고객 대상 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나, 향후 스마트워킹과 교육기능이 접목된 '스마트워킹 에듀센터'로 활용하여 직무역량교육, 법정 의무교육 등의 교육과 사내강사 활용 기반의 환경매체별 전문역량 교육 등 환경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8) 환경노동위원회 「2017회계연도 환경부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18.8)에서도 환경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여의도에 소재한 에듀센터를 환경부 및 공단의 스마트워크 센터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사업취지인 에듀센터의 교육 기능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2-3.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황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⁹⁾은 환경분야 직무관련자 교육, 세미나, 포럼, 내부직원 직무교육 등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출연 내역 사업이다.

2016년 충청북도 제천시에 부지가 선정되어 총 61,428㎡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2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부지예정지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2016~2020년	322억원	- 부지: 61,428㎡ - 건축연면적: 10,666㎡	충청북도 제천시

자료: 한국환경공단

2019년 예산안은 64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다.

[2019년도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공단 출연금	94,117	103,475	103,475	99,581	△3,894	△3.8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4,207	8,000	8,000	6,476	△1,524	△19.1

자료: 한국환경공단

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3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2018년도 예산 집행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2019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은 2017년에 연수원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계약(전체공사 : 132억원, 1차공사 : 37억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설계 변경과 인허가 등이 순차적으로 늦춰졌고, 실제 공사는 2018년 9월에 착공되었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6년	■ 대상부지(후보지) 합동조사 및 최종 후보지 선정 ■ MOU 체결(공단, 충청북도, 제천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사 선정 ■ 설계용역 계약 체결
2017년	■ 공공건축 설계 완료 ■ 문화재 지표조사표본조사 완료 ■ 연수원 건립 부지매입비 집행 ■ 연수원 건립사업 시설공사 계약
2018년	■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변경설계 및 인허가 ■ 시설공사 착공('18.9월 ~) ■ 시설공사 2차분 계약 ■ 임목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2019년	■ 시설공사 3차분 계약 ■ 시설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
2020년	■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시설공사 준공(9월) 예정

자료: 한국환경공단

또한, 연수원 신축 사업의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38억 6,400만원이 2018년으로 이월되어 2018년도 예산 현액은 118억 6,400만원이다. 2018년도 예산현액의 현재까지 집행액은 900만원으로 집행률이 0.1%에 불과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연도말까지 61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¹⁰⁾된다고 밝히고 있는 바 2019년도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0)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까지 예상공정율 63% 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예산집행율은 부진한 상태이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 61억원(1차 공사비 등 3,799백만원, 2차 공사비 등 2,301백만원)이 집행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년도별	예산액 (A)	추 경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6	942	-	-	-	942	36	3.8	3.8	874	32
'17	7,197	-	874	-	8,071	4,207	58.5	52.1	3,864	-
'18	8,000	-	3,864	-	11,864	9	0.1	0.1	-	-

주: 2018년도 지출액은 9월 현재 기준임

자료: 한국환경공단

제천시의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 사업종료 기간을 연장('19년 → '20년)하였고, 2018년 예산액이 대부분 2019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¹¹⁾

11)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제천시의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속한 시설공사 추진을 통해 사업종료 기간인 2020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¹⁾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²⁾을 통해 환경산업기술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출연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5억 6,400만원이 감액된 429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3,532	48,529	48,529	42,965	△5,564	△11.5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9년 총지출 554억 5,400만원에서 기술원 자체수입 124억 8,900만원을 제외한 429억 6,5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2019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8예산(C)	'19예산안(D)	증감	
			(D-C)	(D-C)/C
수지차지원(B-A)	48,529	42,965	△5,564	△11.5
<수입예산(A)>	3,670	12,489	8,819	240.3
○ 환경기술평가 수수료	735	597	△138	△18.8
○ 녹색인증제도 수수료	165	165	0	0
○ 순환자원품질표지 인증	-	20	20	순증
○ 시험분석 수수료	406	406	0	0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수수료	36	36	0	0
○ 환경정책융자금운영	1,201	1,201	0	0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 1)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2

(단위: 백만원, %)

구분	'18예산(C)	'19예산안(D)	증감	
			(D-C)	(D-C)/C
○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	682	1,698	1,016	149.0
○ 결산잉여금 등	445	8,366	7,921	1,780.0
<지출예산(B=a+b+c+d)>	52,199	55,454	3,255	6.2
□ 인건비(a)	15,065	17,558	2,493	16.5
□ 경상비(b)	1,180	1,215	35	3.0
□ 예비비(c)	382	600	218	57.1
□ 사업비(d)	35,572	36,081	509	1.4
○ 환경인증평가·분석	5,097	4,847	△250	△4.9
- 환경기술평가	1,600	1,300	△300	△18.8
- 녹색인증제도 운영	421	421	0	0
-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	50	50	순증
- 환경제품기술 시험분석	1,370	1,370	0	0
- 환경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1,443	1,443	0	0
- 물질·공정별 DB 구축	263	263	0	0
○ 환경기술산업 육성	8,131	9,352	1,221	15.0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980	980	0	0
- 환경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	799	799	0	0
- 환경정책 융자금 운영	663	663	0	0
- 환경산업해외진출 컨설팅	848	848	0	0
- 해외환경협력센터 운영	1,955	1,955	0	0
- 환경기술산업 정책연구	322	1,322	1,000	310.6
- 토양환경센터 운영	1,688	1,688	-	-
- 환경적정기술보급지원	876	1,097	221	25.2
○ 지속가능발전	2,354	2,354	0	0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1,095	1,095	0	0
- 지속가능소비생산 확산	599	599	0	0
- 환경보건안전관리 지원	660	660	0	0
○ 환경산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19,990	19,528	△462	△2.3
- 정보통합시스템 관리운영	2,028	2,028	0	0
- 국유재산 및 인력관리 운영	11,123	9,508	△1,615	△14.5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6,839	7,992	1,153	16.8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1. 환경산업연구단지 폐수처리비용의 명확한 산출 근거 마련 필요

가. 현황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³⁾에 근거하여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2017년 6월 5일)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⁴⁾에 의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사업⁵⁾을 맡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5,300만원 증액된 7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3,532	48,529	48,529	42,965	△5,564	△11.5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3,513	6,839	6,839	7,992	1,153	16.8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분석 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폐수처리비용에 직접적인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이외에 연구지원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⁶⁾에 따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2 내역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라 결정된 사용료를 입주기업에게 부과하고 있다. 주요 비용은 시설운영비(시설, 미화, 보안, 폐수처리), 시설관리비(조경, 정보시스템, 공공요금), 지원사업비(기술지원, 창업지원), 입주기업유치비 등이다.

[2019년도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입·지출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	2018 (A)	2019 (B)	증감 (B-A)	지출	2018 (A)	2019 (B)	증감 (B-A)
임대수익	458	886	427	시설운영비	3,584	4,013	429
관리수익	107	298	191	시설관리비	2,196	2,590	394
대관수익	5	10	5	지원사업비	825	1,155	330
기타수익	112	504	392	입주기업유치비	234	234	0
합계	682	1,698	1,016	합계	6,839	7,992	1,153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9년 환경산업단지 운영 비용 79억 9,200만원에 서 예상 수입액인 16억 9,800만원을 제외한 62억 9,400만원을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필요한 수지차 예산안으로 산출하고 있다.

[2019년도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사업 예산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18 예산(A)	'19 예산요구(B)	증감	
			(B-A)	(B-A)/A
수지차지원(B-A)	6,157	6,294	137	2.2
수입(A)	682	1,698	1,016	149.0
지출(B)	6,839	7,992	1,153	16.9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수입 지출 예산 중 시설운영비 내 폐수처리비용을 환경 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에게 부과하고 기타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폐수처리비는

제13조(환경산업진흥단지 등의 사용료 결정)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사용유량, 오염물질 종류 및 농도, 부하량에 따른 부과가 원칙⁷⁾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실험수행시에 비정기, 비정량적으로 배출되는 환경산업단지의 폐수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량에 따른 부과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입주기업에게 부과하는 폐수처리단가를 개별 폐수처리량에 따른 고정단가(원/㎥)를 적용하되, 유사 규모(처리량 : 200~300㎥/일 수준) 폐수중 말처리시설의 운영단가와 비교하여 4,300원/톤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2019년 기준 8,400만원의 수입(70개 입주기업 기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지출 비용은 연간 9억 6,300만원으로 예상되어 8억 7,900만원의 수지차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2019년도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수익·지출안]

(단위: 백만원)

구분	수익(A)	지출(B)	차액(B-A)
금액	84	963	879
산출근거	· 4,300원/톤/월×23톤× 70개사*12개월	· 1,433천원/월×70개사× 12개월×0.8(보정율)	-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러나 폐수처리시설 지출비용의 세부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폐수처리시설 지출예산(963백만원, '19년 기준)의 내용 중 단지 내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 대기, 악취처리) 기본 운영비뿐만 아니라, 실험기반시설 관리(원수 공급 등) 및 입주기업 연구활동 지원(실험원료 반·출입, 유해화학물질관리 등)을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있어 산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⁸⁾

7)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7.9.28.)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폐수처리시설 지출예산 9억 6,300만원에는 대기·악취처리시설 운영비, 실험기반시설 관리비(원수공급 등), 입주기업 연구활동 지원(원료 반·출입, 유해화학 물질관리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폐수처리비용은 4억 5,946만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도 폐수처리시설 지출예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폐수처리시설	연구지원시설	총유지관리비
전문 업체 위탁	인건비	160,420	126,889	287,310
	운영관리비	0	123,848	123,848
	기타경비	9,285	9,403	18,689
	수선유지비	0	10,800	10,800
	소계	169,707	270,940	440,647
	일반관리비	10,182	16,256	26,439
	기업이윤	17,989	28,720	46,709
	부가가치세	19,788	31,591	51,000
	위탁관리비 계	217,666	347,508	561,000
운영 관리 비용	전력비	103,141	0	103,141
	폐기물처리비	114,335	0	114,335
	수도비	2,336	0	2,336
	건식탈취기 유지보수	0	143,825	143,825
	부가가치세	21,981	14,383	36,563
	운영관리비 계	241,792	158,208	402,200
유지관리비 총계		459,458	505,715	963,00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러한 비용산출내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폐수처리비 산출근거 자료에 제시된 폐수처리 총원가(연간 4억 6,353만원)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예산을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산업연구단지 폐수처리비용을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13-2.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의 개발·보급 수요를 감안한 과제발굴 필요

가. 현황

환경적정기술⁹⁾ 보급·지원 사업¹⁰⁾은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의 개량·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2억 2,100만원(25.2%)이 증액된 1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3,532	48,529	48,529	42,965	△5,564	△11.5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1,000	876	876	1,097	221	25.2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CTCN¹¹⁾ 사무국을 통한 개도국 기술 수요 파악과 국내 우수 기술과의 매칭 등을 위한 CTCN 기술지원에 2억 2,1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9) 환경적정기술이란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을 의미한다.

10)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2 내역사업

11) CTCN(Climte Technology Center & Network)은 개도국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환경산업기술원은 '16.7월 CTCN에 가입되었다.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 예산 요구 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

요구내역	'18 예산(A)		'19 예산요구(B)		증감 (B-A)
	금액	산정내역	금액	산정내역	
계	876		1,097		221
적정기술 개발·시범보급	876	- 동남아 5건 (시장육성형, 지역개발형)	876	- 적정기술 5건 (시장육성형, 지역개발형)	-
CTCN 기술지원	-	-	221	- 기술지원 1건, 개도국 협력회의 1회	221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분석 의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과제의 지원 수요가 다소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개발·보급 가능성이 높은 과제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은 적정기술개발·시범보급 과제 공고를 통해 2016년 4개국 5개 과제 5억 8,400만원, 2017년 6개국 8개 과제 8억원을 지원하였다.

[2016~2017년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 지원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대상국	과제금액
'16	환경분야 적정기술 평가모델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주)국토환경연구소	인도네시아	180,000
	생물학적 모기 방제 기술 개발 및 적용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태국	99,000
	베트남 소규모 마을 폐수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	다이텍연구원	베트남	115,000
	폐식용유 및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콕스토티브 개발 및 보급	(주)플린트랩	라오스	90,000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현지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주)펠로스	캄보디아	100,000
	소계			584,000

(단위: 천원)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대상국	과제금액
'17	캄보디아 현지 재료를 이용한 세라믹 필터 및 정수기 개발과 적용	세라믹 기술원	캄보디아	100,000
	개발도상국 보급을 위한 저가형 정화조 장치개발 및 적용	그린텍 컨설팅	캄보디아	100,000
	라오스 현지 최적화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콕스토브 개발 및 보급	(주)플린트랩	라오스	102,000
	라오스 마을단위시설을 위한 CFM 활용 소규모 분산형 급속정수시스템	(주)국토환경연구소	라오스	100,000
	농업폐기물(사탕수수)을 재활용한 생활용수 및 식수공급 장치개발 및 적용	퓨어 엔비텍	베트남	100,000
	종합 방제 기법을 이용한 열대 아시아(태국) 지역의 모기방제 기술개발 및 적용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태국	99,000
	흡착 성능이 향상된 현지 생산 광물 소재 이용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몽골	100,000
	지하수를 이용한 마을별 식수공급 시설 보급 사업	지에코에너지	에티오피아	99,000
소계				800,00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정기술개발·시범보급 과제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5개(지정 5개), 2017년 8개(지정 5개, 자유 3개) 과제를 공고했으나, 매년 1차 공고에서 최소 과제 지원 수에 미달되어 연구기관이 모두 선정되지 못하고, 재공고를 거쳐 과제 연구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공고의 경우도 1개 연구기관만 응시한 과제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고된 연구과제의 개발수요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적정기술 보급·지원 사업 지원과제 지원 현황]

(단위: 개)

2016년					2017년				
구분	1차 공고		재공고		구분	1차 공고		재공고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지정과제 A	1	0	1	1	지정과제 A	3	1	-	-
지정과제 B	1	0	1	1	지정과제 B	-	-	-	-
지정과제 C	5	1	-	-	지정과제 C	1	1	-	-
지정과제 D	2	1	-	-	지정과제 D	1	1	-	-
지정과제 E	2	1	-	-	지정과제 E	-	-	1	1
					자유과제 F	6	4	-	-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적정기술의 특성상 기술분야가 제한적이고 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이에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CTCN 기술지원 사업은 개도국 기술수요 파악 및 국내 우수기술과의 매칭을 통해 개도국 기후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적정기술개발·시범보급 과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CTCN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과제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3-3. 우수환경산업체 심사 수수료 수입액 과다 편성 개선 필요

가. 현황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¹³⁾에 따라 글로벌 환경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환경기업을 우수한 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과 동일한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3,532	48,529	48,529	42,965	△5,564	△11.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1,142	980	980	980	0	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사 사업으로 추진했던 ‘적정산업기술협력사업’의 살펴보다라도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쟁률이 1:1(2개 과제 공모 2개 과제 선정)에 그쳐 2018년에는 예산이 미반영된 사례가 있다.

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013년 15개 기업이 지정된 이후 2017년 누적 기준으로 58개 기업이 우수환경 산업체로 지정되었다.

[우수환경산업체 연도별 지정 현황]

(단위: 개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정기업 수	15	15	9	5	14
누적기업 수	15	30	39	44	58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분석 의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심사 수수료 수납액의 계획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적정한 수수료 수입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신청 자격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환경산업 영위기업¹⁴⁾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절차는 ‘사전검토-심사평가-현장조사-지정심의’ 등 4단계 평가가 진행되며, 사업실적, 기술력, 시장성, 고용성, 발전성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심사가 이루어진다.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통해 “적합”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며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하다.

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절차]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만,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환경산업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수수료]

구 분	납부수수료	대상기업
심사 수수료	500,000 원	심사위원회 평가 대상기업
현장 조사비	500,000 원	현장조사·지정심의 대상기업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건수가 2015년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건수는 2014년 78건에서 감소하다 2017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38건으로 감소하는 등 기업의 평가 건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신청기업 및 평가 건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청기업 수	67	44	51	69	47
평가	심사평가	56	33	33	38
	현장조사	22	15	11	16
	소계	78	48	44	54
선정기업 수	15	9	5	14	10

주: 2018년은 9월 기준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에 따라 평가건수의 감소를 고려하여 수수료 수입의 계획액도 매년 낮춰왔으나 실질적인 수납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실질적인 기업의 신청 및 평가 건수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수입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수수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수납액(B)	차액(B-A)	수납율(B/A)
'14년	100	64	36	64.0
'15년	100	33	67	33.0
'16년	65	31	34	47.7
'17년	65	34	31	52.3
'18년 7월	36	19	16	55.6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현황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으로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환경정책자금은 지원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차보전방식의 환경산업육성융자¹⁾, 환경개선자금융자²⁾ 사업과 재정융자방식의 재활용산업육성융자³⁾, 천연가스 공급시설설치자금⁴⁾ 사업이 있다.⁵⁾

환경산업육성 융자는 시설자금,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산업체에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5,800만원 증액된 36억 4,200만원이다. 환경개선자금융자는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2,800만원 증액된 56억 1,500만원이다. 재활용산업육성융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시설 설치자금 및 경영안전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83억 6,500만원이다.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공급시설(충전소) 설치 비용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9억원이 편성되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4

2)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5

3)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01

4) 코드: 에너지 및 자원지원특별회계 1633-308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자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금은 민간부문과는 별도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고자하는 지자체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환경정책융자금 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방식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이차보전 융자	환경산업육성 융자	중소 환경산업체	시설자금 7년(3년거치 4년상환) 운전자금 5년(2년거치 3년상환)
	환경개선자금	오염배출시설 및 유해화학 물질취급시설 설치기업	시설자금 7년(3년거치 4년상환)
재경 융자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시설자금 10년(3거치 7년상환) 운전자금 5년(2년거치 3년상환)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천연가스공급사업 허가 취득 사업자	시설자금 15년(5년거치 10년상환)

자료: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9년도 환경정책융자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환경산업육성융자(융자)	2,571	3,384	3,384	3,642	258	7.6
환경개선자금(융자)	3,682	4,787	4,787	5,615	828	17.3
재활용산업육성융자(융자)	132,936	128,365	128,365	128,365	0	0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민간융자금	4,900	4,900	4,900	4,900	0	0
합계	144,089	141,436	141,436	142,522	1,086	0.8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정책융자금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사업’⁶⁾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과 동일한 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6)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2 내역사업

[2019년도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	43,532	48,529	48,529	42,965	△5,564	△11.5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539	663	663	663	0	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년도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사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예산과 동일하게 출장비 6,069만원, 용역비 3억 8,800만원, 홍보비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2019년도 환경정책융자금 운영 사업 예산안 산정 내역]

'18 예산(A)		'19 예산요구(B)		증감 (B-A)
금액	산정내역	금액	산정내역	
663	- 여비 : 60,685천원(심사 및 완료 점검 실태조사 등) - 용역비 : 388,000천원(사업 성과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등) - 홍보비 : 60,000천원(신문광고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663	- 여비 : 60,685천원(심사 및 완료 점검 실태조사 등) - 용역비 : 388,000천원(사업 성과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등) - 홍보비 : 60,000천원(신문광고 및 홍보 인쇄물 제작 등)	-

자료: 환경부

이차보전융자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융자신청기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취급금융기관⁷⁾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다.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자금대여신청이 이루어지고 기술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을 취

7)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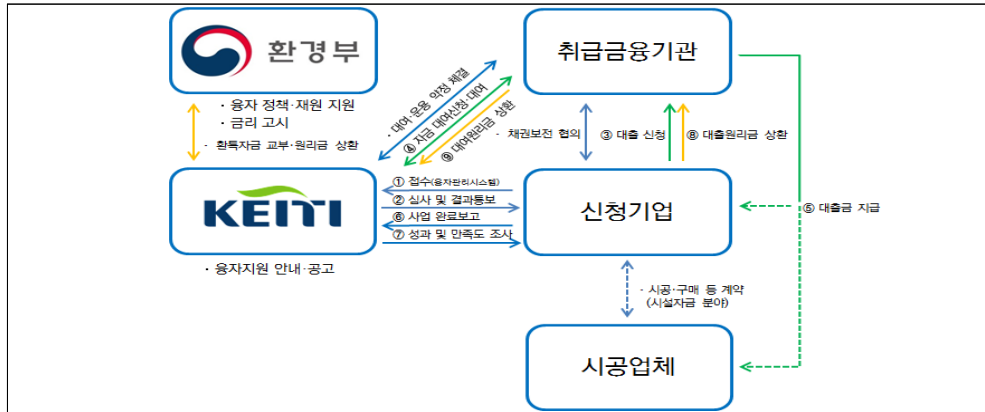
제27조(취급 금융기관)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illegible]

재정융자사업인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차보전 융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신청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격심사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심사를 거치면, 한국산업기술원에게 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기술원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융자자금을 취급금융기관을 거쳐 기업에게 대여한다. 취급금융기관은 대출원리금상환업무를 대행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기업이 상환한 원리금은 환경산업기술원을 거쳐 환경부로 상환된다.

[환경정책융자금 재정융자 사업 절차]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나. 분석 의견

환경정책융자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정책융자금 지원 이후 융자사업자의 성과자료 제출에 대한 관리감독, 융자취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환경정책융자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320개소에 1,401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 476개소 2,128억 900만원, 2016년 498개소 2,189억 1,400만원, 2017년 571개소 2,446억 7,100만원으로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2014년 152개소 737억 3,400만원에서 2017년 337개소 1,329억 3,600만원으로 592억 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정책자금융자금 연도별·유형별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14년도(A)	‘15년도	‘16년도	‘17년도(B)	증감(B-A)
합계	개소	320	476	498	571	251
	금액	140,157	212,809	218,914	244,671	104,514
환경산업육성자금	개소	47	95	89	93	46
	금액	23,396	45,500	45,500	41,877	18,481
환경개선자금	개소	109	144	145	136	27
	금액	34,663	55,862	62,000	62,000	27,337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개소	152	229	260	337	185
	금액	73,734	103,617	103,556	132,936	59,202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개소	11	7	3	4	△7
	금액	5,250	4,716	4,900	4,900	△350
중소도시지방상수도 개발자금	개소	1	1	1	1	0
	금액	3,114	3,114	2,958	2,958	△156

주: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자금은 사전 신청한 지자체의 사업 취소로 인하여 2018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22조⁸⁾에서 환경정책융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이하 “용자사업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용자사업자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요구시에 자금사용과 설치 등 사업진행현황을 보고한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30일 이내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

8)「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2조(사업자의 보고의무) ①용자사업자는 기술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련 상황을 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진행보고** : 기술원의 자금사용과 설치 등 진행현황 보고 요구 시

2.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사업성과보고**

가. 환경산업육성자금은 익년도 3월까지 융자지원 전·후 연도의 2년간 매출액(성장성, 수익성 등) 및 고용현황 등 보고(해외진출자금은 수출실적 보고 포함)

나. 환경개선자금의 오염방지시설은 설치 전·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실측)결과,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설치(또는 개선) 이후의 상 취급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 및 개선명령(또는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보고

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융자지원 전·후연도의 2년간 매출액(성장성, 수익성 등) 및 고용현황 등 보고

라.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융자지원 전·후 연도의 2년간 충전소 이용 차량수 및 충전량 등 보고

4.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수사·공판 발생 즉시

나. 기타 융자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이해당사자와의 분쟁, 민원발생 즉시

를 해야한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융자금 지원기업에게 지원 전후 연도의 사업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융자사업자의 사업성과 자료는 융자지원 전·후 연도의 2년간 매출액(성장성, 수익성 등)과 고용현황, 수출실적, 오염물질 배출량, 충전소 이용 차량수 및 충전량 등으로 지원연도 다음해 3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융자사업자의 보고의무 이행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업완료 보고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사업완료 이후 융자사업자의 사업성과보고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융자사업자는 사업성과자료를 융자관리시스템에 직접 제출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제출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산업기술원은 융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보다는 매년 설문조사 외부용역⁹⁾으로 성과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 사업도 재활용사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산업육성융자자금을 한정되어 있으며, 설문 응답 비율도 전체 융자사업자 중 37.5~7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환경정책자금융자금 지원기업 성과조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조사연도	'15년		'16년		'17년	
	지원연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17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조사대상	105	220	103	165	218	284
	조사실시	69	161	49	78	100	218
	비율	65.7	73.2	47.6	47.3	45.9	76.8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성과조사와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용역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정책자금 성과분석 용역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연도	내 용	금액
2013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5,000
2014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9,000
2015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9,500
2016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47,000
2017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 성과분석	29,000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위: 개, %)

구 분	조사연도	'15년		'16년		'17년	
	지원연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17년
환경산업육성자금	조사대상	31	91	40	40	93	80
	조사실시	19	72	18	23	47	56
	비율	61.3	79.1	45.0	57.5	50.5	70.0
환경개선자금	조사대상	68	118	95	85	94	114
	조사실시	32	70	19	33	39	84
	비율	47.1	59.3	20.0	38.8	41.5	73.7
평균 조사 비율		58.0	70.5	37.5	47.9	46.0	73.5

주: 조사연도는 성과분석연도이며 지원연도는 환경정책융자금 지원연도를 의미함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또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3조¹⁰⁾에 따르면 융자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와 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고·통지해야지만 이러한 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별도로 조사한 결과¹¹⁾, 최근 5년간 환경정책융자금 지원기업 중 119개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융자취급금융기관은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에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은 부재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취급금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서 융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성과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의 정보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공유해야한다. 그러나 환경부와 한국

10)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23조(금융기관의 자금 관리) 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융자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가 압류·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폐업 등 사업이 중단되는 때에는 즉시 사유와 현황을 기술원에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11)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정책융자금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건수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2018년 9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융자금이 지원된 기업 2,107개사 중 5.5%인 119개 기업이 부도 또는 폐업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정책자금융자금 운영에서 있어 이러한 규정의 이행과 관리감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환경정책자금융자금 지원기업 부도·폐업 건수 현황]

(단위: 개, %)

지원 연도	총계			재활용산업육성			환경개선			환경산업육성		
	지원 기업	부도/ 폐업	비율	지원 기업	부도/ 폐업	비율	지원 기업	부도/ 폐업	비율	지원 기업	부도/ 폐업	비율
2013	268	32	11.9	143	17	11.9	93	7	7.5	32	8	25.0
2014	306	26	8.5	153	16	10.5	109	4	3.7	44	6	13.6
2015	468	36	7.7	229	20	8.7	144	8	5.6	95	8	8.4
2016	495	17	3.4	261	7	2.7	145	5	3.4	89	5	5.6
2017	570	8	1.4	341	5	1.5	136	3	2.2	93	0	0.0
합계	2,107	119	5.6	1,127	65	5.8	627	27	4.3	353	27	7.6

주: 2013~2017년간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총 43개 지원 기업 중 부도·폐업 기업은 없었음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3년도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268개 기업 중 2018년 9월 현재 32개 기업이 부도·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원연도(T)이후 1년 이내(T+1) 부도·폐업한 기업 비율이 1.9%, 2년 이내(T+2)가 4.9%, 3년 이내(T+3)가 8.2%에 이르고 있다.

[2013년도 환경정책자금융자금 지원기업의 부도·폐업 건수 현황]

(단위: 개, %)

구분		부도·폐업 건수 현황						
		2013 (T)	2014 (T+1)	2015 (T+2)	2016 (T+3)	2017 (T+4)	2018 (T+5)	합계
전체	건수	0	5	8	9	3	7	32
	누적비율	0	1.9	4.9	8.2	9.3	11.9	11.9
재활용산업육성	건수	0	3	2	6	1	5	17
	누적비율	0	2.1	3.5	7.7	8.4	11.9	11.9
환경개선	건수	0	1	3	1	1	1	7
	누적비율	0	1.1	4.3	5.4	6.5	7.5	7.5
환경산업육성	건수	0	1	3	2	1	1	8
	누적비율	0	3.1	12.5	18.8	21.9	25.0	25.0

주: 2013년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연도별 부도·폐업 건수를 의미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가. 현 황

국립생태원 출연 사업¹⁾은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출연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7억 8,200만원이 증액된 585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태전시교육기획·운영 사업은 동식물 생태전시 및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2,200만원이 증액된 63억 600만원이다.

[2019년도 국립생태원 출연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생태원 출연	40,930	49,806	49,806	58,588	8,782	17.6
생태전시교육기획운영	4,829	4,784	4,784	6,306	1,522	31.8

자료: 환경부

생태전시교육기획·운영 사업이 증액된 사유는 생태미디어 체험관 확대 조성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2019년도 국립생태원 생태미디어 체험관 확대 조성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18년 예산(A)	'19년 예산안(B)	증감 (B-A)	비고
생태전시 기획운영	3,172	4,688	1,516	생태미디어 체험관 확대 조성 : 1,500 - 기획,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 : 1,050 - 전시장비,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450
생태교육 기획운영	1,612	1,618	6	

자료: 국립생태원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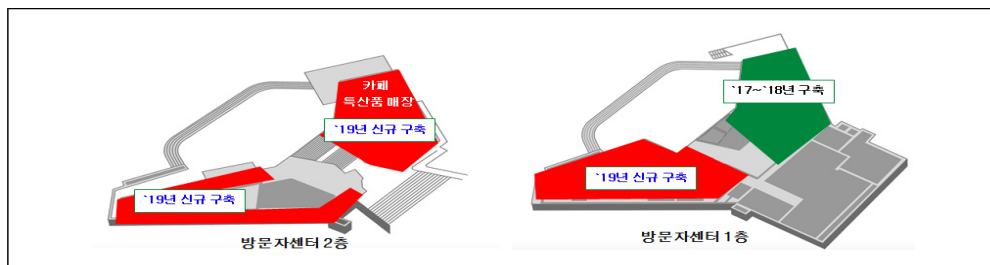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현재 운영 중인 생태미디어체험관의 관람객 이용 실적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체험관의 확대 조성시 고객만족도 제고와 관람객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생태원은 최근 콘텐츠 트렌드 및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동작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문자 센터 내 공간(396㎡)을 활용하여 생태미디어체험관을 2018년 4월에 개관하였다. 이후 생태미디어체험관 시범운영과 유지보수 차원의 일부 콘텐츠를 보강하였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현재 운영 중인 생태미디어체험관의 공간 확대 및 콘텐츠 다양화로 관람객의 수요 충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료화를 통한 수입 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SOC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1층 일부 공간 이외에 1층과 2층에 추가로 체험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태미디어체험관 구축을 통한 방문자센터 리뉴얼 계획(안)]



자료: 국립생태원

그러나 체험관이 2018년 4월에 개관하여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간의 운영성과와 현재 운영 중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동작인식 기술 등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와 추가적인 체험 시설 수요에 대한 의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²⁾

2)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시범 운영 이전 관람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18.2), 2018년말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만족도, 유료 지불 의사, 유사 시설 대비 만족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국립생태원은 생태미디어체험관이 유료화 될 경우 연간 소인 입장 인원과 동반 부모 1인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바탕으로, 예상 관람객 수가 연간 24만 7,665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관람객 수및 체험관 예상 관람객수 현황]

(단위: 명)

생태원 관람인원 (’17년 기준)	구분	대인	청소년	소인	경로	유아	기타	합계
	인원(명)	397,530	46,142	165,110	120,288	109,352	112,609	951,031
	구성비	41.80	4.85	17.36	12.65	11.50	11.84	100.0

체험관	예상관람객	소인 165,110명 + 동반 부모 82,555명(165,110명/2) = 247,665명
-----	-------	---

자료: 국립생태원

그러나 향후 예상 관람객 수는 실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람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활한 동선 확보, 체험 방법 안내, 시간대별 입장 인원 제한, 사전예약제 등의 관람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현재 운영 중인 생태미디어체험관의 이용 실적과 관람객의 콘텐츠 개선 요구 사항, 예상 관람객과 기대수익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체험관 확대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람객들의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발·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1.)에 근거하여 국내에 자생하는 담수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에 관한 연구와 전시관 운영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수행하는 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자체수입 대비 부족분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¹⁾으로 지원 받고 있다. 동 사업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6,400만원이 증가한 204억 2,700만원이다.

[2019년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21,687	19,363	19,363	20,427	1,064	5.5

자료: 환경부

16-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2019년 총지출 228억 8,700만원에서 자체수입 24억 6,000만원을 제외한 204억 2,7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다.

자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결산잉여금이 전년대비 4억 2,0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지출액은 전년대비 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업화지원이 전년대비 5억 1,600만원,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9,700만원 증액에 기인한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3-340

[2019년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18예산 (A)	'19예산안 (B)	증감	
					B-A	(B-A)/A
수입액 (A)	자체수입	입장료	218	218	0	0
		교육비	129	129	0	0
		숙소사용료	140	140	0	0
		시설임대료	37	37	0	0
		소계	524	524	0	0
	이자 수입		115	115	0	0
	결산잉여금		2,241	1,821	△420	△18.7
계		2,880	2,460	△420	△14.6	
지출액 (B)	인건비(a)		7,846	8,043	197	2.5
	경상경비(b)		2,589	2,599	10	0.4
	사업비 (c)	기초연구	2,803	2,811	8	0.3
		산업화지원	1,685	2,201	516	30.6
		정보시스템 구축	422	381	△41	△9.7
		연구장비 확충	1,382	1,244	△138	△10.0
		전시관 운영	1,205	1,342	137	11.4
		교육프로그램운영	396	357	△39	△9.8
		시설운영관리	3,307	3,331	24	0.7
		대외협력·홍보	608	578	△30	△4.9
		소계	11,808	12,245	437	3.7
	계(a+b+c=B)		22,243	22,887	644	2.9
출연예산안(B-A)		19,363	20,427	1,064	5.5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자체 수입 계획 대비 실수입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수입 실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개관이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관람객이 231,793명, 교육생이 10,717명에 이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람객 및 교육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관 람 객	583,399	132,242	219,364	231,793
교 육 생	21,303	1,719	8,867	10,717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그러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자체 수입 실적은 2016년 2억 3,300만원, 2017년 2억 8,000만원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계획 대비 수입실적 달성률은 55.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도별 수입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계획 (A)	실적 (B)	달성률 (B/A)	계획	계획
자체수입	501	233	46.5	501	280	55.9	554	603
입장료	196	146	74.5	196	154	78.6	218	218
교육수수료	129	28	21.7	129	41	31.8	129	129
숙소사용료	140	13	9.3	140	17	12.1	140	140
연구개발수입	0	9	순증	0	19	순증	30	79
시설임대료	36	37	102.8	36	49	136.1	37	37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에 대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입지 여건과 개관 초기임을 감안하여 관람객 확보 및 지속적 유치를 위해, 당초 계획한 입장료 단가보다 낮게 책정했고, 무료 입장객²⁾ 비율이 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무료대상: 만 4세이하 및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 현황]

(단위: 원)

구분	당초 계획 입장료			현행 입장료		
	대인	청소년	소인	대인	청소년	소인
개인	3,000	2,000	1,000	2,000	1,000	1,000
단체	1,500	1,000	500	1,000	500	500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입장료 현황]

기관명(지역)	입장료	비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북 상주)	대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소인 1,000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	대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소인 2,000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법인)
국립생물자원관 (인천)	무료	환경부 소속기관(정부조직)

자료: 환경부

또한, 숙소의 용도가 방문객 숙소로서 각종 교육 및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자 위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수입계획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³⁾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숙박시설 보유 현황]

숙박시설 구성	이용요금
총 13실(1인실 6실, 4인실 5실, 6인실 2실)	4만원, 8만원, 12만원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관람객과 교육생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수입 실적은 정체되어 있어 향후 입장료 단가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

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현재 숙박시설이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숙박업” 허가 및 등록이 불가하여 일반인에게 개방이 불가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및 “숙박업” 등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역 숙박업체 등의 반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류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교육과 숙박 이용율도 높여 자체 수입 실적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16-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에 자생하는 담수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발굴 및 분류·동정, 소장과 담수생물자원 산업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금 사업비 중 연구사업 예산⁴⁾은 2018년 49억 1,000만원, 2019년 예산안은 5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금 대비 연구사업 예산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사업비(A)	10,669	12,468	11,808	12,245
연구사업비(B)	3,067	4,615	4,910	5,393
비중(B/A)	28.7	37.0	41.6	44.0

주 : 2016년, 2017년은 결산기준, 2018년, 2019년은 예산기준임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나. 분석의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위탁연구과제의 기획과 선정, 평가 절차를 면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자원발굴 및 표본확보, 조사발굴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연구를 발주해오고 있다. 전체 연구과제 중 위탁연구과제 비중은 연구인력 충원에 따라 과제수 기준으로 2016년 50%에서 2018년 25.0%로 감소하였고, 연구비 비중으로 보면 2016년 32.9%에서 2018년 30.1%로 소폭 감소하였다.

4) 연구사업비는 기초연구, 산업화지원연구, 정보시스템 구축(연구장비확충비 제외) 예산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위탁연구 비중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A)	자체	위탁 (B)	비중 (B/A)	합계 (A)	자체	위탁 (B)	비중 (B/A)	합계 (A)	자체	위탁 (B)	비중 (B/A)
과제수	32	16	16	50.0	48	30	18	37.5	52	39	13	25.0
금액	3,067	2,057	1,010	32.9	4,615	3,140	1,475	32.8	4,910	3,434	1,476	30.1

주 : 2018년도는 8월 예산 기준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내부규정인「위탁연구과제 운영·관리 세칙」에 근거하여 조달청 공고를 통해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연구과제 연구기관 선정과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탁연구과제가 신청 기관의 부족으로 계속 유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위탁연구과제 계약 방식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개입찰 유찰(2회) 후 수의계약	12	15	12
직접 수의계약	3	2	0
공개경쟁입찰	1	1	1
합계	16	18	13

주 : 2018년도는 8월 현재 기준

자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만, 위탁연구과제 기술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탁연구과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제공고 홍보에 노력하고, 더 많은 연구기관에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5개 기금(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2조 5,98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169억원(1.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60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억원, 고용보험기금 12조 8,599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조 4,196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6,176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941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209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9,435	86,917	86,917	86,322	△595	△0.7
- 일반회계	72,614	86,714	86,714	85,961	△753	△0.9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61	203	203	361	158	77.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460	-	-	-	-	-
기 금	18,315,598	22,194,584	22,194,584	22,512,117	317,533	1.4
- 고용보험기금	10,045,523	13,086,302	13,086,302	12,859,862	△226,440	△1.7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266,849	7,965,492	7,965,492	8,419,624	454,132	5.7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73,698	535,256	535,256	617,601	82,345	15.4
- 임금채권보장기금	423,727	476,972	476,972	494,091	17,119	3.6
- 근로복지진흥기금	105,801	130,562	130,562	120,939	△9,623	△7.4
합 계	18,415,033	22,281,501	22,281,501	22,598,439	316,938	1.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7조 1,22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7,597억원(11.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조 9,414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76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76억원, 고용보험기금 12조 9,794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 9,807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4,611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585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268억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327,053	5,996,438	6,060,418	7,115,931	1,055,513	17.4
- 일반회계	2,170,714	5,833,016	5,896,996	6,941,446	1,044,450	17.7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75,037	80,900	80,900	76,865	△4,035	△5.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302	82,522	82,522	97,620	15,098	18.3
기 금	16,282,555	17,806,833	18,302,244	20,006,473	1,704,229	9.3
- 고용보험기금	9,460,733	10,922,296	11,405,056	12,979,369	1,574,313	13.8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707,775	5,925,584	5,925,584	5,980,724	55,140	0.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9,297	367,260	371,209	461,086	89,877	24.2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 임금채권보장기금	618,414	455,838	459,540	458,519	△1,021	△0.2
- 근로복지진흥기금	136,336	135,855	140,855	126,775	△14,080	△10.0
합 계	18,609,608	23,803,271	24,362,662	27,122,404	2,759,742	11.3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86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6억원(0.7%)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59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4억원이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2,614	86,714	86,714	85,961	△753	△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1	203	203	361	158	77.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460	-	-	-	-	-
합 계	99,435	86,917	86,917	86,322	△595	△0.7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2,71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1,055억원(17.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972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76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76억원이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317,215	5,938,798	6,002,778	7,097,228	1,094,450	18.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5,051	80,900	80,900	76,865	△4,035	△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1,302	82,522	82,522	97,620	15,098	18.3
합 계	2,473,568	6,102,220	6,166,200	7,271,713	1,105,513	17.9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5조 2,284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1,937억원(0.5%)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7조 8,086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조 1,138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조 757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769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534억원이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보험기금	9,460,733	17,269,517	17,269,517	17,808,647	539,13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707,775	14,957,342	14,957,342	15,113,770	156,428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59,297	1,390,450	1,390,450	1,075,704	△314,746	△22.6
임금채권보장기금	618,414	1,448,514	1,448,514	876,900	△571,614	△39.5
근로복지진흥기금	287,311	356,289	356,289	353,368	△2,921	△0.8
합 계	16,433,530	35,422,112	35,422,112	35,228,389	△193,723	△0.5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정구조

2019년도 예산안의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40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55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00만원이 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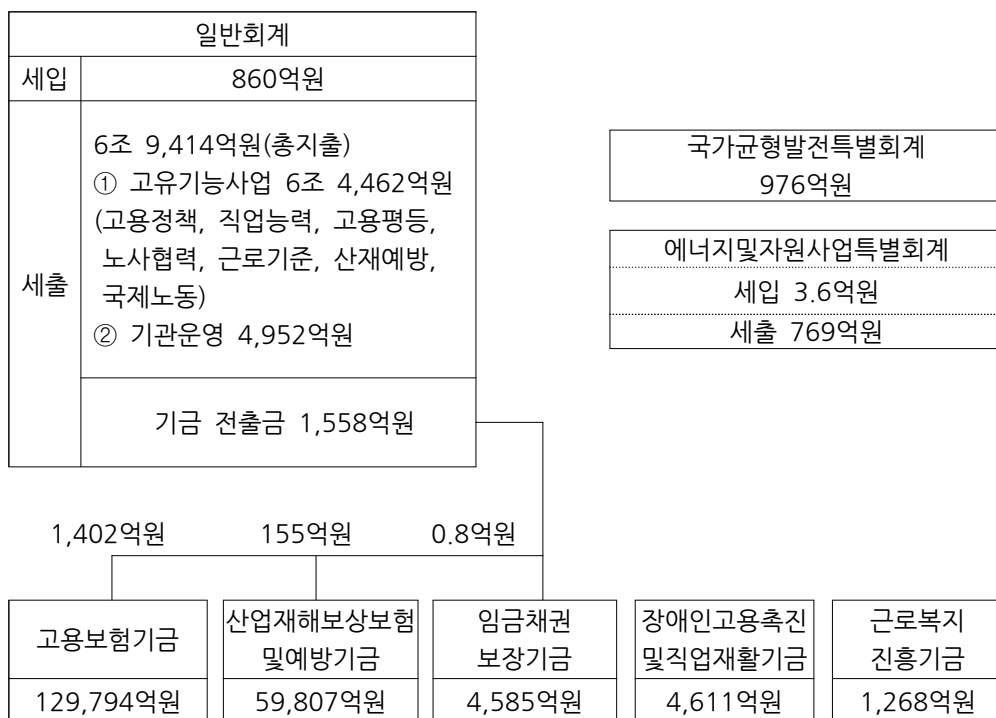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000억원을 예탁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을 예탁하고, 복권기금으로 1억 3,500만원을 반환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00억원을 예탁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600억원을 예탁하고, 복권기금으로 42억 2,900만원을 반환한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총지출 27조 1,224억원



2019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고, ②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여성·신중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 및 고용안전망 예산이 확충되었고, ④ 선도인력 양성 과정 확대 및 폴리텍 대학 하이테크 훈련과정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강화되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청년 대상 구직 수당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증액 편성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사업 등은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직급여 확대 및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의무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예산안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장려금(EITC) 제도와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2,60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따라 신설된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및 머신러닝기반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구축은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화개발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이며,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사업은 공공고용서비스 관련 국제 정책교류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균특)은 제주도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창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사업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통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 중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와 장애인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3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7,500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6,455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구축	4,117
	공공고용서비스 국제협력	1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균특)	1,508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고용보험기금 (1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8,05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1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16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1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725
합 계		260,563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구직급여,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① 구직급여 사업은 지급기간 30일 연장, 지급수준 인상(50→60%)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19.1.예정)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 가입자 12만명(2년형 7만, 3년형 5만)이 반영되었고, ④ 고용창출장려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인원 9.8만명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2개)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41,113	45,413	60,906	15,493	34.1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	21,260	21,260	28,409	7,149	33.6
	청년내일채움공제	184,820	216,400	596,288	379,888	175.5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67,780	72,639	94,946	22,307	30.7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893,179	893,179	1,356,231	463,052	51.8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8,559	8,559	21,821	13,262	154.9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76,573	276,573	357,115	80,542	29.1
	기본경비(노동정책실,비총액)	1,486	1,486	1,937	451	30.3
	기본경비 (산재예방보상정책국,비총액)	312	312	538	226	72.4
	최저임금위원회 기본경비(총액)	71	71	135	64	90.1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고용노동행정혁신역량강화	825	825	1,287	462	56.0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253	253	1,594	1,341	530.0
고용보험 기금 (10개)	고용창출장려금	392,616	549,410	922,217	372,807	67.9
	청년내일채움공제	170,640	208,776	441,127	232,351	111.3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12,507	12,507	19,853	7,346	58.7
	구직급여	6,157,196	6,157,196	7,409,316	1,252,120	20.3
	조기재취업수당	135,429	135,429	210,168	74,739	55.2
	자영업자 실업급여	3,272	3,272	4,913	1,641	50.2
	고용안정장려금	126,479	126,479	159,621	33,142	26.2
	직장어린이집지원	145,125	145,125	162,730	17,605	12.1
	모성보호육아지원	1,311,068	1,311,068	1,455,276	144,208	11.0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	1,222	1,222	1,620	398	32.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 (5개)	장애인고용장려금	199,262	199,262	210,560	11,298	5.7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1,658	23,611	58,727	35,116	148.7
	장애인취업지원	8,380	8,380	16,876	8,496	10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11,790	11,790	17,104	5,314	45.1
	장애인직업능력개발	34,118	34,118	44,672	10,554	30.9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5개)	산재보험급여	5,034,678	5,034,678	5,069,964	35,286	0.7
	산재보험 시설건립	757	757	2,446	1,689	223.1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	8,510	8,510	16,649	8,139	95.6
	산재예방시설건립	700	700	5,863	5,163	737.6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2,602	2,602	3,549	947	36.4
근로복지 진흥기금 (3개)	기금관리비(기타경비)	1,288	1,288	1,836	548	42.5
	기금관리비(법인세)	101	101	536	435	430.7
	사업운영비(신용보증법인세)	100	100	536	436	436.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고용노동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및 실업자의 취업알선·촉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며, 각 계정은 다시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이하 ‘고안·직능계정’)의 2개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근로자 계정이 고용보험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근로자 계정의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사업⁶⁾과 산전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고안·직능계정은 신규고용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지출계획안 및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계정		2019년도 계획안	계정별 주요 사업	
			사업명	2019년도 계획안
근로자	실업급여	91,905	구직급여	74,093
			모성보호육아지원	14,55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37,820	고용창출장려금	9,222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5,976
			청년내일채움공제	4,411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147
자영업자	실업급여	54	자영업자실업급여	4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4		
합계		129,793		

주: 위의 합계가 고용보험기금 전체 지출 계획안인 17조 8,087억원보다 작은 것은 계정별 지출규모 산정 시 여유자금운용 4조 8,293억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6)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뿐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포함된다.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7조 8,086억 4,700만원으로, 2018년 17조 2,695억 1,700만원 대비 5,391억 3,000만원(3.1%) 증액되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구성되는 부담금(12조 3,561억원)이다. 지출의 경우 사업비가 12조 8,799억원으로 가장 많다.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억원)

수입	자체수입					정부 내부 수입	여유 자금 회수
	소계	부담금	용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		
	128,599	123,561	632	2,781	1,625		
지출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128,799		995		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1. 실업급여 계정의 적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가. 현황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1.5~2배이다.⁷⁾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수입을 9조 6,635억원, 지출을 9조 1,905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립배율은 0.9배이다.⁸⁾

7)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8)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자영업자 계정은 임금근로자 계정 규모의 0.1% 이하이므로,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현황(2015~2019)]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안)	비고
수입	63,415	70,340	71,476	98,560	96,635	적정 적립배율 : 1.5~2.0
지출(a)	54,978	58,557	62,858	77,198	91,905	
재정수지	8,436	11,783	8,618	21,362	4,730	
적립금(b)	37,600	49,371	57,958	79,320	84,050	
적립배율(b/a)	0.7	0.8	0.9	1.0	0.9	

주: 1. 2015~2017년은 결산, 2018년은 계획, 2019년은 계획안(정부안) 기준

2. 2015~2017년은 결산에 따른 운용결손액을 반영하여 적립금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의무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은 1.5~2.0배이나,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른 적립배율은 0.9배로 적정 적립배율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까지 실업급여 계정의 지출은 5조원 이하였으나 지출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2019년에는 9조 1,90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지출규모가 1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수입·지출 현황 및 계획]

(단위: 억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수입	58,566	63,415	70,340	71,476	98,560	96,635	108,621	115,095	121,728
지출	49,639	54,978	58,557	62,858	77,198	91,905	102,635	109,024	116,226

주: 2015~2017년은 결산, 2018년은 계획, 2019년은 계획안(정부안) 기준이며, 2020~2022년은 고용노동부가 별도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립배율은 1.0배, 2019년도 적립배율을 0.9배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2018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이 적절하지 않게 설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적립배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수입 계획인 9조 8,560억원은 2017년도 수입인 7조 1,476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준인데, 이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고용보험료를 조정에 따른 수입 확대를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에 고용보험료를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입 계획인 9조 8,560억원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업급여 계정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의 경우 2018년 8월까지의 월 평균 수납액이 6,419억원인데, 연말까지 징수되더라도 수입 계획액인 9조 5,116억원에는 미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실업급여 계정 월별 보험료 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월평균 (a)	a*12	기금운용 계획상 보험료 수입
4,586	4,659	6,490	8,591	9,730	6,108	5,108	6,079	6,419	77,028	95,116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18년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계획이 과다하게 설정됨에 따라 2018년도 적립배율도 계획인 1.0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9년도 적립배율 또한 계획인 0.9배보다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실업급여 계정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 소요 및 현재 기금운용계획상의 재정수지가 다소 과다 산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이 적정 적립배율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2. 고안·직능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고안·직능 계정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신규고용촉진·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지원·훈련장비 보강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계정이다. 실업급여 계정 수입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고안·직능 계정 수입은 고용자의 고용보험료로만 구성된다.

「고용보험법」은 고안·직능 계정의 적정 적립배율을 1~1.5배로 규정하고 있다.⁹⁾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고안·직능 계정 수입은 3조 3,250억원이며 지출은 3조 7,820억원으로, 이에 따른 적립배율은 1.1배이다.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 계정 재정수지 현황(2015~2019)]

(단위: 억원, 배)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안)	비고
수입	26,867	31,995	29,795	33,109	33,250	적정 적립배율 : 1.0~1.5
지출(c)	26,220	30,064	31,700	31,973	37,820	
재정수지	647	1,931	△1,904	1,136	△4,570	
적립금(d)	44,281	46,198	44,264	45,401	40,830	
적립배율(d/c)	1.7	1.5	1.4	1.4	1.1	

주: 1. 2015~2017년은 결산, 2018년은 계획, 2019년은 계획안(정부안) 기준

2. 2015~2017년은 결산에 따른 운용결손액을 반영하여 적립금 산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9)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나. 분석의견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고안·직능 계정의 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고안·직능 계정 적립배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안·직능 계정의 경우 2015년까지는 적립배율이 법정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2016년부터 적정 수준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의 고안·직능 계정의 적립배율이 1.1배로 적정 적립배율 하한인 1.0배에 근접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또한 △4,570억원으로 적자라는 점에서 고안·직능 계정의 기금 운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확대에 따라 향후 2~3년간 재정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고안·직능 계정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2018~2022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조 3,86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조 3,43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중기 재정 소요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18~'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30	7,145	10,776	13,474	10,538	43,863
청년내일채움공제	2,094	4,411	5,541	5,692	5,696	23,434

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규모는 '19~'21 신규 12만명(2년형 7만명, 3년형 5만명) 가정했으며 (단, 3년형은 '21년까지 한시사업이므로 '22년은 2년형만 신규 7만명 지원을 가정), 그 외 지원금 지급주기, 지급단가 등은 현행 동일 가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안·직능 계정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정 적립배율을 하회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실업자 및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안·직능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실업자는 소정급여일수¹⁾만큼의 구직급여일액을 지급받게 된다.

$$\text{구직급여 총 수급액} = \text{구직급여일액}(\text{기초일액} \times 50\%) \times \text{소정급여일수}$$

이 때, 기초일액은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의 임금 수준에 따라 평균임금, 통상임금 또는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다.²⁾

한편, 정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6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³⁾ 개정안은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인상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며(「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 [기초일액 산정 기준]

구분	개념	법령
평균 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고용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기준 보수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금액 *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 2018년 10월 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으로, 「고용보험법」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최저기초일액(최저임금×8시간)보다 낮을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기초일액의 9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소정급여일수	90~240일	120~270일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별표1, 제69조의6 별표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50%	기초일액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제69조의5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의 90%	최저기초일액의 80%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

자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2951호)를 바탕으로 작성

2-1.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구직급여 예산안 심사 필요

가. 현황

구직급여 사업⁴⁾은 「고용보험법」 제40조부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계획안에는 2018년도 계획액 6조 1,571억 9,600만원 대비 1조 2,521억 2,000만원(20.3%) 증액된 7조 4,09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4) 코드: 고용보험기금 1080-350

[2019년도 구직급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구직급여	5,024,838	6,157,196	6,157,196	7,409,316	1,252,120	20.3
구직급여	5,022,575	6,154,363	6,154,363	7,406,473	1,252,110	20.3

주: 구직급여 세부사업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타 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도 계획안이 2018년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은 ①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지급수준 인상으로 인당 일평균 지급액이 인상되고, ② 소정급여일수 연장 계획에 따라 인당 평균지급일수가 2018년 91.78일에서 108일로 17.7%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8년도 계획 및 2019년도 구직급여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명, 원, 일, 백만원)

	2018년	2019년(안)	비고
인원(A)	1,236,823	1,214,853	지급자 수 감소추세 반영 *「고용보험법」 개정을 가정하여 65세 이후 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자에 대한 지원(13,137명) 포함 ⁵⁾
평균 구직급여일액(B)	54,216	56,450	
상한액	60,000	66,000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하한액	54,216	54,216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인당 평균지급일수(C)	91.78	108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계(A*B*C)	6,154,363	7,406,473	

주: 하한액의 경우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의 80%로 인하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한 것임 (8,350원×8시간×0.8=53,440원). 이 경우 2018년도 하한액 54,216원보다 낮게 되므로, 하한액을 2018년도와 동일한 54,216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현행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구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법 개정 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구직급여가 적용될 수 있음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인상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의 하한액 수준을 인하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⁶⁾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구직급여일액 지급 수준인 기초일액의 50%와 수급기간인 90~240일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실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고용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발생 가능한 구직노력 위축에 따른 고용률 감소, 부적절한 반복수급 증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구직급여 사업에 2018~2022년 5년 간 총 41조 7,3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직급여 사업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중기재정계획	61,572	74,093	88,206	93,500	100,006	417,37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하한액 지급 시 구직급여가 이직 전 임금보다 많아지는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준 인하는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⁷⁾

따라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수입 확대와 구직급여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함과 동시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2-2.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가. 현황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⁸⁾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과 달리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임의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7개 ‘기준보수’를 선택하여 고용보험료율 2.25%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⁹⁾

7) [고용보험료율 인상 계획(안)]

(단위: %)

계정	현행			변경(안)		
	노동자	사업주	계	노동자	사업주	계
실업급여	0.65	0.65	1.3	0.80	0.80	1.6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0.85	0.25~ 0.85	-	0.25~ 0.85	0.25~ 0.85
계	0.65	0.9~1.5	1.55~2.15	0.80	1.05~1.65	1.85~2.4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코드: 고용보험기금 1092-350

9)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납부 기준]

구분	기준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50%						
※ (참고) 기준보수							
등급	1	2	3	4	5	6	7
월 보수액(천원)	1,540	1,730	1,920	2,110	2,310	2,500	2,690

자료: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www.ci.go.kr)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계획안에는 2018년도 계획액 32억 7,200만원 대비 16억 4,100만원 (50.2%) 증액된 49조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1,169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9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자영업자 실업급여	3,189	3,272	3,272	4,913	1,641	50.2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도 계획안이 2018년에 비해 증액된 것은 구직급여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일수 연장에 따른 것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매년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편성된 계획안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매년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은 2015년 56.0%, 2016년 62.9%, 2017년 76.3%이다.

[최근 3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15	5,795	5,795	0	0	5,795	3,244	56.0	0	2,551
2016	5,204	5,204	0	0	5,204	3,272	62.9	0	1,932
2017	4,179	4,179	0	0	4,179	3,189	76.3	0	990
2018.9.	3,272	3,272	0	0	3,272	2,738	83.7	0	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실업급여 수급 인원 예상 대비 실제 수급 인원이 매년 미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급 인원	예상	1,217	1,612	1,513	1,405	1,686
	실적	678	1,476	1,290	1,148	1,068
	증감	-	798	△186	△142	△8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수급인원이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의 가입 유지 인원이 담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24,829명이 신규 가입한 후 매년 신규 가입인원이 4,000명 초반에서 5,000명 후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반면, 가입 자격이 소멸되는 인원¹⁰⁾이 신규 가입 인원과 유사한 규모여서 가입 유지 인원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입 유지자	20,864	17,908	16,985	16,404	16,772	16,455
신규 가입자(a)	24,829	5,820	4,918	4,802	5,619	4,245
소멸자(b)	3,965	8,776	5,841	5,383	5,251	4,562
증감(a-b)	20,824	△2,956	△923	△81	368	△31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및 수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에 비해 고용보험료율은 높은 반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낮아 가입 유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 가입 자격 소멸의 원인으로는 폐업, 보험료 연체, 이중취득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은 0.65%(사업주의 경우 최대 1.5%)임에 반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34만 5,000원임에 비해¹¹⁾,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80만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가 더 작다.

다만, 20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개업 후 1년에서 5년까지로 완화되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올해 상반기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²⁾ 내년도 편성된 계획안의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³⁾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매년 80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안전망 내로 편입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편성된 계획안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도 구직급여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전제로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기초일액의 50%에서 60%로 인상됨에 따라, 평균 구직급여일액도 34,972원에서 40,248원¹⁴⁾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또한, 소정급여일수가 30

11)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보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7등급의 기준보수는 월 269만원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50%가 지급되므로 최대 지급액은 134만 5,000원이다.

12) [2018년도 분기별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1/4	2/4	7~8월
가입 유지자	17,253	17,922	18,080
신규 가입자(a)	2,024	1,976	1,128
소멸자(b)	1,226	1,307	970
증감(a-b)	798	669	208

주: 2018년 9월 통계는 2018년 10월 말 현재 집계 중에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참고로, 2018년 10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89.5%로 고용노동부는 보험금의 조기 소진을 예상하고 있다.

일씩 연장됨에 따라 인당 평균 지급일수도 81일에서 104일¹⁵⁾로 확대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계획 및 2019년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명, 원, 일, 백만원)

	2018년	2019년(안)	비고
인원(A)	1,148	1,169	최근 3년 평균
평균 구직급여일액(B)	34,972	40,248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인당 평균 지급일수(C)	81	104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계(A*B*C)	3,252	4,893 ¹⁾	

주: 1) 동 세부사업 계획안인 49억 1,300만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세부사업 내에 실업급여 지급액 외에 자문수당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고용보험제도가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14) 급여일액 40,248원은 최근 3년 평균 급여일액 33,540원에 지급수준 인상률 1.2배를 고려하여 추정
한 값이다.

15) 평균 지급일수 104일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일 83.5일에 지급일수 연장(+30일) 및 평균 소진율
74.5%를 고려하여 추정한 값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취업률 제고 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사업¹⁾은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참여 대상별로 사업 유형을 구분(I·II유형)하고 있는데, I 유형의 경우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을, II유형은 미취업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5,029억 4,300만원 대비 907억 1,600만원(△18.0%) 감액된 4,122억 2,700만원이다.

이는 목표인원 5.1만명 조정(31.1만명→26만명) 및 2018년부터 신규 편성된 청년구직촉진수당 1,728억원(19만명)이 2019년부터는 별도의 세부 사업²⁾으로 확대·분리 편성됨에 기인한다.

[2019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업성공패키지	377,138	502,943	502,943	412,227	△90,716	△18.0
구직촉진수당	0	0	0	21,320	21,32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36-301

2) 코드: 일반회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63-301

한편,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21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구직촉진수당은 I 유형 저소득층 중 중위소득 30~50%³⁾에 속하는 자가 취업알선(3단계) 진입 시 매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39,640명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I 유형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뿐 아니라 이들의 취업 역량 및 취업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을 살펴보면, I 유형 저소득층의 취업률이 II유형 청년 및 중장년에 비해 저조하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의 경우 저소득층 취업률은 57.5%인데 비해, 청년층은 70.0%, 중장년층은 63.2%로 약 5~10%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연도별·유형별 취업률 실적]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Ⅰ 유형		51.3	58.1	57.6	59.1	57.5
Ⅱ 유형	청년층	62.2	63.6	70.3	71.6	70.0
	중장년층	52.4	58.8	63.0	66.1	63.2
계		55.2	60.1	63.8	66.2	65.1

주: 2018년 8월 말 마감기준 자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I 유형 저소득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 취업률이 특히 낮은 편이고,⁴⁾ I 유형은 정서적인 문제, 생계 문제, 육아 등 취업 장애 요인이

3) 중위소득 30% 미만은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50%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 따라 30~50%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4) [생계급여 수급 여부 별 I 유형의 취업률 현황]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I 유형(생계급여수급자)	40.0	40.2	38.7
I 유형(수급자 제외 차차상위)	62.6	62.8	60.8
I 유형(전체)	57.6	59.1	57.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유형에 비해 많아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유형별 취업역량평가 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Ⅱ유형에 비해 Ⅰ유형에서 취업역량이 가장 낮은 A등급 비율이 높다.

[2017년 신규 참여자 기준 유형별 취업역량평가 등급 비율]

(단위: %)

구분	A	B	C	D	계
Ⅰ 유형	17.2	42.5	32.6	7.8	100.0
Ⅱ 유형	6.9	53.9	32.9	6.2	100.0

주: A→D일수록 취업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Ⅰ유형 저소득층의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구직촉진수당 도입은 실업 상태에 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3단계까지의 충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도 추경으로 동 사업에 편성되어 시작된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에도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⁵⁾

- 5)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7년도 추경 및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청년에게 3개월 간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자/비수급자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현황]

(단위: 명, %)

구분	청년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참여 인원	종료 인원(A)	취업 인원(B)	취업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2개월
Ⅰ 유형 중 청년	수급자	35,669	25,470	16,689	65.5	68.7	49.6
	비수급자	19,893	17,648	8,637	48.9	63.5	45.3
	소계	55,562	43,118	25,326	58.7	66.6	46.3
Ⅱ 유형 (청년)	수급자	176,354	123,145	89,044	72.3	68.4	50.5
	비수급자	70,038	62,075	37,951	61.1	62.1	47.0
	소계	246,392	185,220	126,995	68.6	66.1	47.9
계	수급자	212,023	148,615	105,733	71.1	68.5	50.3
	비수급자	89,931	79,723	46,588	58.4	62.3	46.7
	소계	301,954	228,338	152,321	66.7	66.2	47.7

주: 초기상담일이 '17.7.22.(청년구직촉진수당 시행일) 이전이면서 '17.7.22. 기준 프로그램 진행 중인 참여자 + '17.7.22 이후 신규 참여자 대상('18.7월 마감자료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수당 지급 효과가 청년이 아닌 저소득층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역량 및 취업의욕이 저조한 I 유형의 취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뿐 아니라 이들의 취업역량 및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의 질적인 제고를 위하여 적정 상담 인력을 배치하거나,⁶⁾ I 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등이다.⁷⁾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역량을 개발하여 적정한 취업처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지급 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질 제고 및 다양한 훈련 참여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6)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 2017.12)에 따르면 상담인력 1인당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의 적정 관리 인원은 92명이나,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상담인원은 121명이었다.

7) I 유형의 경우 2단계(훈련)에서 II 유형 청년층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고루 참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훈련 참여 인원의 약 86%가 계좌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2단계 훈련참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좌제	국기 훈련	청년 취업 아카데미	지역 맞춤형 훈련	컨소시엄 훈련	디딤돌 일자리	한국 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	기타	계
1유형	73,416	11,822	37	66	25	10	23	61	85,460
2유형	청년	51,617	29,651	973	232	209	168	71	83,202
	중장년	14,346	1,379	0	24	8	8	9	15,774

주: 2017년 초기상담일이 있는 참여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¹⁾은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2018년도 기준)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신규지원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0%, 5~10명 사업장에는 80%를 지원하고, 기지원자에게는 40%를 지원한다.²⁾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8,932억원에서 4,631억원(51.8%) 증액 된 1조 3,562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05,934	893,179	893,179	1,356,231	463,052	51.8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① 수혜 대상자 수 확대와 ②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지원금 인상으로 예산안이 크게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 10.9%)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월 보수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대상 인원이 37만명 증가(2018년 200만명→2019년 237만명)하였다. 또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임에 따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금이 증액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75-302

2) 신규지원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의미하며, 기지원자란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사업 목적 및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이 신규 가입자 확보에 보다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루누리 사업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의 경우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지원 비율이 5.8:1로, 지원인원 중 기가입자³⁾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근로자			A:B
		계	기가입자(A)	신규가입자(B)	
2016	계	1,611,566	1,500,413	111,153	13.5:1
	고용	705,115	660,042	45,073	14.6:1
	연금	906,451	840,371	66,080	12.7:1
2017	계	1,494,582	1,278,068	216,514	5.9:1
	고용	661,628	578,636	82,992	7.0:1
	연금	832,954	699,432	133,522	5.2:1
2018. 7.	계	2,094,198	1,766,096	328,102	5.4:1
	고용	943,034	811,858	131,176	6.2:1
	연금	1,151,164	954,238	196,926	4.8:1
2019(계획)	계	2,369,848	2,022,107	347,742	5.8:1
	고용	1,047,822	911,605	136,217	6.7:1
	연금	1,322,026	1,110,502	211,525	5.2:1

주: 1. 연도별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기준이 상이함. 2016년은 '가입이력에 관계 없이 2016.1.1. 이후 가입한 자, 2017년은 '① 최초 가입자, ② 최근 3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③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2018~2019년은 '최근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신규가입자로 봄

2.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기가입자 지원 비율이 낮아진 것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신규가입자 기준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회는 2016년도 결산 심사 시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원요건과 수준·기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사회보험 사

3) 기 가입자에 대한 기준은 연도별로 상이하나, 2018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를 신규가입자로 보고, 이 외의 자를 기가입자로 본다.

각지대해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규 사회보험 가입자 지원 중심의 제도로 개편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지원대상 월 보수 수준을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② 신규 가입자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확대하였으며, ③ 신규 가입자 지원기간을 무제한에서 최대 3년간 지원으로 변경하고, ④ 신규 가입자 기준을 3년 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에서 1년 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완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지원 계획 인원 236만 9,848명 중 85.3%에 해당하는 202만 2,107명이 기가입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규모가 내년부터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 논의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둘째, 동 사업 예산안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을 가정하여 편성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소요 증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료율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서 각 0.15%p씩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료율 변경 계획(안)]

(단위: %)

계정	현행			변경(안)			비고
	근로자	사업주	계	근로자	사업주	계	
실업급여	0.65	0.65	1.3	0.80	0.80	1.6	+0.3%p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0.25~ 0.85	0.25~ 0.85	-	0.25~ 0.85	0.25~ 0.85	변동 없음
계	0.65	0.9~1.5	1.55~2.15	0.80	1.05~1.65	1.85~2.45	+0.3%p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12.)」을 바탕으로 작성

4) 다만, 동 사업 목적을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유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확대하여 고려할 경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⁵⁾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와 연동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⁶⁾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3

6)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황이다.

가. 현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¹⁾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9억 3,600만원으로, 기본수당 1,948억원, 취업성공금 30억원,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1억 3,600만원, 사업 운영비 2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0	0	0	201,936	201,936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에서는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 방식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²⁾ 방식이며, 내년에는 총 10만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 지원금을 수령받는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63-301

2)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한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① 만 18~34세 청년
 ②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
 ※ 가구소득, 재학여부,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선정,
 선정 시 월 1회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 지원수준: (기본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고*(마지막 달 취업 제외),
 취업 후 3개월 근무 시 취업성공금 정액 50만원 현금 지원
 *취업 인정에 대한 기준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임
- 지원방식: 유흥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되고, 현금화 불가능한 클린카드
- 지원목표인원: 10만명(3월: 2만명, 4~11월: 월별 1만명 ※신규지원인원 기준)
- 사업방식: 고용센터를 통한 직접 수행

한편, 동 사업은 2020년 이후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³⁾을 사유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진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기재정 소요전망]

(단위: 백만원)

년도	2019	2020	2021	2022
금액	201,936	266,636	266,636	266,63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들을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한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참고로 구직자를 지원하는 기존의 주요 제도로는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구직 프로그램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이 중 구직자가 실업 상태 전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수급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상담·훈련·구직 활동 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본인의 기여금이 아닌 일반 조세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는 상이한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 (청년)구직자 지원 제도 간 비교]

구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방식	현금급여 지급	현금급여 지급	교육, 훈련, 상담 등 취업 프로그램 제공
주요 재원	조세	사용자/근로자 기여금	조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청년의 경우 무관
고용보험 가입유무	무관	O	무관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¹⁾ 참여	약함	약함	강함

주: 1)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란 ‘수혜자들의 고용가능성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OECD)’으로 상담, 훈련, 적극적 구직활동 노력 등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구직자에게 본인 기여금이 아닌 조세 등을 재원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실업부조와 유사하나, 실업부조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소득 보전 측면에서 나아가 청년들의 실업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 사업의 지원금은 유흥 등 일부 업종에의 지분을 제외하고는 활용 용도에 제한이 없어 청년들이 제출하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보고서⁵⁾를 통해서만 청년의 구직활동 수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청년대상 구직 수당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지역 간 형평성 및 사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고자 동 사업을 신설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현재 서울시 등 8개 자치단체가 유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해남군은 2018년 말부터, 일부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신설하고자 한다.

5) 고용노동부는 대상 선정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심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청년대상 구직 수당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서울시 (‘17.6~)	경기도 (‘17.6~)	대전시 (‘17.6~)	부산시 (‘17.9~)	전북 전주시 (‘17.11~)	경남 창원시 (‘18.1~)
사업명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구직 지원금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구직 활동비	청년쉽포! 프로젝트	청년구직 수당
지원 대상		만19~29세	만18~34세	만18~34세	만19~34세	만19~34세	만19~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월 지급액 (최대지급개월)		월 50만원 (최대6개월)	월 50만원 (최대6개월)	월 30만원 (최대6개월)	월 50만원 (최대240만원)	월 50만원 (최대3개월)	월 30만원 (최대4개월)
급여 방식		체크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체크카드+ 복지포인트	체크카드	온누리 상품권 → 체크카드
지원 목표 (‘18)	예산	210억원	80억원	90억원	33억원	3억원	24억원
	인원	7,000명	2,300명	5,000명	2,263명 *‘17~‘18 합계	100명	2,000명
구분		광주시 (‘18.4~)	제주도 (‘18.8~)	전남 해남군 (‘18.말 예정)	대구시 (‘19 예정)	전라남도 (‘19 예정)	경상남도 (‘19 예정)
사업명		광주청년 드림수당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두드림 청년취업 지원	대구형 청년수당	전남 구직활동 수당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대상		만19~34세	만18~34세	만18~39세	미정	만18~34세	만18~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	150% 미만	120% 이하	미정	150% 이하	150% 이하
월 지급액 (최대지급개월)		월 30만원 (최대6개월)	월 40만원 (최대4개월)	월 30만원 (최대6개월)	월50만원 (3~4개월)	월 50만원 (최대6개월)	월 50만원 (최대4개월)
급여 방식		현금	체크카드	현금	미정	미정	복지포인트
지원 목표 (‘18)	예산	30억원	5억원	1.1억원	-	-	
	인원	1,100명	300명	50명	-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이 당초 취지인 청년 수당 사업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2018년 10월 중순 현재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⁶⁾ 효과
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전주 등 5개 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과 동일인에 대한 동일 시
기 중복 지급이 불가하도록 지원 대상을 ‘졸업 후 2년 경과자’로 설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이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⁷⁾ 협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직수당을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도입은 타당하나, 청년구직수당을 기 시행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보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⁸⁾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을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13일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8월 30일 협의 완료되었다.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17년 추경~)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2016년 시범사업~)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¹⁾의 내역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신규로 고용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계획안은 2018년도 수정 계획 3,396억 6,200만원 대비 3,738억 8,100만원(110.1%) 증액된 7,135억 4,300만원이다. 2019년도 계획안으로는 2019년도 신규 지원인원 98,000명과 기존 가입인원 중 퇴직 등을 제외한 지원 지속 인원 63,000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한다.

[2019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고용창출장려금	320,880	392,616	549,410	922,217	372,807	67.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425	192,000	339,662	713,543	373,881	110.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추경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고용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완화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규모를 인상(1인당 667만원 → 900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²⁾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일정 규모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약정 기간 종료 시 적립금액 및 이자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2년형만을 운영하였으나, 2018년도 추경으로 3년형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된 예산을 합하여 2018년 추경 기준 4,257억 9,100만원 대비 6,116억 2,400만원(143.6%) 증액된 1조 374억 1,500만원이다. 2019년도 예산안으로는 2019년도 2년형 신규 가입자 70,000명과 3년형 신규 가입자 50,000명 및 2년형 기존 가입자 140,387명과 3년형 기존 가입자 20,000명에 대한 지급시기 도래분을 지원하고자 한다.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	31,434	184,820	216,400	596,288	379,888	175.5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기금)	-	170,640	209,391	441,127	231,736	110.7
계	31,434	355,460	425,791	1,037,415	611,624	143.6

자료: 고용노동부

2년형은, 청년이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간 총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3년형은 청년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청년이 적립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로, 2021년에 종료되는 한시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단위: 만원)

구분	약정 기간	적립 금액				기업 지원금 (정부→기업)
		청년	정부 ¹⁾	기업	계	
2년형	2년	300	900	400	1,600	700 ²⁾
3년형	3년(신설)	600	1,800	600	3,000	750

주: 1) 정부 적립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며, 기업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

2) 추경 이후 가입기업은 500만원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코드: 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

나. 분석의견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시행 첫 해인 2017년에 가입 인원이 저조하여 사업 집행률이 각각 31.7%와 45.8%로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양 사업 모두 2018년도 추경으로 사업이 확대·개편된 이후 신규 지원 인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 집행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2018년 3월 15일 이후 신규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³⁾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시작 인원]

(단위: 명)

'17	'18.1.1. ~3.14.	3.15~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876	1,115	795	1,505	2,498	8,238	16,316	18,808	16,293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2017년의 경우 연 가입인원이 40,170명으로 월 평균 3,348명이 가입한 반면, 2018년에는 2년형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가입자는 총 70,018명으로 월 평균 7,780명이 가입하는 등 가입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3년형의 경우 2018년도 제1차 추경 통과 후 6월 1일 신설되어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간이 소요되어 8월 6일부터 청약승낙을 개시하여 9월 30일 기준으로 13,303명이 가입을 완료하였다.

3)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지원 요건이 기존 3명 고용 시 1명 지원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고용 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또한, 지원 금액도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도해지 및 계약유지 현황]

(단위: 명, %)

참여연도	월	청약 가입자수		중도해지건수		계약유지건수	
			비율		비율		비율
2016		5,217	100.0	1,992	38.2	3,225	61.8
2017		40,170	100.0	10,013	24.9	30,157	75.1
2018	1월	1,625	100.0	288	17.7	1,337	82.3
	2월	6,364	100.0	1,039	16.3	5,325	83.7
	3월	12,942	100.0	1,797	13.9	11,145	86.1
	4월	8,599	100.0	951	11.1	7,648	88.9
	5월	9,388	100.0	687	7.3	8,701	92.7
	6월	12,518	100.0	85	0.7	12,433	99.3
	7월	7,862	100.0	0	0.0	7,862	100.0
	8월	6,232	100.0	0	0.0	6,232	100.0
	9월	4,488	100.0	0	0.0	4,488	100.0
소 계		70,018	100.0	4,847	6.9	65,171	93.1
총 계		115,405	100.0	16,852	14.6	98,553	85.4

주: 2018.9.30.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에 양 사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이의 후속 조치로 편성된 추경예산 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치에 기인하는 점이 큰데,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지원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 등 고용지표를 고려할 때,⁴⁾ 동 사업들을 통해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연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

(단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7월	8월	9월
실업률	7.9	7.6	7.5	8.0	9.0	9.1	9.8	9.8	9.0	9.3	10.0	8.8

자료: e나라지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청년센터 운영 사업¹⁾에서 온라인 청년센터와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청년의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2018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시작된 신규 사업이며,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추경 예산 76억 3,900만원 대비 20억 7,300만원(△27.1%) 감액된 55억 6,600만원이다.

[2019년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센터 운영	0	0	7,639	5,566	△2,073	△27.1
온라인 청년센터	0	0	2,425	3,086	661	27.3
오프라인 청년센터	0	0	5,214	2,000	△3,214	△61.6
직업진로설계역량강화 (국민참여예산)	0	0	0	480	48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의 내역사업으로는 온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 직업진로 설계역량강화 사업이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2018년도 추경으로 구축중인 온라인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지자체에 조성된 청년공간²⁾에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16개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32-303

2) 청년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신청한 곳 중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곳을 청년공간으로 볼 예정이다.

소를 선정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방비 20%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³⁾ 직업진로설계역량강화는 청년의 직업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특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청년들이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에서 전국 20개소 내외의 청년 공간에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한다.⁴⁾ 운영 예정인 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규모는 1년 사업기간 동안 개소당 평균 1억 2,000만원이며, ① 청년정책 안내, ② 청년 역량강화 지원, ③ 청년활동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신청 받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기관 대상으로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청년센터 프로그램 구성(안)]

분 야	세부 프로그램 구성(안)
청년정책 통합안내	▶(필수) 온라인 청년센터의 정책DB를 활용, 방문한 청년에게 전부처의 청년정책을 상시 안내·연계 ▶(자율) 청년정책 이벤트, 분야별 소모임 활용 정책 확산, 취업·창업·주거·복지·장학 등 분야별 청년정책 참여활성화 방안
청년 역량강화 지원	▶(필수) 진로지원 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특강 등 지역청년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율) 청년 사회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경제, 노동, 주거, 예술 등 특강·워크숍 진행
청년활동 활성화	▶(자율) 청년커뮤니티활동, 아이디어 발굴 등 자발적 활동 지원 * 유사분야 진출희망 청년들간의 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활성화 지원 *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정책의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18년도 추경에 편성된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이 고용위기지역에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임에 비해,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센터 신규 설치가 아닌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

4) 내역사업인 '오프라인 청년센터' 예산에서 16개소, '직업진로 설계역량강화' 예산에서 4개소를 지

그런데, 지자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청년공간⁵⁾ 현황을 검토해보면, 청년공간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공간 별로 운영 규모 및 운영 목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공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6개 광역시는 청년공간을 1개 이상 갖추고 있으나, 도(道)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청년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광역(시) 및 광역(도) 청년공간 현황]

(단위: 개소)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청년공간 수	9	5	2	2	2	4	1	0
통합지원형	9	-	1	1	1	4	-	-
취업지원형	-	1	-	1	1	-	-	-
창업지원형	-	4	1	-	-	-	1	-
공간제공형	-	-	-	-	-	-	-	-

광역(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기초자치단체	18	31	11	15	14	22	23	18	2
청년 공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	0	2	1	1	2	4	5	2	1

주: 1. 기초자치단체 수는 2017년 기준

2. 청년공간은 2018년 9월 중순 현재 운영 중인 곳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규모 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청년공간의 면적이 5,366㎡로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반면, 협소한 자치단체는 69.3㎡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렇듯 청년공간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구축되더라도 규모가 협소한 자치단체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사업의 특성 상 사업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원하고자 한다.

- 5) 다만, 청년공간에 대한 정의가 다소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 현재 청년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후 자치단체에서 청년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동 사업의 대상자가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생 등 다양한 구직 욕구를 가진 청년들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별 청년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⁶⁾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공간 조성이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청년들이 동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⁷⁾ 사업 운영 과정에서 청년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참고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일반회계 1051-305)에서 운영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경우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대학재학생/졸업생/지역청년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학일자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16.3%)’, ‘대학일자리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17.6%)’, ‘대학일자리센터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13.3%)’ 등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2017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7) 예를 들어, 청년공간 조성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공모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위해 기존의 고용복지+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¹⁾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추경 726억 3,900만원 대비 223억 700만원 (30.7%) 증액된 949억 4,600만원이다. 예산안이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것은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내역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도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63,989	67,780	72,639	94,946	22,307	30.7
일반실업자 훈련	42,161	34,899	34,899	30,153	△4,746	△13.6
일반고 특화 훈련	21,401	32,403	37,262	39,755	2,493	6.7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0	0	0	24,560	24,560	순증
운영비	427	478	478	478	0	0

자료: 고용노동부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실업자이나,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해 왔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2017년부터는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65-300

2019년도 신규 편성된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자 한다. 2019년도 지원 예상 인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99,281명,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 37,164명 등 13만 6,444명이다.²⁾

나. 분석의견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취약계층 근로자가 적합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³⁾에서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동 사업은 이들에 대해 일반회계를 통해 직업훈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훈련 참여율(2.74%)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다소 소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에 있는데,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 형태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수 및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노동자 수에 고용보험 미가입률(비정규직 55.9%, 300인 미만 기업 14.1%)과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훈련 참여율(2.74%)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3)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1063-350)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이나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실업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⁴⁾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⁵⁾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유사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실업자등능력 개발지원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근로자능력 개발지원
회계/기금	일반회계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 가입	무	무	유	유
주요 지원 대상	실업자	근로자	실업자	근로자
지원 목적	취·창업 지원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취·창업 지원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지원 수준	200만원 (자부담 ~80%)	150만원 (자부담 없음)	200만원 (자부담 ~80%)	200만원 (자부담 ~20%)
2019 예산안	70,386 ¹⁾	24,560	597,623	95,323

주: ¹⁾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의 2019 예산안은 내역사업인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상이할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참여 제고 등을 위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1063-350)

5) 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1063-351)

가. 현황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장애인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의 작업을 보조해 줄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해주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사업이다.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한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 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계획안은 2018년도 수정 계획 204억 6,100만원 대비 350억 1,600만원(171.1%)이 증액된 55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8,057	21,658	23,611	58,727	35,116	148.7
근로지원인 지원	14,486	18,508	20,461	55,477	35,016	171.1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도에는 근로지원인 인원 증가(1,200→3,000명), 월 근무시간(115→125시간) 확대, 지원 단가(11,320→12,454원) 인상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의 계획안이 약 2배 증액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06

나. 분석의견

첫째, 내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 규모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발달장애 등 기존에 지원이 미흡했던 장애유형으로의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각장애인(57.7%), 지체장애인(20.9%), 청각언어장애인(14.7%), 뇌병변장애인(6.2%)에 주로 지원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타 장애에 속한 인원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것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전체 수혜 인원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용 인원	시각	443(57.6)	552(59.8)	757(60.1)	877(57.7)
	지체	165(21.5)	186(20.2)	247(19.6)	318(20.9)
	뇌병변	40(5.2)	46(5.0)	76(6.0)	94(6.2)
	청각·언어	115(15.0)	134(14.5)	168(13.4)	223(14.7)
	기타	6(0.8)	5(0.5)	11(0.9)	9(0.6)
	계	769	923	1,259	1,521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그간 예산 부족 및 지원 가능한 직무개발 부족 등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주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진 지체 및 사·청각 장애에 치중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 유형에 속하는 장애를 보유한 인원이 최근 15년 동안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²⁾ 2019년도 예산안이 증액되어 근로지원인 수가 2018년에 비해 2.5배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도별 발달장애인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16	2017
지적	94,951	127,881	161,249	189,752	195,283	200,903
자폐성	2,516	9,518	14,888	21,103	22,853	24,698
계	97,467	137,399	176,137	210,855	218,136	225,6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에 대한 근로지원인 직무를 개발하고 지원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을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지원인 인원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 장애 유형이 확대될 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지원인은 복지 분야와 관련한 특정 자격을 요하지 않으므로, 장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의 경우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지원인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단에서는 당해연도 신규 배치 근로지원인에게 16시간 교육(온라인 2시간+집합 14시간) 및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보수교육(온라인교육 2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소속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양성과정(집합교육) 계획]

회차	정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장소
1차	50명	2일	14시간	4.2.~4.3.	고용개발원
2차	50명	2일	14시간	10.29.~10.30.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공단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경우 신규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활동하는 근로지원인에 비해 적은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8월 기준 전국적으로 1,451명의 근로지원인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 공단에서 수행하는 교육의 계획인원은 100명이다.³⁾

한편, 신규 근로지원인이 아닌 경우 수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게 되나, 이 경우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이 균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의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인원보다 지속적으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대상이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근로지원인 인원이 2018년 1,200명보다 1,800명 많은 3,000명으로 확대되어 신규 근로지원인이 평년에 비해 많은 규모일 것으로 생각되며,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매뉴얼을 정확히 습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지원인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연도별 근로지원인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계획)	2019(계획안)
근로지원인 수	963	1,412	1,673	1,200	3,000
증감	-	449	261	△473	1,800

주: 2015~2017은 실제 활동 인원, 2018은 계획, 2019는 계획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¹⁾은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3~7주간의 사업체 현장훈련 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훈련생이 취업 후 적응지도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40,000원(1회) 및 1일당 17,000원의 일비가 지급되며,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체에는 장애인 1인 당 1일 19,340원의 사업체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직무지도원에게는 유형에 따라 25,000원에서 50,000원의 직무지도원 수당이 지급된다.²⁾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계획안은 2018년도 계획액 35억 9,200만원에 비해 81억 500만원(225.6%)이 증액된 116억 9,700만원이다.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장애인취업지원	8,463	8,380	8,380	16,876	8,496	101.4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3,592	3,592	3,592	11,697	8,105	225.6

자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따라 2019년도부터 지원고용 사업의 주체가 고용노동부로 일원화되어 보건복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1의 내역사업

2) 직무지도수당은 '지원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에 소속된 자(내부)'는 1일 25,000원이, '지원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외부)'는 1일 50,000원이 지급된다.

부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 특히, 중증장애인 수요를 반영한 훈련참여 인원 확대와 훈련 내실화를 위한 직무지도 수당 최저임금 연동,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 확대를 반영하는 등 지원고용훈련의 전반적인 지원수준 강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³⁾

나. 분석의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은 사업 수행 주체 변경 및 지원인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고용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은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수행기관으로,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운영 중이었다.

그런데, 2018년 기금 존치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간 유사 사업을 고용노동부로 통합하라는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 지원고용 부분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이관 인원 및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수준 강화를 반영한 결과,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원고용사업의 예산이 2018년에 비해 81억 500만원(225.6%)이 증액된 116억 9,700만원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여 지원하는 장애인 2,020명, 위탁 운영 장애인 480명,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장애인 1,000명 등 총 3,500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인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여 지원하는 장애인 3,000명,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2,000명 등 총 5,000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⁴⁾

3)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 평균일수가 2018년 33일에서 2019년 65일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직무지도원 수당도 기존 일 50,000원에서 최저임금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4) 고용노동부 ‘직접’ 운영은 사업의 전반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되 직무지도원 관리만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은 지원고용 사업 전반(지원고용 대상자 및 사업체 선정, 사전·현장훈련, 취업후 적응지도, 직무지도원 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확대 계획]

(단위: 명)

소관	방식	지원 장애인 수		비고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안)	
고용노동부	직접	2,020	3,000	+980
	위탁	480	2,000	+1,520
보건복지부	위탁	1,000	-	고용노동부로 이관 (고용노동부 위탁 계획에 포함)
계		3,500	5,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지원고용 대상 인원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여 수행하던 인원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부)과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고용 사업 전반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에 비해 위탁기관당 지원 인원이 소규모인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며 위탁 대상 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므로, 전문적인 지원고용 수행을 위한 민간위탁기관 양성이나 기존 보건복지부 위탁기관과의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위탁기관 지원 실적]

(단위: 개소, 명)

소관	위탁기관 수(A)	위탁기관 훈련수료인원(B)	B/A
고용노동부	69	593	8.59
보건복지부	34	1,190	35.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¹⁾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력 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계획안은 2018년도 수정 계획 1조 3,110억 6,800만원 대비 1,442억 800만원(11.0%) 증액된 1조 4,55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모성보호육아지원	935,615	1,311,068	1,311,068	1,455,276	144,208	11.0
출산전후휴가급여	242,598	298,489	298,489	260,394	△38,095	△12.8
유산사산휴가급여	801	827	827	842	15	1.8
육아휴직급여	680,430	988,577	988,577	1,138,832	150,255	15.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11,785	23,175	23,175	34,902	11,727	50.6
배우자출산휴가급여	0	0	0	20,306	20,306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계획안이 2018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7.) 등 저출산대책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등 기존에 운영하던 모성보호 체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정부가 5일 동안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8

나. 분석의견

첫째,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예산안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해당 법령의 개정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산대책 등에 따라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²⁾ 상한 인상, 육아휴직 3개월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지원 신설,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등이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개편 현황 및 계획]

(단위: 만원)

구분		'17	'17추경	'18	'19	'19하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 통상임금 40% · 상/하한 : 100 / 50		· '17.9월~ 통상임금 40→80%, · 상/하한 : 100 / 50 → 150 / 7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4.10월~)	· '17.7월~ 둘째이상 자녀 상한 150→200		· 첫째자녀 150→200	· 상한 200→250	
	3개월 이후	· 통상임금 40% · 상/하한 : 100 / 50			· 통상임금 40→50%, · 상/하한 100 / 50 → 120 / 70	
출산전후 휴가급여		· 상한 인상 (135→150)		· 상한 인상 (160만원)	· 상한 인상 (1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				· 신설 (100%, 월 상한 200,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통상임금 60→80%	· 1시간 단축 허용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100%, 상한 150→200 · 기간 연장 (최대 1→2년)	

주: 2019년은 계획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중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 인상과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³⁾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시간 단축 허용은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경우 10건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30., 의안번호 2014628)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2018.7.31., 의안번호 2014637)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관련 법령 개정안 현황]

구분	관련법령	비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입법예고 중 (10.15~11.23)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제1항 제2호	입법예고 중 (10.15~11.2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제77조	개정안 19건 계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시간 단축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정안 4건 계류 중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즉,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법령의 개정 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해당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 및 결과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제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 준비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3일 유급)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안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⁴⁾의 근로자에 한하여 5일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모르는 근로자가 31.5%였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9.0%이며, 배우자 출산 경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중 실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험은 41.1%로, 인지도에 비해 실제 사용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단위: %, 명)

사업장규모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5~9	15.1(22)	47.9(70)	37.0(54)	100.0(146)
10~29	28.3(54)	37.7(72)	34.0(65)	100.0(191)
30~99	39.8(90)	27.4(62)	32.7(74)	100.0(226)
100~299	44.1(82)	30.1(56)	25.8(48)	100.0(186)
300명 이상	56.6(142)	13.9(35)	29.5(74)	100.0(251)
전체	39.0(390)	29.5(295)	31.5(315)	100.0(1,000)

[사업장 규모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경험]

(단위: %, 명)

사업장규모	사용	미사용	계
5~9	18.8(6)	81.3(26)	100.0(32)
10~29	30.4(14)	69.6(32)	100.0(46)
30~99	45.3(24)	54.7(29)	100.0(53)
100~299	44.4(28)	56.6(35)	100.0(63)
300명 이상	49.5(46)	50.5(47)	100.0(93)
전체	41.1(118)	58.9(169)	100.0(287)

자료: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2017)」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라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일정 규모 이하이며(업종별 차등. 예)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할 경우 지원 대상인 규모가 작은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제도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사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법률의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 및 지침 등 마련, 지원 시스템 개발, 관련 제도 홍보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사업이 내년 7월부터 계획대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재정 지원 외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직장 내의 인식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¹⁾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 대한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등 취업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37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0	0	0	37,500	37,500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동 사업의 지급 요건을 갖추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연간 5만명에 대한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며, 2019년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2만 5천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는 ① 임금 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미충족하는 자, ② 임금 근로자 중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4인 이하 농·어업인,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등이 있다.²⁾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339-301

2)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범위]

구분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단기일자리 등)
	고용보험적용제외	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나. 분석의견

첫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출산급여를 지급한다는 개괄적인 방안은 마련한 상황이나, 동 사업의 지원자격 및 수급요건, 소득요건, 지원 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논의 중에 있다.

고용보험 적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은 고용보험 DB를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자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동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수급 요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 여부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계약 또는 고용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련하여 보편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전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동 사업의 경우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므로, 제도 시행 전까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³⁾

둘째, 동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출산급여 지급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8.7.)에 따른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일반적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부여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가 다수 있었다.⁴⁾ 그런데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출산급여의 수급자는 일반적인 출산휴가급여 수급자와 달리 출산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동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이 375억원이며, 2020년부터는 매년 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임에도,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임을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되어⁵⁾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 차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초단시간근로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산 및 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제출 예정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연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김인경(KDI), 2017.6.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셋째,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 협의를 완료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⁶⁾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사회보장제도(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요청서를 2018년 8월 17일에 보건복지부로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2018년 제4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회’(2018.9.20.)에서 진행되었으며, 9월 28일 고용노동부로 통보되었다.⁸⁾

동 사업이 2018년 7월 5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후속 대응이어서 예산안 편성 전에 협의를 완료하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보장사업의 협의제도를 도입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가 신설된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로 신규 사업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8.4., pp. 152~155.

8) 사회보장협의회는 검토결과서에서, ① 일을 하면서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급여와의 중복지원으로 수급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가 필요하고, ③ 장기적으로는 동 사업 대상자들도 고용보험에 포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현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¹⁾은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16.4%) → 2019년 8,350원(10.9%, 시급 8,350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감경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한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2조 9,708억원에 비해 1,519억원(△5.1%) 감액된 2조 8,18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7,171	2,970,769	2,970,769	2,818,824	△151,945	△5.1

주: 2017년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산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비임

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주 지원금(2조 7,618억원)과 운영비(근로복지공단 위탁 등 570억원)로 구성되며, 사업주 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 지원 금액, 신청률,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지원대상 근로자(3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는 총 329만 6,283명이고, 신청률을 고려하여 237만 8,703명이 실제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신청률은 2018년 집행 현황을 고려한 것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률을 95%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로 산정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233-300

지원단가는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일 경우 15만원을, 5인 이상 29인 미만일 경우 1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2019년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원금이 월 15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만원 인상되며, 지원 목표 인원도 237만 8,703명으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예산안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8년 사업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신청률을 지난해 65%에서 50%로 조정하고, 지원기간 또한 12개월에서 10개월로 현실화하였기 때문이다.²⁾

[2019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사업주 지원금 산출 내역]

구분		지원대상 근로자 (백명)	신청률 (%)	지원 기간 (개월)	실제 지원 인원 (백명)	근로자 1인당 월 지원액 (만원)	총 사업주 지원금 (백만원)
40시간 이상	5인미만	6,478	95	10	6,154	15만원	923,183
	5~29인	7,413			7,042	13만원	915,543
40시간 미만	5인미만	10,757	50		5,378	근로시간	432,658
	5~29인	6,073			3,037	비례지급	213,724
기타 취약 근로자 ¹⁾		2,240	95		2,175	13만원	276,694
계		32,963	-	-	23,787	-	2,761,802 ²⁾

주: ¹⁾ 기타 취약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 고용위기지역 등 30~300인 미만 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의미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2018.7.1.부터 지원을 시작함

²⁾ 위 표의 총 사업주 지원금은 동 사업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 예산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도 고용보험 DB를 검토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근무하는 기간이 1년 중 약 9개월 수준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원 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의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에는 236만 4,800명 지원을 위하여 2조 9,294 억원³⁾의 지원금 예산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으로 신청인원 및 지원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누적 신청인원은 249만명, 지원인원은 183만명이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1조 4,729억으로, 편성된 지원금 예산의 50.3%가 집행되었다.

[2018년 월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 지원인원 및 집행 현황(누적)]

(단위: 만명, 억원, %)

구분	실적										비고 (예산 상 목표(b))	a/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22. (a)		
신청 인원	8	91	149	184	201	214	225	234	241	249	-	-
지원 인원	-	7.6	58	107	130	142	159	169	176	183	236	77.5
지원금 집행액	0.8	96	1,077	2,828	5,089	7,336	9,283	11,170	13,023	14,729	29,294	50.3

주: 신청 후 지원까지 심사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에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하반기부터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사업장 발굴·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월별 신청·지원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기 곤란하나 현 시점에서는 신청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지원금 예산의 80~85% 수준인 약 2.3~2.5조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사업 2년차로 올해에 비해 집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나, 올해 집행 실적이 계획대비 저조한 점 및 지원 대상 근로자의 퇴직 등에

3)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 예산이다.

따른 지원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신규 지원 사업장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에 있어 동 사업과 근로장려금 제도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최저임금 결정 관련하여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간접지원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전환 방안 마련 등 제도 간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2018.7.30.)에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간접 수혜자⁴⁾인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일정 근로소득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 구간을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 변경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가구당 2억원 미만
최대 지급액(만원)		85(단독)~250(맞벌이)	150(단독)~300(맞벌이)
지급규모		1.2조원, 166만가구	3.8조원, 334만가구

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8.7.30.)을 바탕으로 재작성

4) 일자리안정자금의 직접 지원 대상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나 사업주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간접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간접 수혜자’로 표현하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⁵⁾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양 제도간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참고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2018.7.)」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사업인 만큼 관련 여건을 조성해가며 간접지원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되,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대상·목적·방식 등이 상이하어 완전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비교]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영세사업주	저소득 가구
지원목적	고용유지, 영세업체 부담완화	근로장려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
지원방식	매월 현금 지급	소득발생 다음연도 年 1회 지급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재원	재정지출	조세지출

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현황 및 향후 계획(2018.7.)」, 정부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국정 과제 홍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¹⁾,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사업²⁾에 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책고객 소통강화 사업³⁾에 홍보비를 편성하였다.⁴⁾

[2019년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98,839	126,479	126,479	159,621	33,142	26.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8,682	12,071	12,071	18,871	6,800	56.3
근로조건개선지원	9,223	10,289	12,424	12,034	△390	△3.1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413	213	1,788	1,070	△718	△40.2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772	825	825	1,287	462	56.0
정책고객 소통강화	102	103	103	603	500	485.4

자료: 고용노동부

해당 사업 중 홍보비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내역사업에는 공익광고 제작, 온라인 및 현장 홍보 예산이 37억 3,300만원 편성되어 있다. 장시간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3031-302의 내역사업

3) 코드: 일반회계 7032-310의 내역사업

4)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동 국정과제 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 예산이다.

근로개선지원 사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인식개선 7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책고객 소통강화는 예산 전액이 홍보 관련 예산이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국정과제는 ①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과 ②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확산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800시간대 노동시간, 휴식 있는 삶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국정과제 상세 내용]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제도 개선,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등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육아·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질병·사고·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자료: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19.)을 바탕으로 제작성

나. 분석의견

일·생활 균형 실현 분야의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국정과제(이하 ‘일·생활 균형 관련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을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 사업인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사업과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서는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현장 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에서는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내역사업 10억 7,000만원 중 7억 1,000만원을 노동시간 단축 인식개선비로 편성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고용노동부 사업의 전반적인 홍보예산을 편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서 대표 SNS 운영, 영상 제

작, 정책기자단 운영 등 고용노동부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 확립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이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현’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내용에 대한 홍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국정과제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전반에 관한 홍보를,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는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생활 균형 관련 국정과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홍보 내용 및 목적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이 SNS 운영,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각 사업을 통한 홍보 방식의 일부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생활 균형 관련 국정과제 홍보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근로조건개선지원 (장시간근로개선지원)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정책고객 소통강화)
홍보 예산	(2018) 1,833 (2019안) 3,733	(2018) 213 (2019안) 1,070	(2018) 103 (2019안) 603
주요 목적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홍보 * 근로시간 단축 내용 포함	근로시간 단축 홍보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홍보
홍보 방식	- 공익광고 제작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SNS 홍보 등) - 현장 홍보	- 공익광고 제작 - 온/오프라인 홍보	- SNS 운영 -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정책기자단 운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안착을 비롯한 일·생활 균형 실현
국정과제에 관한 홍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비롯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개별 근로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감독관과 관련한 예산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¹⁾, 근로감독역량강화²⁾,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사업³⁾에 편성되어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며,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 근로감독 활동으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다.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에는 신규 근로감독관의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 있다.

[2019년도 근로감독관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235,439	276,573	276,573	357,115	80,542	29.1
근로감독역량강화	6,035	9,806	9,806	11,854	2,048	20.9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7,458	8,996	8,996	10,224	1,228	13.7

자료: 고용노동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7007-107

2) 코드: 일반회계 3032-306

3) 코드: 일반회계 7036-440

나. 분석의견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논의의 추이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제에서 근로감독관 증원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과제에서도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마련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추경으로 200명(6급 68명, 7급 132명) 정원을 증원하고⁴⁾, 2018년에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565명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증원하였다. 2018년 9월 말 현재 근로감독관 정원은 2,520명으로,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 53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 시 근로감독관은 정원 기준으로 총 3,055명이 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정원 및 증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	2017.8.	2018.3.	2018.9.	2019(계획)
근로감독관 정원	1,747	1,946	2,255	2,520	3,055
본부	48	48	48	48	48
근로개선	1,291	1,450	1,690	1,902	2,290
산업안전	408	448	517	570	717
증원인원	52	199 ¹⁾	309 ²⁾	265	535
직급별					
5급	0	△1	1	0	0
6급	26	68	94	80	160
7급	26	132	154	133	268
8급	0	0	60	52	107
직무별					
근로개선	52	159	240	212	388
산업안전	0	40	69	53	147

주: 1) '17.2, 울산지도위 사무국 신설에 따른 정원 이동(5급 -1명)이 있었음

2) '18.3, 충주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산업안전감독관 9명 추가 증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정부는 2017년도 추경안에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 500명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원 규모가 200명으로 축소되어 관련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임에 따라 관련 예산안이 187억 1,300만원 증액 편성되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사업의 증액 예산 805억 4,200만원 중 144억 3,500만 원은 증원된 근로감독관 535명에 대한 인건비이다.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서는 특정업무경비 22억 8,350만원과 일반수용비 10억 2,450만원 등 총 33억 800만원이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증액되었다. 마지막으로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사업에는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 부서 재배치 공사비, 외부 임차비 등 9억 7,000 만원이 증액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예산안 증액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18년 예산(A)	'19년 예산안(B)	B-A	정원 증원분	정원 증원분 세부내역
지방고용노동 관서인건비	276,573	357,115	80,542	14,435	봉급 12,288 정액급식비 417 명절휴가비 1,229 직급보조비 501
근로감독 역량강화	9,806	11,854	2,048	3,308	특정업무경비(월 25만원) 2,284 일반수용비 1,025
청·관사유지 및 시설관리	8,996	10,224	1,228	970	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6 감독부서 재배치 이사비용 58 재배치 공사비 240 외부 임차 보증금 230 임차 청사 임차료 176
계	295,375	379,193	83,818	18,713	

주: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타 내역사업에서 감액이 있어, 세부사업 증액(20억 4,800만원)에 비해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증액(33억 800만원)이 크게 나타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행정 대상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많은 업무량이나 업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업무 축소 등 업무구조 개선, 결원 인력에 대한 신속한 보강,⁵⁾ 「근

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주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⁶⁾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적정 증원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5) 2018년 9월 기준으로 중앙본부를 제외한 지방청 근로감독관 정원 2,472명 대비 현원은 1,906명으로, 충원율은 77.1%이다.

[근로감독관 지역별 충원율 현황]

(단위: 명, %)

지역	계			근로개선지도			산업안전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정원	현원	충원율
서울	499	398	79.8	431	341	79.1	68	57	83.8
경기·인천·강원	788	612	77.7	610	470	77.0	178	142	79.8
부산·경남	420	329	78.3	310	243	78.4	110	86	78.2
대구·경북	233	172	73.8	174	128	73.6	59	44	74.6
광주·전라	272	197	72.4	196	139	70.9	76	58	76.3
대전·충청	260	198	76.2	181	137	75.7	79	61	77.2
합 계	2,472	1,906	77.1	1,902	1,458	76.7	570	448	78.6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2006년 인원증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업무불만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인력증원은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인력증원과 함께 업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15.12., pp.83~86.)

가. 현황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그 밖의 고용지원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6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사업¹⁾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임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도 예산 212억 6,000만원 대비 71억 4,900만원(33.6%)이 증액된 28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18,909	21,260	21,260	28,409	7,149	33.6
임직원 인건비	18,909	21,260	21,260	24,668	3,408	16.0
운영비	0	0	0	3,741	3,741	순증

주: 운영비는 2019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인건비(일반회계)”와 “한국고용정보원운영(고보기금)”을 “한국고용정보원운영지원(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직원 인건비는 2018년에 비해 16.0%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8년 증원인력 43명에 대한 인건비가 12개월분(27억 6,400만원) 반영되고, 2019년 증원 예상인력 57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16억 1,800만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증원 예상 인력 57명 중 30명은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원이며, 5급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039-321

[한국고용정보원 증원 계획]

(단위: 명, %)

직급	'18정원 (A)	'19증원 (B)	'19정원 (A+B)	B/A	증원 내역
임원/별정직	1	1	2	100.0	· 기획연구 상임이사(1)
1급	10	-	10	-	
2급	28	-	28	-	
3급	85	-	85	-	
4급	86	4	90	4.7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4)
5급	119	52	71	43.7	· 부정수급수사관리시스템(3)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구축(8) · 온라인 청년센터구축(30) · 고용서비스기관품질관리(3) · 일자리사업평가(6) · 개도국 고용서비스전산망 구축(2)
6급	8	-	8		
계	337	57	393	16.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온라인 청년센터는 2018년도 추경을 통해 편성되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청년센터 운영 사업²⁾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지자체 공간을 소개하고, 청년 대상 온라인 상담을 수행하고자 한다.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관련 2019년도 예산안은 30억 8,600만원인데, 동 사업에도 청년 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인력과 온라인 상담시스템 상담인력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³⁾

2) 코드: 일반회계 1032-303

3) [2019년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중 온라인 청년센터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예산안(단위: 백만원)
온라인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134
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관리, 제작	617
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관리 인력(12명, 6개월)	(182)
정책 및 공간정보 제작 인력(7명, 6개월)	(480)
민간콘텐츠 제휴, 구매	(233)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위탁)	1,925
인건비(상담 인력 50명)	(1,515)
건물 임차료 등	(410)
홍보	410
합 계	3,08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청년센터 운영 사업과 별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을 위해 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관리·제작 인력 19인을 기간 제로 내년 6월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인력 12인으로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라인 상담 중 기초적인 상담은 외부위탁을 통해 수행하되, 심층적인 상담은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다.⁴⁾

나. 분석의견

온라인 청년센터 심층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증원 시 현재 상담서비스 시작 전으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채용 후 조직 및 인사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제공 예정인 전문 상담을 위한 18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가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기존의 상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및 진로결정 및 취업 애로 청년 대상 적극적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층 상담 수요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청년센터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상담서비스는 2018년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기초 상담 및 심층 상담의 양과 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담인력 18인은 정규직 5급으로 채용될 계획인데,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담서비스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외주콜센터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양질의 전문상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상담사의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4) [2019년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관련 인력 운용 계획]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책 및 공간정보 수집, 관리		12명(계약직) 「청년센터 운영」						12명(정규직)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정책 및 공간정보 제작		7명(계약직) 「청년센터 운영」											
온라인 상담시스템	1단계 (기초상담)	50명(외부 위탁) 「청년센터 운영」											
	2단계 (전문상담)							18명(정규직)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사업의 안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심층 상담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정규직 채용 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존 업무가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이나 직업상담에 필요한 기법의 연구·개발 등이라는 점에서,⁵⁾ 대민 상담을 위한 상담 전문 인력 채용 시 조직 및 인사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청년센터의 기능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 상담 인력 증원 및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가. 현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¹⁾은 고용위기지역²⁾에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한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년까지만 지급하며, 초기 지급 시는 6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후부터는 3개월분씩 지급한다.

2019년도 계획안은 80억 5,300만원으로, 동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있을 경우에만 편성되는 지원금으로서 2019년 이전에는 2017년도에 통영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계획	수정(A)		B-A	(B-A)/A
지역고용촉진지원금	0	0	0	8,053	8,053	순증

자료: 고용노동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56-353

2) 고용노동부는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한다. 2018년 4월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함에 이어 2018년 5월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수급을 위해 사업 이전·신설·증설을 신고하고 실제 개시한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개 지역에서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133명이나, 실제로 조업을 개시한 사업주는 72명으로 신고 사업주 대비 54.1% 수준이다. 또한, 이들의 고용계획인원은 1,797명이나, 실제 고용 인원은 계획인원의 30.3%인 545명이다.

[고용위기지역 사업 이전·신설·증설 및 고용 계획 현황]

(단위: 명)

	군산	통영	거제	울산 (동구)	창원 (진해)	고성군	목포	영암	계
사업 이전 계획 신고 사업주 수	0	0	0	1	0	1	1	1	4
조업 개시 사업주 수	0	0	0	1	0	1	1	0	3
사업 신설 계획 신고 사업주 수	20	2	5	9	1	2	3	9	51
조업 개시 사업주 수	15	1	5	5	1	1	1	3	32
사업 증설 계획 신고 사업주 수	36	7	5	11	1	3	4	11	78
조업 개시 사업주 수	21	2	3	5	1	1	2	2	37
고용 계획 인원	443	98	234	394	10	187	77	354	1,797
실제 고용 인원	167	25	103	163	5	25	9	48	545

주: 2018년 9월 27일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은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고용 실적 뿐 아니라 고용 유지율도 집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과거 평택(09.8.13.~10.8.12.)과 통영(13.1.25.~15.1.24.)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집행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평택의 경우 계획현액 기준 지정 당해연도의 집행률은 1.2%, 2차년도 집행률 89.8%였으며, 통영의 경우 1차년도 집행률은 67.0%, 2차년도 집행률은 64.2%였다.

[평택(09.8.13.~10.8.12.)과 통영(13.1.25.~15.1.24.)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1·2차년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당초	수정(A)				
평택	1차년도 (2009)	0	3,000	3,000	36	1.2	1.2
	2차년도 (2010)	3,000	3,855	3,855	3,462	115.4	89.8
통영	1차년도 (2013)	63	63	63	42 (평택 2, 통영 40)	67.0	67.0
	2차년도 (2014)	819	819	819	526	64.2	64.2

주: 2013년은 평택에 대한 지원금 집행 마지막 해로, 평택 지역 지원금과 통영 지역 지원금이 합
계 편성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현재 사업의 이전·신설·증설 실적이 일부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
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고용 계획에 따라 실제로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6개
월 이상 유지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
동부는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의 계획안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¹⁾은 신중년(50~60대)의 은퇴 후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85억 5,900만원 대비 132억 6,200만원(154.9%)이 증가한 218억 2,100만원이다.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8,406	8,559	8,559	21,821	13,262	154.9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0	0	0	8,031	8,031	순증
신중년 사회공헌	8,406	8,559	8,559	13,790	5,231	61.1

자료: 고용노동부

내역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편성(80억 3,100만원) 되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 인력이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비영리기관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보조율은 약 50%이다.

2019년에는 2,5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시간 당 10,400원을 지급하고, 1주에 15시간씩 44주(약 10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한편, 기존에 수행하던 내역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2018년도 예산 85억 5,900만원 대비 52억 3,100만원(61.1%)이 증액된 13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퇴직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336-301

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정의 참여수당 및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 또한 자치단체 보조로 수행되며, 보조율은 80%이다.

2019년에는 지원 인원이 확대(2018년 6,500명→2019년 10,000명)되고, 식비가 인상(2018년 5,000원→2019년 6,000원)되는 등에 따라 예산안이 증액되었다.

나. 분석의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선정, 참여기관 모집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특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퇴직인력의 경력에 따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한 반면, 신규 사업은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 등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존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기관을 모집하면 해당 운영기관이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기업 및 참여자 수요를 고려하여 이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을 공모하면 선정된 참여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즉, 신규 사업은 참여기관과 참여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참여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비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규)	신중년 사회공헌(기존)
대상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	
참여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	
참여 목적	소득 보전되는 일자리 참여	자기만족 및 성취감을 위한 봉사적 성격의 활동 참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신규)	신중년 사회공헌(기존)
근로자 지위	근로자 지위 O 참여기관 모집 ↓ 근로계약 참여자	근로자 지위 X 운영기관 모집 ↓ 연계 참여기관, 참여자
활동 내용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개별 참여자의 경력에 따라 희망하는 재능 나눔 활동 수행
활동 시간	연 평균 10개월	연 평균 360시간(약 6개월)
지원금 지급액	시간 당 평균 10,400원	참여수당 2,000원(/시간) 식바·교통비 9,000원(/일)
보조율	약 50%	약 80%
지원 목표('19)	2,500명	10,000명
활동 예시	드론자격증 보유한 신중년 활용 도시 안전 관리	지역 노인정에서 어르신 대상 한글 지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와 같은 차이를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중 현실적으로 퇴직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2월 중에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 때 자치단체가 제출한 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참여기관의 역량에 따라 퇴직인력 운용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 신중년을 통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참여기관을 모집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²⁾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나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³⁾, 현재 서비스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2)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 안전 관리 인력 필요에 따라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을 활용하여 산불점검 및 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 도시 안전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경험이 풍부한 퇴직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산불점검이나 해수욕장 안전 관리 및 퇴직 인력 운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참여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구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퇴직 인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기능 및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현 황

고용동향조사분석¹⁾ 사업은 청년, 고학력자,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구조, 직업이동경로 등 고용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정부 출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을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된 4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고용동향조사분석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고용동향조사분석	4,497	4,876	4,876	4,832	△44	△0.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동향조사 29억 8,300만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13억 4,900만원 및 고용동향분석 5억원을 합한 48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동향조사분석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9년도 예산안
고용동향조사	○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983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직업별 인력수급전망 등	1,349
고용동향분석	○ 국내외 고용동향분석 및 정책동향분석 등	500
합계		4,832

자료: 고용노동부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52-350

나. 분석의견

한국고용정보원이 연도말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연례적으로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2017년 동안 동 사업 등²⁾을 통하여 구입한 SAS³⁾ 라이선스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억 2,800만원, 2015년 1억 3,500만원, 2016년 1억 4,100만원, 2017년 1억 9,300만원 등 약 1~2억원 규모의 SAS 라이선스가 구입되고 있다.

이 중 연도말에 구입된 SAS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에 구입된 라이선스는 2014. 12. 31 ~ 2015. 12. 30까지이며, 2015년 12월에 구입된 라이선스는 2015. 12. 31 ~ 2016. 12. 30이고, 2017년 12월에 구입된 라이선스는 2017. 12. 31 ~ 2018. 12. 30까지로 연례적으로 다음연도에 사용될 라이선스를 연도말에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A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연도별 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일	라이선스 기간	계약금액	계약물품
2014	2014. 10. 30	2014. 9. 21 ~ 2015. 9. 20	23.76	SA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014. 12. 9	2014. 12. 31 ~ 2015. 12. 30	104	
	소 계		127.76	
2015	2015. 9. 15	2015. 9. 21 ~ 2016. 9. 20	25.4	
	2015. 12. 21	2015. 12. 31 ~ 2016. 12. 30	109.2	
	소 계		134.6	
2016	2016. 9. 28	2016. 9. 21 ~ 2017. 9. 20	26.03	
	2016. 12. 7	2016. 12. 31 ~ 2017. 12. 30	114.66	
	소 계		140.69	

2) 2017년 기준 SAS 라이선스 구입비용은 동 사업에서 2017년 9월 21일 2,655만원과 12월 31일 1억 1,46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타 사업인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사업에서 2017년 12월 29일 5,192만원이 집행되었다.

3) Statistical Analysis System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일	라이선스 기간	계약금액	계약물품
2017	2017. 9. 27	2017. 9. 21 ~ 2018. 9. 20	26.55	
	2017. 11. 17	2017. 12. 29 ~ 2018. 12. 28	51.92	
	2017. 12. 15	2017. 12. 31 ~ 2018. 12. 30	114.66	
	소 계		193.1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이처럼 연도말 다음연도에 사용될 통계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3조⁴⁾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도 단년도 예산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 출연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필요한 지출에 대응될 필요가 있으나 연도말에 다음연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에서 연도말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다음연도에 사용될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은 2019년도에는 해당 연도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연도에 실제로 사용될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SAS 소프트웨어는 1년 단위로 구입을 하며, 회계연도 일치를 위하여 과도하게 기존 계약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계약에 과도한 비용을 소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3조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가. 현 황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¹⁾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에 신용보증 대위변제액 중 구상채권 회수액이며, 이 사업의 2019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2억 8,600만원이 감액된 77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구상채권 회수액)	6,866	8,011	8,011	7,725	△286	△3.6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회수활동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보증 대위변제 후에 확보하고 있는 구상채권의 차년도 회수계획액을 일정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2019년 기타경상이전수입(구상채권 회수액) 계획안은 ①구상채권 추정액에 ②구상채권 추정 회수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먼저, ①구상채권 추정액은 2018년 말 미회수잔액 추정치에 2019년 대위변제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59-596

추정치를 더하여 산출한다. 2018년 말 구상채권 미회수잔액 추정치는 2017년 말 미회수잔액에서 2018년 대위변제 계획액을 더하고 2018년 채권회수 계획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음으로 ② 구상채권 추정 회수율은 2017년 실적률(2017년 회수액 / 2016년 말 미회수잔액 + 2017년 대위변제액)만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기타경상이전수입(구상채권 회수액) 계획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금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7,725	○ (2018년도 말 구상채권 미회수잔액 추정치 + 2019년도 대위변제 추정액) × 2017년도 구상채권회수율- {109,262}(2018년 말 추정미회수잔액) + 15,131(2019년 대위변제액)} × 6.21% = 7,725 ○ 2018년 말 추정 미회수잔액 109,262 = 104,218(2017년 말 미회수잔액) + 13,055(2018년 대위변제예산) - 8,011(2018년 채권회수액) ○ 2017년 구상채권회수율 6.21% = 2017년 채권회수액 / (2016년 말 미회수잔액 + 2017년 대위변제금) = 6,866 / (97,449 + 13,116)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권 회수액 계획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사업계정을 통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이후 보증채무의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②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실시하고, ③ 인수한 구상채권에 대한 회수활동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계획은 57억 2,100만원 ~ 99억 7,000만원이다. 그런데, 실제 회수액은 2016년에 가장 많은 71억 5,400만원 외에는 70억원을 넘지 않고 있다. 계획액과 회수액 간의 차이비율이 2011~2012년 동안 컸으나, 이후 2016년까지는 차이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기타이전수입(구상채권 회수액)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액(a)	7,611	9,970	5,721	7,057	7,166	7,411	7,746
회수액(b)	5,290	6,243	6,401	6,398	6,788	7,154	6,866
차액(c=a-b)	2,321	3,727	△680	659	378	257	880
비율(c/a)	69.5	62.6	111.9	90.7	94.7	96.5	88.6

자료: 근로복지공단

차이비율이 매년 추세를 보이지 않고 기복이 발생하는 원인은 계획액 산출 시 반영되는 구상채권회수율을 2개년 전 구상채권회수율로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단일연도 회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대위변제금액을 추정할 때는 보증잔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융자사업별 대위변제율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권 회수액 계획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구상채권 회수와 신용보증 대위변제액 계획반영 추정률 비교]

(단위: %)

구상채권 회수액 추정시 반영 추정률	신용보증 대위변제 추정시 반영 추정률
미회수잔액 × 2년 전 구상채권회수율 (단일률)	보증잔액 × 최근 3년간 융자사업별 대위변제율의 평균치

자료: 근로복지공단

가. 현 황

면허 및 수수료¹⁾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수령하는 보증료수입이며, 이 사업의 2019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45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면허 및 수수료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면허 및 수수료(보증료)	4,780	4,469	4,469	4,552	83	1.9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²⁾에 근거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 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동법 제24조(보증료)³⁾에 근거하여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65-651

2)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고 있다.

2019년 보증료(면허 및 수수료) 계획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보증료 계획안 45억 5,200만원은 2019년 융자계획 추정치 1,547억 9,200만원에 2017년도 융자실행률(96.85~99.98%)과 보증료율(1.8~3.56%)을 곱하여 산출된다.

[2019년 면허 및 수수료(보증료수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융자계획(a)	융자실행률(b)	보증료율(c)	보증료(a×b×c)
근로자생활안정자금	84,547	96.85	2.750	2,252
임금채불생계비	8,775	96.85	3.056	260
소액생계비	644	96.85	1.800	11
직업훈련생계비	45,826	98.28	3.560	1,603
산재생활안정자금	15,000	99.98	2.838	426
합 계	154,792	-	-	4,552

주 1: 융자계획은 예산 편성 당시 융자 예산 요구액 기준임

주 2: 융자실행률은 2017년 융자종류별 실행률을 적용함. 다만, 근로복지진흥기금 융자는 기금 전체 실행률을 적용함

주 3: 보증료율은 융자종류별 보증료율(0.7~1.0%)을 전체 보증기간(4년, 5년 등) 동안 적용·환산한 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본 사업에서 축소반영된 융자계획을 고려하여 보증료수입액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증료수입 산출에 반영된 융자금액 추정치와 사업별 융자계획안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료수입을 산출에 적용된 각 융자사업별 추정액은 총 1,547억 9,200만원이지만, 융자사업별 2019년 계획안은 1,297억 5,700만원으로 250억 3,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훈련생계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① 보증료 산출에 반영된 금액과 ② 직업훈련생계비 2019년 계획액 간에 30.7%인 140억 9,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지출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융자사업 규모의 증

액과 감액을 보증료 수입 산정 시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융자규모 변동 추이를 보증료 수입추계에 반영하여 축소된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수입액만큼 감액하되,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수지균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감액된 금액만큼 신용보증사업계정의 계정간전입금 및 중소기업계정의 계정간전출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9년 면허 및 수수료(보증료수입) 산출 상의 융자계획과 사업별 융자계획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융자계획(a)	사업별 융자계획(b)	차액(a-b)
근로자생활안정자금	84,547	71,971	12,576
임금채불생계비	8,775	12,480	△3,705
소액생계비	644	278	366
직업훈련생계비	45,826	31,735	14,091
산재생활안정자금	15,000	13,293	1,707
합 계	154,792	129,757	25,035

자료: 고용노동부

가. 현 황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중소기업계정과 신용보증사업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¹⁾은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사업비를 위하여 중소기업계정의 자금을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5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	5,821	5,150	5,150	5,845	695	13.5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 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보증료를 받는다. 한편, 공단은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고, 구상권 확보하고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진행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중소기업계정은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대위변제 등의 지출 - 보증료, 채권회수액 등의 수입)을 전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총 218억 200만원이며, 매년 평균액은 43억 6,000만원이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9301-860

[최근 5년간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 전출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5년 평균
신용보증사업계정전출	1,838	5,758	5,085	3,300	5,821	21,802	4,360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타 기금의 용자사업으로 인한 보증손실분을 기금별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02~2017년 동안 신용보증사업계정의 기금별 용자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진흥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기금’)의 용자로 인한 보증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자를 통한 보증료와 채권회수액 등의 수입액 738억원보다 신용보증 대위변제액 1,087억원이 많아 34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운영비까지 부담할 경우에는 손실의 폭이 866억원까지 확대된다. 운영비 517억원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기금의 경우에도 보증료나 대위변제 회수액보다 대위변제 지급액이 많아 2002~2017년 동안 10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장애인기금의 경우에는 2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용보증 대위변제 회수액과 보증료 합계액 1,224억원으로 대위변제를 위한 지급액 1,674억원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2017년 기금별 융자종류별 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융자 실행액	수입			지출			기금별 수지	
		대위변 제회수 (a)	보증료 (b)	소계 (c=a+b)	대위변 제지급 (d)	운영비 (e)	소계 (f=d+e)	c-f	c-d
근로복지 진흥기금	13,049	407	331	738	1,087	517	1,604	△866	△349
고용보험기금	10,584	126	177	303	274	-	274	29	29
산재기금	2,526	61	75	136	241	-	241	△105	△105
장애인기금	684	38	9	47	72	-	72	△25	△25
합계	26,843	632	592	1,224	1,674	517	2,191	△967	△450

자료: 근로복지공단

일반적인 보증사업에서는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이 높을 경우, 보증채무 이행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증료를 높여 자금의 수지를 맞춘다. 그런데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신용보증하는 융자사업의 수혜자는 대부분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 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 포함) 등이다.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높은 융자에 대한 보증료를 높이면 자금의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융자대상자의 이자부담 외에 보증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신용보증 대위변제액이 보증료와 채권회수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정으로부터 매년 전입금을 지원받았다. 산재기금과 장애인기금에서 발생하는 융자로 인한 보증손실(대위변제액-채권회수액 및 보증료수입)부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중소기업계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운영비도 전액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부담하며, 부족분을 중소기업계정으로부터 전입하고 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보증손실의 위험이 높은 융자에 대한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분은 보증대상 융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타 기금의 융자사업으로 인한 보증손실분을 각 기금별로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¹⁾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기금 규모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 저소득 노동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1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근로복지기금지원	2,935	4,692	4,692	4,223	△469	△10.0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925	1,945	1,945	1,631	△314	△16.1

자료: 고용노동부

2016년에 신설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 설립일부터 3년 이내 출연금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출연금의 50%를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①설립 이후 2억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동 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②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경우 2억원 한도로 출연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동 사업의 2019년 계획안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0개에 평균 8,155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산출되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601-322의 내역사업

[2019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 계획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비	20개소 × 81.55백만원 = 1,631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연례적 불용이 과다하므로, 신규지원 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에 바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수행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동 사업이 시작된 2016년에는 예산 30억원 중 8억 7,0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예산 20억원 중 9억 2,500만원만 집행하는데 그쳤다. 집행률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9.0%, 46.3%에 불과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2017			2018.9.		
계획(a)	집행액(b)	집행률(b/a)	계획(a)	집행액(b)	집행률(b/a)	계획(a)	집행액(b)	집행률(b/a)
3,000	870	29.0	2,000	925	46.3	1,945	453	23.3

자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예산 편성 시에 지원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를 과다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지원 기금법인 수를 30개로 계획하였지만 8개 기금법인만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계획한 20개 중 11개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2018년에는 20개 법인에 평균적으로 9,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9개 법인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5,000만원씩 총 4억 5,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은 합리적인 수요예측을 통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9.		201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기금수	30	8	20	11	20	9	20
지원단가	100	108	100	84.1	97	50.3	81.55
예산액	3,000	870	2,000	925	1,945	453	1,631

자료: 근로복지공단

가. 현 황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¹⁾은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498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직장어린이집지원	112,873	145,125	145,125	162,730	17,605	12.1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40,538	49,829	49,829	49,829	0	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영유아보육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동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1의 내역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시설을 직장어린이집 용도에 맞도록 전환하는데 사용한 비용 중 60~90%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억원(공동 6~8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맞추어 어린이집이 우수한 교재·교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재 교구비 사용액을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개요]

구분	지원한도	비고
시설전환비	대규모기업군 : 3억원(공동 6억원)	소요금액의 6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4억원(공동 8억원)	소요금액의 90%,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 20억원	
교재 교구비	5천만원(우선지원기업 7천만원)	교체시기 : 3년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2019년 계획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할 135개소에 개소당 평균적으로 3억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47억 5,800만원의 시설전환비를 편성하였고, 153개소에 개소당 평균적으로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50억 7,10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다.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산출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전환비	사업장수	88	114	118	135	135
	지원금액	25,073	32,547	35,847	44,758	44,758
	2019년 계획안 : 135개소×331백만원≒44,758백만원					
교재교구비	사업장수	103	131	136	153	153
	지원금액	3,636	4,357	4,691	5,071	5,071
	2019년 계획안 : 153개소×33백만원≒5,071백만원					

자료: 근로복지공단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지원가능한 임의사업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장은 크게 의무설치사업장과 임의설치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장 중 의무설치사업장의 비중이 2016년 이후 60% 이상 차지한다. 2016년에는 68.8%, 2017년에는 65.4%이다. 2018년 8월 말까지의 실적에서도 의무설치사업장이 44개소로 전체 설치사업장 77개소 중 57.1%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15	2016	2017	2018.8.31
의무설치사업장(a)	67	99	100	44
임의설치사업장	47	45	53	33
합계(b)	144	144	153	77
비중(a/b)	46.5	68.8	65.4	57.1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수행 중인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중 시설전환비 예산단가는 2015년 2억 2,700만원, 2016년 2억 5,000만원, 2017년 3억 3,100만원이다. 한편, 개소당 평균 시설전환비 집행단가는 2015년 2억 8,500만원, 2016년 2억 8,600만원, 2017년 3억 400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 지원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2016년에는 직장어린이집 개소수 과다 추정, 2017년에는 개소수 및 단가 과다 추정에 기인한다.

2016년에는 개소수를 156개소로 추정하였지만 실제 지원한 직장어린이집 개소수는 114개에 그쳐 64억 7,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2017년에 87억 2,6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당초 계획치보다 적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개소수에 따른 39억 5,200만원과 개소당 단가차이 31억 8,600만원 등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중 시설전환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집행	개소	88	114	118
	개소당 단가	285	286	304
	금액	25,073	32,547	35,847
예산	개소	110	156	131
	개소당 단가	227	250	331
	금액	25,069	39,025	43,432

자료: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중 미이행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의 중요한 수요군이다. 다음의 표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중 이행사업장과 미이행사업장 현황이다. 미이행사업장은 2015년 제도 변경에 따라 538개로 급증하였지만, 2016년과 2017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167개소이다. 2018년 8월 31일까지 미이행 사업장 중 44개소가 동 사업을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다. 2017년과 같은 100개소 수준으로 동 사업을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의 미이행사업장의 수는 100개 미만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중 미이행사업장의 수가 감소할 경우, 사업의 시행자인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하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임의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의 시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능 임의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요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부터 임의설치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연도	이행사업장				미이행 사업장(b)		설치의무사업장 합계(a+b)
	직장어린이집 설치	보육수당 지급	보육시설 위탁	소계 (a)	개소 (b)	비중	
2013	534	242	101	877	197	18.3	1,074
2014	635	175	93	903	301	25.0	1,204
2015	578	-	27	605	538	47.1	1,143
2016	729	-	211	940	213	18.5	1,153
2017	839	-	247	1,086	167	13.3	1,253

주: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의 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

자료: 근로복지공단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시설전환비 지원 대상규모를 2019년에 135개소로 계획하고 있지만,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2017년 88~118개소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 중 시설전환비 지원 개소수]

(단위: 개소)

구분	2015	2016	2017
집행 개소수	88	114	118
계획 개소수	110	156	131
차이비율	△22	△42	△87

자료: 근로복지공단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거 지원직장어린이집의 설치지원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설치의무사업장 중 미이행사업장 수가 100개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되는 임의사업장에 대한 데이터 부재로 인한 수요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가능한 임의사업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K-Move스쿨 사업¹⁾은 장·단기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해외취업으로까지 연계하기 위해 훈련운영기관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된 29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도 K-Move스쿨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외취업지원	47,169	42,437	52,587	57,102	4,515	8.6
K-Move스쿨	26,211	24,720	29,370	29,430	60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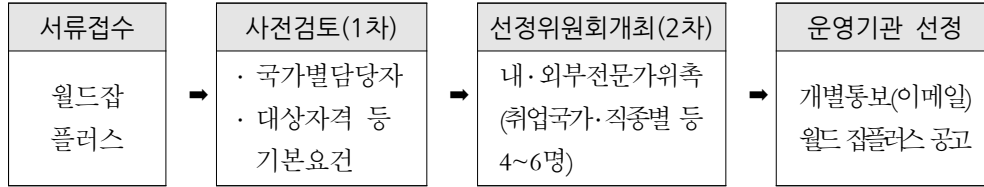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① 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신청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대상자격 등의 기본요건 등을 검토하고, ② 취업국가와 직종별 4~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③ 최종적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④ 약정을 체결한 후, ⑤ 계약금의 70%를 선지급하고, ⑥ 취업실적 및 수수료 실적에 따라 잔여 30%를 차등지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과정 종료 후 2회 이상(6개월, 12개월) 사후관리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035-304의 내역사업

[K-Move스쿨 운영기관 선정절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K-Move 스쿨사업의 예산안은 294억 3,000만원으로, 기존의 K-Move 스쿨사업(장단기) 226억 8,000만원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신설된 K-Move스쿨 트랙 II사업 6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K-Move 스쿨사업의 예산안 편성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장 기	19,200	2,400명×800만원	22,400	2,800명×800만원
단 기	3,480	600명×580만원	2,320	400명×580만원
소 계	22,680	-	24,720	-
K-Move스쿨 트랙 II	6,750	500명×1,350만원	4,050	300명×1,350만원
군산·통영 추가지원	-		600	200명×300만원
합 계	29,430	-	29,370	-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분석의견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K-Move 트랙 II 연수과정의 연수성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예산의 확대보다는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신설되어 2019년에 예산이 증액된 K-Move스쿨 트랙 II는 기존의 K-Move스쿨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기존의 K-Move스쿨

은 연봉 2,400만원 이상인 취업처에 70% 이상의 취업목표를 두었지만, K-Move스쿨 트랙 II에서는 연봉 3,200만원 이상인 취업처에 90% 이상의 취업목표를 두고 있다. 1인당 지원비는 기존 K-Move스쿨에서는 최대 800만원이었지만, K-Move스쿨 트랙 II에서는 최대 1,35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K-Move스쿨과 K-Move스쿨 트랙 II 비교]

구분	K-Move스쿨(기존)	K-Move스쿨 트랙 II 신설
연봉기준	연봉 2,400만원 이상	연봉 3,200만원 이상
취업성과 기준	70% 이상 취업 목표	90%이상 취업 목표
1인당 지원금	최대 800만원	최대 1,350만원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에 신설된 K-Move스쿨 트랙 II를 운영할 10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였고, 2018년 10월 10일까지 시작된 연수과정은 9개 과정이다. 또한, 장기간 운영되는 K-Move스쿨 트랙 II의 연수종료일은 2019. 6. 28~2019. 7. 31이다.

K-Move스쿨의 장기과정의 경우 취업을 연계하고 이후 확인작업을 거쳐 개설한 연수과정의 마감까지 6개월~2년이 소요된다. K-Move스쿨 트랙 II는 기존의 장기과정(6개월)보다 긴 기간동안 연수를 진행함에 따라 취업연계 및 연수과정의 성과를 측정까지 장기과정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17년 장기훈련과정의 평균 훈련시간은 835시간이며, 트랙 II사업의 평균 훈련시간은 1,420시간이다.

따라서 2019년 내에 3,200만원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에 연수생의 90%이상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연수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K-Move스쿨 트랙 II 연수과정 선정 현황]

(단위: 명)

연 번	기관명	취업 국가	연수과정명	승인 인원	연수 시작일	연수 종료일
1	국방전직교육원	베트남	베트남 물류/생산관리 2기 해외취업연수과정	20	2018-09-28	2019-07-12
2	서울경희직업전문학교	베트남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 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30	2018-09-17	2019-07-30
3	순천향대학교	베트남	베트남 생산전략기업 중간 관리자취업과정	20	2018-09-17	2019-07-06
4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베트남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베트남)과정	100	2018-08-05	2019-06-29
5	(사)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글로벌 중간관리자 마스터 (베트남)	30	2018-10-01	2019-07-31
6	(주)드림힐	베트남	베트남 제조기업 (전자/자동차) 중간관리자 취업연수 1기(군산과정)	20	2018-09-03	2019-06-28
7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일본	일본 IT 엔지니어 양성과정	15	2018-10-10	2019-07-26
8	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일본 SW DevOps 마스터 과정	50	2018-10-19	2019-07-31
9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일본	IOT기반 프로그래밍 전문 가과정 트랙II	30	2018-09-20	2019-07-26
10	(주)현대CAD디자인 직업전문학교	일본	(NCS 기반)글로벌자동차 3D설계엔지니어	15	2018-09-10	2019-07-05
합 계				33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에 1인당 최대 1,350만원이 소요되는 K-Move스쿨 트랙II사업에 300명의 연수생을 선발하여 2019년까지 연수할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2019년에는 K-Move스쿨 트랙II사업에서 500명을 연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에 신설된 사업의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K-Move스쿨 중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훈련프로그램의 평균취업률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5~69.2%인데, 장기훈련프로그램보다 조건이 강화된 K-Move스쿨 트랙II의 성과여부가 불투명하다.

[K-Move스쿨 장기연수프로그램 취업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취업률	69.2	66.5	67.5	취합 중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따라서,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K-Move스쿨 트랙Ⅱ의 인원증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신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K-Move스쿨 트랙Ⅱ의 2018년과 2019년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2018년 예산	4,050	300명×1,350만원
2019년 예산안	6,750	500명×1,350만원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가. 현 황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¹⁾은 개발도상국 중심의 진출을 도모하고 해외에 취업한 청년층의 조기정착,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을 받아 수행하는 동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2억 1,000만원 증액된 14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해외취업사업	47,169	42,437	52,587	57,102	4,515	8.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8,100	6,750	11,626	14,836	3,210	21.6

자료: 고용노동부

정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지급금액과 시기를 확대개편하였다. 지급금액은 기존보다 2배 확대되고, 지급시기도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다. 지원금우대국가(개발도상국) 취업자는 기존에 총 2회에 걸쳐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추가경정예산 이후로는 총 3회에 걸쳐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선진국 취업자는 기존에는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추가경정예산 이후로는 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035-304의 내역사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내용 변동사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추경 이전		2018년 추경 이후		
지급시기	1개월	6개월	1개월	6개월	12개월
개발도상국	2	2	3	2	3
선진국	1	1	2	1	1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2019년도 예산안은 개발도상국취업자와 선진국취업자로 구분하고, 2018년 취업자의 2,3차 지원금과 2019년 취업자의 1차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산출되었다.

[2019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내역
개발도상국 취업자	2018년 취업자	3,312	2차(1,200명×2백만원×0.8×0.6)+3차(1,200명×3백만원×0.6×1)
	2019년 취업자	5,320	1차(1,400명×3백만원×1)+2차(1,400명×2백만원×0.8×0.5)
	소 계	8,632	
선진국 취업자	2018년 취업자	1,404	2차(1,300명×1백만원×0.8×0.6)+3차(1,300명×1백만원×0.6×1)
	2019년 취업자	4,800	1차(2,000명×2백만원×1)+2차(2,000명×1백만원×0.8×0.5)
	소 계	6,204	
합 계		14,836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분석의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3차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진출을 도모하고 해외에 취업한 청년층의 조

기정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착지원금을 확대하고, 3차 지원금을 신설하였다. 개발도상국 취업자에게는 3백만원, 선진국 취업자에게는 1백만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추경예산부터 적용하고 있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중 3차 지원금은 취업 후 12개월 시점에 지급하는데, 개발도상국 취업자에게는 3백만원, 선진국 취업자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차 지원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18년에 1차 지원금 수령 인원의 60%가 3차 지원금을 수령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019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내역
개발도상국 취업자	2018년 취업자	2,160	3차(1,200명×3백만원×0.6×1)
	2019년 취업자	0	해당없음
	소 계	2,160	
선진국 취업자	2018년 취업자	780	3차(1,300명×1백만원×0.6×1)
	2019년 취업자	0	해당없음
	소 계	780	
합 계		2,940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고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고용유지율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중 취업 후 12개월 시점에서 수령 가능한 3차 지원금을 2018년에 추경부터 신설한 배경을 1년 시점에서의 고용유지율 파악을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과 고용유지율 파악을 위한 용도로 3차 지원금을 개설하여 2019년 예산안에 2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를 통하여 데이터의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

도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고용유지율 데이터 활용 측면이라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확대와 3차 지원금 신설을 통하여 큰 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근속 가능한 양질의 해외취업처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7년 해외취업자 중 정착금 지원금 수령자 147명을 대상으로 81명(55.1%)가 1년 이상 근로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등에 근거하고, 1차 지원금 수령자 중 약 80%가 2차 지원금을 수령하는데 근거하여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 수령자 중 약 80%가 수령할 것이라는 단순 추정을 통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7년에 1차 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3,304명이다. 일부 정착금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추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한 3차 지원금 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정교성 높은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정착지원금의 확대보다는 양질의 해외취업처 확보와 해외취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및 부담금 징수 등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출연받아 수행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¹⁾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고용관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9년 계획안은 554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0억 1,6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8,057	21,658	23,611	58,727	35,116	148.7
근로지원인 지원	14,486	18,508	20,461	55,477	35,016	171.1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단이 지원 결정을 한 후 별도의 사업위탁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보하고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활용가능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지원인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06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 증가액은 지원인원의 증가와 지원단가, 지원시간 등에 기인한다. 이 중 예산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요인은 지원인원이다. 2018년에는 1,200명의 지원인원을 가정하였으나, 2019년에는 1,800명 증가한 3,000명을 가정하였다.

[2018년 대비 2019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예산증가 내역(당초예산 기준)]

(단위: 명, 원, 시간, %, 백만원)

구분	지원인원	지원단가	지원시간	개월수	비율	예산액
2018	1,200	11,320	115	12	98.46	18,458
2019	3,000	12,454	125	12	98.425	55,160
증가	1,800	1,134	10	-	△0.035	36,70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을 지원한 근로지원인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4년 528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00명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2019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예산안에서는 근로지원인 규모를 2018년 1,200명 대비 1.5배 증가한 3,000명을 예상하고 있어, 근로지원인 사업을 통하여 근로서비스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지원인	420	528	611	809	1,000	1,200	3,000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근로지원인을 고려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²⁾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0년에 시작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장애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은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세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영역별 제공시간 비율은 시각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이 전체 제공시간의 54.7%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이 29.9%, 청각·언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이 15.6%이었다.

전체 제공시간 중 가장 많은 제공시간을 할애한 서비스는 시각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자 응대, 업무상 비품지원 등 서비스 관련 부수 업무이며 21.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은 제공시간을 할애한 서비스는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이며, 20.3%를 차지한다. 세 번째로 많은 제공시간을 할애한 서비스는 시각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이며, 17.9%를 차지한다.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제공시간 비율]

(단위: %)

주요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비율
시각	①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17.9
	②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1.4
	③ 직무상 강의, 안마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이동지원 등	12.1
	④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1.4
	⑤ 방문자 응대, 업무상 비품지원 등 서비스 관련 부수 업무	21.9
	합계	54.7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위: %)

주요 장애유형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비율
지체, 뇌병변	①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4.1
	②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2.3
	③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20.3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3.2
	합계	29.9
청각, 언어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11.1
	②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2.5
	③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2.0
	합계	15.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매년 50인 이상 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내역을 분석한 사업체에 소속된 중증장애인 수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중은 2.0~2.8%에 불과하다. 한편,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취업자(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는 152,640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을 통하여 추출한 인원 53,387명의 2.86배 수준이다.

[중증장애인근로자 대비 근로지원인 신청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중증장애인근로자	46,503	50,522	53,387
근로지원인 수혜자	918	1,248	1,512
비중	2.0	2.5	2.8

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도 말 재직 순수 중증장애인원 기준이며, 공단 사업으로 조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제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영역의 중증장애인과 장애유형별 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체·뇌병변과 청각·언어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각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동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근로자 비중은 2017년에 25.2%임에 반해,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경우 2.7%에 불과하다. 또한 청각·언어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동 사업의 수혜인원 비중도 3.9%에 그치고 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동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근로자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별 지원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지체·뇌병변	중증장애인근로자(a)	14,292	14,755	15,169
	신청장애인(b)	263	361	462
	수혜장애인(c)	232	323	412
	비중1(b/a)	1.8	2.4	3.0
	비중2(c/a)	1.6	2.2	2.7
	비중3(c/b)	88.2	89.5	89.2
시각	중증장애인근로자(a)	3,125	3,372	3,483
	신청장애인(b)	601	845	953
	수혜장애인(c)	552	757	877
	비중1(b/a)	19.2	25.1	27.4
	비중2(c/a)	17.7	22.4	25.2
	비중3(c/b)	91.8	89.6	92.0
청각·언어	중증장애인근로자(a)	5,647	5,787	5,765
	신청장애인(b)	143	180	256
	수혜장애인(c)	134	168	223
	비중1(b/a)	2.5	3.1	4.4
	비중2(c/a)	2.4	2.9	3.9
	비중3(c/b)	93.7	93.3	87.1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중증장애인근로자(a)	23,064	23,914	24,417
	신청장애인(b)	1,007	1,386	1,671
	수혜장애인(c)	918	1,248	1,512
	비중1(b/a)	4.4	5.8	6.8
	비중2(c/a)	4.0	5.2	6.2
	비중3(c/b)	91.2	90.0	90.5

주 1: 중증장애인근로자는 장애유형 중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원임

주 2: 중증장애인근로자 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도 말 재직 순수 중증장애인원 기준이며,공단 사업으로 조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18년 8월 중증장애인근로자 현황은 고용부담금 및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시기가 아닌 관계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움

주 3: 기타 장애유형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현황은 2015년 5, 2016년 11, 2017년 9, 2018.8. 5명이며, 위 표에서는 제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음으로, 2015~2017년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도 말 재직 순수 중증장애인원을 기타 장애유형과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중증장애인근로자로 구분한 결과,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4~54.3%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수혜 장애인근로자 중 기타 장애유형 수혜장애인의 비중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 중 근로자지원인 서비스 수혜자의 비중은 0.02~0.04%로 미미한 수준이다.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실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공단 집계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a)	23,439	26,608	28,970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중증장애인근로자(b)	23,064	23,914	24,417
	합 계(c)	46,503	50,522	53,387
	기타 장애유형 비중(a/c)	50.4	52.7	54.3

(단위: 명, %)

구 분		2015	2016	2017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기타 유형 수혜장애인(d)	5	11	9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e)	918	1,248	1,512
	기타유형 수혜장애인비중(d/e)	0.5	0.9	0.6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 중 수혜장애인비중(d/a)		0.02	0.04	0.03

주 1: 중증장애인근로자 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연도 말 재직 순수 중증장애인원 기준이며,공단 사업으로 조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근로자수는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18년 8월 중증장애인근로자 현황은 고용부담금 및 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시기가 아닌 관계로 데이터 추출이 어려움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고로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적장애가 73.1~74.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간장애	28	26	23
뇌전증장애	58	52	53
신장장애	1,274	1,422	1,501
심장장애	246	244	237
안면장애	50	56	53
호흡기장애	287	279	266
장루요루장애	4	3	5
지적장애(a)	17,143	19,910	21,654
자폐성장애	1,315	1,674	1,936
정신장애	2,621	2,540	2,871
상이등급	413	402	371
합 계(b)	23,439	26,608	28,970
비중(a/b)	73.1	74.8	74.7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2019년 예산안에서 근로지원인을 2018년의 1,200명보다 1.5배 많은 3,0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 수는 인당 1.5명이었다. 근로지원인은 1일 8시간 내에서 여러 서비스 활동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9년 근로지원인 계획인원 3,000명이 지원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는 4,5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근로지원인이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는 2018년에 최대 1,8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21명이었다. 기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증장애인근로자 수가 2019년에 계획하는 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2015~2017년 동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자와 수혜자의 비율은 1.1:1 수준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중증장애인근로자는 대부분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지원인 1인당 지원 장애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근로지원 서비스 수혜 중증장애인근로자(a)	923	1,259	1,521
근로지원인 신청 중증장애인근로자	1,022	1,398	1,685
신청인 대비 근로지원인 지원율	110.7	111.0	110.8
근로지원인(b)	611	809	1,000
근로지원인당 장애인근로자 수(a/b)	1.5	1.6	1.5

주: 2018년은 8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자 수가 적은 원인은 근로지원인지원 사업의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도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매년 전년도인 12월 사업공고 및 지원결정을 통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상 전년도말에 목표인원 대비 94.1%~107.9% 수준에서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12월 말 기준으로 근로지원인 지원결정 현황]

(단위: %)

구분	사업목표 인원	전년 12월 결정인원	결정비율
2016	880명	921명	104.7
2017	1,000명	1,079명	107.9
2018	1,200명	1,129명	94.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따라서,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전년 1,200명 대비 1.5배 확대되는 근로지원인을 고려하여 시각 중증장애인근로자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중증장애인근로자는 물론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타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맞춤형훈련센터 3개소, 발달 및 청각센터 5개소에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 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 33개소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이동불편 등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19년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05억 5,400만원 증액된 44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100% 출연하는 사업이다.

[2019년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3,280	34,118	34,118	44,672	10,554	30.9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의 2019년 계획안 446억 7,200만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맞춤형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비 373억 8,300만원, 민간훈련기관 35개소의 훈련비 70억 3,200만원, 공공훈련기관 지원비 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7-314

[2019년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구성내역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원액	교육훈련비	4,696	훈련생 교재 구입 등 939백만원×5개소=4,696백만원
	사업관리비	4,764	953백만원×5개소=4,764백만원
	시설비	644	128.8백만원×5개소=644백만원
	훈련장비 취득비	885	177백만원×5개소=885백만원
	사이버콘텐츠 개발	170	85백만원×2종=170백만원
	맞춤훈련센터 신설 및 운영	8,018	운영: 1,053백만원×6개소=6,320백만원 신설: 1,698백만원×1개소=1,698백만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및 운영	18,206	운영: 923백만원×7개소=6,458백만원 신설: 1,958백만원×6개소=11,748백만원
	소계	37,383	
민간 훈련기관 지원		7,032	훈련비: 6.5천원×117시간×9개월×500명 ×수료율 85.6% 훈련장려금: 447백만원=116천원×9개월 ×500명×수료율 85.6% 훈련성과인센티브: 18백만원 보건복지부 민간직업훈련 이관: 435명 ×1,079천원×9개월×86%
공공 훈련기관 지원		257	교사수당: 60천원×1.2명×12개월×34개 소=29백만원 훈련수당: 80명×316천원×9개월=228백 만원
합계		44,67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동 사업의 2019년 계획안 중 주요 증액사업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비와 민간훈련기관 지원비이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비는 전년 대비 86억 5,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운영 개소수 증가에 따른 증액 27억 7,900만원, 신설 개소수 증가에 따른 증액 58억 7,400만원 등이다. 민간훈련기관 지원비는 전년 대비 36억 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민간훈련기관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재이관받음에 기인한다.

[2019년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안 주요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계획	2019년 계획안	증액 규모	세부 내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3,679	6,458	2,779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개소수 4→7개소 증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5,874	11,748	5,87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신설 개소수 3→6개소 증가
소 계			8,653	
민간훈련기관 지원	3400	7,032	3,632	보건복지부 민간직업훈련 이관: 435명×1,079천원×9개월×86%
합 계			12,285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나. 분석의견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민간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민간훈련기관, 공공훈련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맞춤형훈련센터 3개소, 발달 및 청각센터 5개소에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훈련기관 지원은 23개소의 공공훈련기관 지원액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증 장애인 중심의 통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33개소의 민간훈련기관 지원은 여성 및 중증 장애인이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의 민간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019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시행주체별 교육훈련 금액과 훈련예상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금액 446억 7,200만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운영분이 373억 8,300만원, 공공 훈련기관분이 2억 5,700만원, 민간훈련기관분이 34억원이다. 이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민간직업훈련기관분은 제외하였다.

[2019년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안의 사업시행 주체별 내역]

(단위: 백만원, 명)

구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합계
금액	37,383	257	7,032	44,672
훈련예상인원	2,566	80	935	3,581

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계획안에는 훈련센터 신설비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별 취업률을 살펴본 결과, 훈련기관별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 중 공단이 간접지원하는 훈련기관 중 민간훈련기관의 취업률이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2017년에 74.2%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별 취업률 현황]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단 직접 훈련	직업 능력 개발원	훈련인원	1,701	1,855	1,617	1,670	1,653	1,744
		수료인원	1,576	1,719	1,454	1,482	1,465	1,508
		취업인원	1,422	1,570	1,322	1,365	1,363	1,412
		훈련인원 대비 취업률	83.6	84.6	81.8	81.7	82.5	81.0
		수요인원 대비 취업률	90.2	91.3	90.9	92.1	93.0	93.6
	맞춤 훈련 센터	훈련인원	-	-	30	203	265	473
		수료인원	-	-	23	183	226	400
		취업인원	-	-	13	174	220	385
		훈련인원 대비 취업률	-	-	43.3	85.7	83.0	81.4
		수요인원 대비 취업률	-	-	56.5	95.1	97.3	96.3
	발달 훈련 센터	훈련인원	-	-	-	-	-	190
		수료인원	-	-	-	-	-	163
		취업인원	-	-	-	-	-	158
		훈련인원 대비 취업률	-	-	-	-	-	83.2
		수요인원 대비 취업률	-	-	-	-	-	96.9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훈련 기관 지원	공공 훈련 기관 (폴리텍 대학)	훈련인원	201	120	97	61	70	60
		수료인원	187	106	90	54	68	50
		취업인원	128	81	75	48	61	40
		훈련인원 대비 취업률	63.7	67.5	77.3	78.7	87.1	66.7
		수요인원 대비 취업률	68.4	76.4	83.3	88.9	89.7	80.0
	민간 훈련 기관	훈련인원	611	678	505	555	560	534
		수료인원	521	608	428	476	463	508
		취업인원	280	359	266	313	331	377
		훈련인원 대비 취업률	45.8	52.9	52.7	56.4	59.1	70.6
		수요인원 대비 취업률	53.7	59.0	62.1	65.8	71.5	74.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민간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내규)에 의해 민간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를 포함한 훈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운영평가결과에 따라 훈련기관 선정 시 훈련정원 증원, 총 훈련비의 100분의 10 이하의 성과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장애인고용관리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생의 출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훈련기관에 불시에 방문하여 출결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전적으로 훈련기관의 출결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는 민간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

1

현황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5억 원이 감소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439	9,219	9,219	7,719	△1,500	△16.3

자료: 기상청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85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2억원(3.1%) 감소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기상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7,723	397,899	397,899	385,694	△12,205	△3.1

자료: 기상청

한편,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년도 기상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원가대비 목표 50%에서 최종 22.3%로 결정(2018. 5. 9.고시)됨에 따라 면허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고(2018년 52억원 → 2019년 35억원), ②위성개발사업 완료로 위성분야 예산이 축소되었으며(2018년 351억원 → 2019년 89억원), ③ 슈퍼컴 5호기 도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리스료 1회 34억원)되었다.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사에게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인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가 생산원가 대비 15.0%로 낮은 수준이므로 기상청은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 적정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 중 지진계 예비품 구매 사업은 장애 발생 실적을 고려하여 예비품 물량을 산정하고,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구매 사업은 2019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기상과학관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상과학관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높으므로 지역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기상과학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기상청의 2019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47억원 규모이다.

수치모델링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34억원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인건비) 13억원 등 총 47억원으로 소속기관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면서 본부 인건비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다.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수치모델링센터 인건비(총액인건비)	3,437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인건비)	1,263
합 계		4,700

자료: 기상청

2019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연직바람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R&D), 자연재해대응영향 예보생산기술개발(R&D), 한반도지하단층·속도구조통합모델개발(R&D), 기상위성운영 및 활용기술개발(R&D), 기상관측장비연구 및 실험시설구축·운영(R&D) 등이 있다.

① 연직바람관측장비 융합기술개발(R&D)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 착수시기 지연으로 2018년 감액되었던 예산이 2019년도에 증액되었고, ② 기상위성운영 및 활용기술개발(R&D)은 2018년 12월 천리안위성 2A호가 발사예정임에 따라 관제 및 운영비가 추가 편성되었고, ③ 기상관측장비연구 및 실험시설구축·운영(R&D)은 공정률(2018년 40%→2019년 60%)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기상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8		2019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6개)	연직바람 관측장비용합 기술개발(R&D)	557	557	1,195	638	114.5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 산기술 개발(R&D)	1,750	1,750	2,739	989	56.5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 구조 통합모델 개발(R&D)	2,750	2,750	4,405	1,655	60.2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R&D)	6,259	6,259	8,374	2,115	33.8
	기상관측장비연구 및 실험시설구축·운영(R&D)	2,312	2,312	4,023	1,711	74.0
	국립기상과학원 기본경비(R&D)	73	73	151	78	106.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8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기상청

II

개별 사업 분석

1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¹⁾는 「기상법」 제37조²⁾에 따라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로 면허 및 수수료³⁾ 세입에 포함된다.

2019년도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7억 4,100만원 감소한 28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면허 및 수수료	1,945	5,238	5,238	3,477	△1,761	△33.6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1,435	4,593	4,593	2,852	△1,741	△37.9

자료: 기상청

항공기상청(책임운영기관)은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원

김태은 예산분석관(tkim@assembly.go.kr, 788-4649)

1)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2005년 6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항공기상청은 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 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기상법」

제37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코드: 일반회계 65-651의 내역사업

가 대비 50%까지 인상을 목표(착륙 21,422.5원, 통과비행 5,027.5원)로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4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결과 착륙 11,400원, 통과비행 4,820원으로 결정(2018.5.9. 고시 개정)됨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결정된 수수료에 맞추어 28억 5,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항공기상청은 적정 수준의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상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기상청 고시)」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여 매월 징수하고 있다.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착륙기준으로 2005년 4,850원에서 2010년 5,820원, 2014년 6,170원, 2018년 11,4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통과비행의 경우 2005년 1,650원에서 2010년 1,980원, 2014년 2,210원, 2018년 4,820원으로 인상되었다.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인상 현황(편당 사용료)]

	제정 (2005.6.1)	1차 개정 (2010.5.1)	2차 개정 (2014.3.1.)	3차 개정 (2018.6.1.)
착륙 (인상률)	4,850원	5,820원 (20.0%)	6,170원 (6.0%)	11,400원 (84.8%)
통과비행 (인상률)	1,650원	1,980원 (20.0%)	2,210원 (11.6%)	4,820원 (118.1%)

자료: 기상청

2018년 6월부터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는 착륙비행 84.8%, 통과비행 118.1% 등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인상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하고 있는 원가와 항공기상청 연간 운영 예산, 해외 항공기상정보 수수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우선 원가대비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수준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생산원가⁴⁾⁵⁾는 189억 5,600만원이나 징수금액은 14억 3,500만원⁶⁾으로 생산원가의 7.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더라도 생산원가 대비 15.0%(2017년 항공편수 기준, 인상된 수수료 적용) 수준이다.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생산원가 및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산원가(A)		12,912	12,912	12,912	12,912	15,514	15,514	15,514	18,956	18,956	18,956
수수료 (원)	착륙	4,850	4,850	5,820	5,820	5,820	5,820	6,170	6,170	6,170	6,170
	통과	1,650	1,650	1,980	1,980	1,980	1,980	2,210	2,210	2,210	2,210
징수금액(B)		676	624	767	894	986	1,068	1,204	1,300	1,451	1,435
원가보상률 (B/A)		5.24	4.83	5.94	6.92	6.36	6.88	7.76	6.86	7.65	7.57

주 : 해당 연도에 인상된 경우 인상된 수수료 단가로 작성

자료: 기상청

원가계산 방식이 아닌 항공기상청 운영을 위한 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3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항공기상청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청사임차료,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은 총 139억 1,300만원이다. 반면에 인상된 수수료 단가 기준으로 2019년도 항공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예상 수입액은 28억 5,200만원으로 항공기상청 2019년도 연간 예산액의 20.5% 수준이다.

4) 항공기상청은 2015년에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여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산정 보고서」, 2015.12.)

5) 생산원가는 직접비와 기반비용으로 구성되며, 직접비는 항공기상청이 직접 집행하는 인건비, 기타 경비(기본경비 및 사업비), 감가상각비(자산) 등 모든 비용을, 기반비용은 기본적인 기상관측 및 예측 생산 비용 중 항공기상정보 생산에 연관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6) 2017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14.4억원이 징수되었고, 이 중 국내항공사가 8.5억원(대한항공 3.0억원, 아시아나 2.1억원, 제주항공 1.0억원 등), 외국항공사가 5.9억원 부담하였다.

[2019년도 항공기상청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공기상청 예산(A)	11,674	13,754	13,754	13,913	159	1.2
- 항공기상청 인건비	6,832	7,373	7,373	7,572	199	2.7
- 항공기상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34	703	703	726	23	3.3
- 항공기상청 기본경비	83	100	100	100	0	0.0
-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2,805	4,192	4,192	4,192	0	0.0
- 항공항행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20	1,386	1,386	1,323	△63	△4.5
항공기상정보제공수수료 수입(B)	1,435	4,593	4,593	2,852	△1,741	△37.9
항공기상청 예산액 대비 수수료 수입 비율(B/A)	12.3	33.4	33.4	20.5		

자료: 기상청

또한 외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비교해보면, 독일의 경우 편당 44,000원, 말레이시아 87,000원, 호주 128,000원, 조지아 \$19~99, 우즈베키스탄 €130~260, 북한 €50로 우리나라의 수수료 11,4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⁷⁾

항공기상정보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로 충당되지 못하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⁸⁾ 따라서 이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상청은 관련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한국항공협회 및 ICAO Doc 7100(Tariffs for Airports & Air Navigation Services(2016)에 기상항목이 별도로 표시된 국가를 예시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항행서비스료(항공관제, 항공정보 등)와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각각 부과정수하고 있으나, 외국은 주로 항행서비스료에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포함하고 있어 항공기상정보사용료만 별도로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일부 국가는 이를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비교하였다.

8) 다만, 사용료 인상으로 항공업계에서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소장 제출일 2018.6.26.)한 상황이며, 원고(항공사)측의 주요 청구사항은 ① 부칙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인상을 협의 조항 위반, ② 항공기상정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무상 제공이 타당, ③ 기상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은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 등이다. (원고 : 대한항공 외 8인(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피고 : 기상청장)

가. 현 황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사업¹⁾은 전국에 지진관측소를 설치하고, 지진관측망비의 검정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2억 5,300만원이 감액된 7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까지 지진계관측소 구축²⁾이 완료됨에 따라 지진계 신설 및 노후지진계 교체 예산은 대폭 축소(2018년 54개소 신설, 23개소 교체 → 2019년에는 4개소 교체)되었고, 지진계 예비품 구매,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구매, 공중음파관측소 신설,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운영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7,210	17,766	17,766	16,890	△876	4.9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9,594	12,610	12,610	7,357	△5,253	△41.7
- 지진계 신설 및 노후지진계 교체	9,594	12,410	12,410	630	△11,780	△94.9
- 지진계 예비품 구매	0	0	0	1,580	1,580	순증
-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구매	0	0	0	850	850	순증
- 공중음파관측소 신설	0	0	0	2,550	2,550	순증
- 지진해일관측소	0	200	200	200	0	0.0
-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운영	0	0	0	1,547	1,547	순증

자료: 기상청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1238-301의 내역사업

2) 기상청 264개 지점이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측소까지 포함할 경우 총 314개 지점

나. 분석의견

첫째, 지진관측장비의 장애 발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품 구매 물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가 국외제품이 대부분이고 장애 발생 시 국내 수리가 불가하여 국외 제조사 반출로 인한 관측 중단이 발생(복구기간 평균 249일)함에 따라 장애 시 신속한 교체를 위하여 예비품을 확보하고자 15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예비품 또는 소모성 물품 구매는 운영장비의 10% 범위 내외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기상관측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2015.12.30.)」에 따라 2017년도 기준 운영되고 있는 지진계기록계의 10% 수준으로 예비품 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진관측장비 예비품 산정 기준]

(단위: 백만원)

예비품 종류	운영수량 (A)	예비품수량 (B)	단가 (C)	합계 (B × C)	예비품비율 (B / A)(%)
시추형 광대역 속도지진계	64	6	60	360	9.4
시추형 가속도 지진계	145	15	30	450	10.3
지표형 광대역 속도지진계	18	2	35	70	11.1
지표형 단주기 속도지진계	29	3	10	30	10.3
지표형 가속도 지진계	65	7	10	70	10.8
지진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기록계)	211	20	30	600	9.5
합 계	532	53		1,580	10.0

자료: 기상청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지진관측장비 운영수량 대비 국외수리 실적을 보면, 관측장비별로 수리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추형 광대역 속도지진계의 경우 129대 중 18건의 수리 건수가 발생하였고, 시추형 가속도 지진계의 경우 187대 중 2건 등의 수리건수가 발생하여 관측장비별로 수리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비별로 국외수리가 발생한 실적을 운영하고 있는 장비 수량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시추형 광대역 속도지진계는 약 14.0%, 시추형 가속도 지진계는 약 1.1%로 장비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2015~2017년) 지진관측장비 운영수량 대비 국외수리 실적]

(단위: 건, %)

예비품 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장애비율
시추형 광대역 속도지진계	4/37	4/43	10/49	18/129	14.0
시추형 가속도 지진계	0/51	0/57	2/79	2/187	1.1
지표형 광대역 속도지진계	0/15	1/15	1/17	2/47	4.3
지표형 단주기 속도지진계	0/32	1/31	0/30	1/93	1.1
지표형 가속도 지진계	2/63	1/62	1/47	4/172	2.3
지진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기록계)	4/146	5/150	5/156	14/452	3.1
합 계	10/344	12/358	19/378	41/1080	3.8

주: 표안의 '00/00'는 당해연도 국외수리 건수 / 운영장비 수

자료: 기상청

따라서 예비품 구매 목적이 기 설치된 지진관측장비의 국외수리 시 관측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운영수량의 10%를 예비품으로 구입하기 보다는 관측장비별로 고장률, 수리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품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19년에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17대 구매를 위한 예산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동식 지진계는 배경잡음 등으로 약한 지진 발생시 자동분석(조기경보시스템)에 활용되지 못하는 기존 지진관측소에 대한 원인 규명(장비문제인지, 환경문제인지), 신규관측소 설치 및 기존관측소 이전 시 설치환경 평가, 주요 지진 발생 시 여진의 위치 및 깊이의 정확한 관측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17대가 필요한 이유는 주요 지진 발생 시 여진의 공간 분포 주변에 고르게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 구매 예산 세부내역]

- 이동식 단주기가속도지진계 : 45,714,280원×14대 = 640백만원
- 이동식 광대역속도지진계 : 70,000,000원×3대 = 210백만원

기상청에서 설명하는 이동식 지진계의 구매 필요성 중 지진관측망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전국을 약 18km 간격으로 지진관측망 설치(총 314개소, 기상청 264개소, 유관기관 50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므로 지진관측소 추가 설치의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진 발생 시 여진의 위치 및 깊이의 정확한 관측·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 설치된 지진관측소 중 상대적으로 관측 정보의 품질이 낮은 지진관측소에 대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상청은 과다 또는 미탐지 지진관측소에 대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2019년에 어느 지진관측소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현장대응용 이동식 지진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검정방법과 대행기관 지정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정용 장비 구축 14억 5,000만원, 운영비 9,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검정용 장비 구축 14억 5,000만원은 지진계, 기록계 검정을 위한 시설인 검정용 암반터널 구축을 위한 설계비 5천만원³⁾과 검정용 장비 14억원이며, 운영비 9,700만원은 검정대행기관 지정 준비를 위해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다.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예산 세부내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 검정용 암반터널 구축 50백만원 · 공사비 : 검정 가진기 설치 2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저주파용 검정장비 구매 1,200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97백만원 |
|---|

3) 2019년도 예산안에는 설계비만 5천만원 편성되었고, 2020년 예산에 암반터널 구축 공사비 20억원이 필요하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⁴⁾은 지진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5년 주기로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기상청은 대상장비 중 일부만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관측장비 검정에 대한 제도 운영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기상청은 2018년에 지진관측장비 검정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검정방법 정립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구축을 통해 2020년부터 검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측장비의 검정기준을 정하면서, 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정방법 등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의 검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상청은 검정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비(검정기술 교육 및 기타운영비) 9,700만원을 법정민간대행사업비⁵⁾로 편성하였으나,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년 11월 국회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검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법정민간대행사업비란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가. 현황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기상과학관, 기상박물관 등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3,100만원 증액된 12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청 청사시설관리	10,152	17,719	17,719	19,168	1,449	8.2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190	10,924	10,924	12,055	1,131	10.4
-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	1,258	1,027	1,027	1,757	730	71.1
-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정읍)	739	782	782	782	0	0.0
- 기상박물관 구축(서울)	370	1,716	1,716	1,448	△268	△15.6
- 밀양기상과학관 구축	297	3,417	3,417	4,119	602	17.6
- 충주기상과학관 구축	449	3,417	3,417	3,679	162	4.7
-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0	100	100	0	△100	△100.0
- 정읍 기상과학체험관	0	200	200	0	△200	△100.0
- 서해안 기상기후센터(충남 홍성)	0	200	200	0	△200	△100.0
- 청사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77	65	65	270	205	315.4

주: 자산취득비는 국유기금 청사신축과 관련된 OA 구입 예산임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18년 기준으로 기상과학관, 기상박물관 등 총 8개의 기상과학 인프라 시설을 구축 또는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2014.11 개관), 국립전북 기상과학관(정읍, 2016.12. 개관)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국립기상박물관(2016~2019년, 62억원), 밀양기상과학관(2016~2019년, 101억원), 충주기상과학관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7137-302의 내역사업

(2016~2019년, 96억원)은 설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수 해양기상과학관(가칭), 정읍 기상과학체험관(가칭), 서해안 기상기후센터(가칭)는 2018년 예산에 처음 반영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기상과학관 등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시설 구축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개관하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을 제외하고, 기상박물관 등 6개소의 구축 예산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립기상박물관은 집행률이 12.9%이고, 밀양기상과학관은 2.3%, 충주기상과학관은 0%이며, 2018년도 신규로 편성된 여수 해양기상과학관과 정읍 기상과학체험관, 서해안 기상기후센터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등 협의 중에 있으며 집행실적이 0%이다.

[기상과학관 등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업기간)	2017 결산	2018.8					2019 예산안
		예산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기상박물관 ¹⁾	239	1,716	1,256	2,972	382	12.9	1,448
밀양 기상과학관 ²⁾	272	3,417	2,256	5,673	129	2.3	4,119
충주 기상과학관 ³⁾	327	3,417	2,201	5,618	0	0.0	3,679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0	100	0	100	0	0.0	0
정읍 기상과학체험관	0	200	0	200	0	0.0	0
서해안 기상기후센터	0	200	0	200	0	0.0	0

주: 1) 기상박물관(서울) 총사업비 6,251백만원, 사업기간 2016~2020

2) 밀양 기상과학관 총사업비 10,064백만원, 사업기간 2016~2019

3) 충주 기상과학관 총사업비 9,624백만원, 사업기간 2016~2019

자료: 기상청

기상박물관은 구 기상청 청사였던 서울기상관측소(등록문화재)를 기상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선공사 예산인데, 해체·실측 조사 중 대들보 등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원형 보존·복원을 위한 절차 등의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밀양 기상과학관은 지자체 부지조성공사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약 4개월 지연)로, 충주 기상과학관은 공사 착공 후 문화재발굴 조사로 공사가 지연(약 10개월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박물관의 경우 당초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른 2019년도 소요액 52억 300만원 중 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신규사업인 3개 지역의 과학관 등 구축을 위한 예산은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밀양기상과학관과 충주기상과학관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액 전액을 편성하였다.

밀양기상과학관과 충주기상과학관은 당초 2019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사 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됨에 따라 건축공사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상청은 사업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진일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상과학관 등 기상과학 교육 인프라시설의 연도별 예산 개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16	'17	'18	'19	'20
기상박물관	6,251	230	1,495	1,716	1,448	1,502
밀양 기상과학관	10,064	170	2,358	3,417	4,119	0
충주 기상과학관	9,624	170	2,358	3,417	3,679	0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미정	0	0	100	0	0
정읍 기상과학체험관	미정	0	0	200	0	0
서해안 기상기후센터	미정	0	0	200	0	0

자료: 기상청

둘째, 기상청은 기상과학관에 대한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상과학관은 기상·기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며, 3D영상관, VR체험실, 체험교육실(일기도 그리기, 기상예보관기상캐스터 체험 등)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기상과학관은 2개소(대구, 전북)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건설 중이며, 3개소는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등 협의 중에 있다. 이들 기상과학관은 모두 기상청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²⁾이다.

[기상과학관 개관(예정)일 현황]

	국립대구 기상과학관	국립전북 기상과학관	밀양 기상과학관	충주 기상과학관	여수 해양기상 과학관	정읍 기상과학 체험관	서해안 기상기후센터
지자체	대구	전북 정읍	경남 밀양	충북 충주	충남 여수	전북 정읍	충남 홍성
개관(예정)일	2014.11.26.	2017. 1. 1.	2019.9.	2020.1	미정	미정	미정

자료: 기상청

기상과학관 설립은 2013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되어 2014년 11월에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이 개관하였고, 이후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 2018년도 예산에 총 6개 기상과학관 설립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최근들어 기상과학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과학관별 예산 신규편성 시기]

	국립대구 기상과학관	국립전북 기상과학관	밀양 기상과학관	충주 기상과학관	여수 해양기상 과학관	정읍 기상과학 체험관	서해안 기상 기후센터
예산 신규편성	2013년도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자료: 기상청

2) 현재 운영중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의 경우 대구기상지청 소속이고,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전주기상지청 소속이다.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관람객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의 경우 2015년 11.4만명에서 2016년 7.1만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1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9월말 기준 8.9만명이 방문하였다. 2017년 1월에 개관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2017년 2.2만명이 방문하였고, 2018년에는 9월말 기준으로 2.7만명이 방문하여 전체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기상과학관 관람객 현황]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9월말 기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113,837	71,103	144,819	89,338
국립전북기상과학관	-	-	22,535	27,248

주: 국립대구기상과학관 2014.11.26.개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2017.1.1.개관

자료: 기상청

이와같이 기상과학관이 확충되면서 기상과학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7년에는 「기상법」³⁾에 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동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상과학관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와 향후 추가 설립의 가능성, 재원확보 문제,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기상청은 기상과학관 확충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별 배분 등을 고려한 권역별 기상과학관 운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⁴⁾

3) 「기상법」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 참고로 기상과학관과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의 경우 정부가 설립하는 국립과학관과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립과학관을 구분하고 있으며, 2017.5월말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립과학관*이 5개소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공립과학관은 46개소이다. (*국립중앙과학관(대전), 국립과천과학관(경기), 국립대구과학관(대구), 국립광주과학관(광주), 국립부산과학관(부산))

가. 현 황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¹⁾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재해 경감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에 따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합의로 설립(2005.11.)된 “APEC 기후센터(APCC²⁾)³⁾”에 기관 운영비와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액된 80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8,428	8,229	8,229	8,067	△162	△2.0
인건비(360-01)	5,258	5,455	5,455	5,455	0	0.0
경상경비(360-02)	1,035	1,035	1,035	1,035	0	0.0
연구활동비 등(360-05)	2,135	1,739	1,739	1,577	△162	△9.3

자료: 기상청

APEC 기후센터는 최근 법안심사나 국정감사, 결산 심사 등에서 존재의의와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상청은 2017년 APEC 기후센터는 설립근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결과 기관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한 사항을 재평가한 후 법정기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1334-301

2) APEC 기후센터(APCC : APEC Climate Center) :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APEC 21개 회원국의 동의를 통해 설립을 승인받은 아태지역 기후관련 공식 협력기구로,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이다.

3) APEC 기후센터는 기후정보서비스를 생산하여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기후예측자료의 공유, 회원국의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발생 탐지 및 발생원인 사례 분석 등을 제공하고 기후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는 의견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이 보류되었고,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기관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또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APEC기후센터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APEC기후센터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구 분	내 용
「기상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2017.3)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재평가 필요
2017년도 국정감사 (2017.10)	(1)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재검토 필요 APEC 기후센터는 ODA성 응용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은 사업 추진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APEC 기후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
201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부대의견 (2018.8)	1. 기상청은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APEC기후센터의 존치 여부를 포함 전반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나. 분석의견

첫째, APEC기후센터에 예산을 출연금(360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국제기구 회원국 간 합의로 설립되었으나 국제지원금은 미미하고 대부분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출연금의 경우 보조금이나 일반용역비 등과 비교해서 집행에 있어 자율성이 높고, 집행관리 등도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근거를 요하며, 「국가재정법」⁴⁾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에 출연의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기상청은 설립근거와 출연금 지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16.12.)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결과 시급성 및 기관 정체성 등 문제제기로 해당조항은 의결이 보류(2017.11)되었고, 2017년에 APEC기후센터의 기관 정비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설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APEC 기후센터는 APEC 회원국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나, APEC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2013년까지 3.9만~12만 달러로 연간 1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2014~2018년 최근 5년 동안에는 2016년에 12만 달러 지원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없었다. 반면에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은 2006년 10억원에서 2018년에는 82억 2,9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APEC 기후센터 재원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PEC 기금 (천달러)	39	59	79	89	100	116	120	110	0	0	120	0	0
기상청 출연금 (백만원)	1,000	1,000	1,300	1,500	1,800	3,700	5,922	5,482	7,000	7,450	7,750	8,428	8,229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녹색기후기금(GCF) 등 정규적인 국제지원금을 확보하고 APEC 회원국 간 매칭펀드를 통한 공동연구 확대 등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APEC 기후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라는 점에서 회원국 간 공동연구 또는 재원분담 등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서 살펴본 출연금의 법적근거 문제 등 APEC 기후센터에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둘째, 2018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61.4%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며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 기후센터(2015.1.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는 동 사업으로부터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비 등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 2018년 9월말 기준 인건비,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의 각각의 실집행실적은 62.4%, 59.3%, 59.6%로 전체적으로 61.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전년도 이월액(5.4억)과 원장 공석, 연구원 퇴사 등으로 실집행실적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⁵⁾

[2018년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실집행현황(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2019년 예산안
	본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실집행 (B)	실집행률 (B/A)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8,229	5,900	5,900	5,056	61.4	8,067
인건비(360-01)	5,455	4,000	4,000	3,405	62.4	5,455
경상경비(360-02)	1,035	700	700	614	59.3	1,035
연구활동비 등(360-05)	1,739	1,200	1,200	1,037	59.6	1,577

자료: 기상청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연금 사업은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등 집행실적과 출연기관의 보유자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예산을 미교부 불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⁶⁾

5) 인건비, 경상경비 등 매월 일정한 수준으로 집행되는 항목이므로, 9월말 기준일 경우 75% 수준의 집행실적이 일반적이다.

6) 이에 대해 기상청은 동 사업이 연구개발(R&D) 사업이므로 2018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 현 황

기상관측 위성개발 사업(단위사업)¹⁾은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위성 1호의 운영과 차세대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2호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상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R&D),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기상위성자료 현업지원 기술개발(R&D),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R&D)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R&D)의 2018년 종료로 기상관측 위성개발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0억 9,700만원이 감액된 22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9년도 기상관측 위성개발 사업(R&D)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위성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R&D)	6,096	6,259	6,259	8,374	2,115	33.8
정지궤도기상위성 지상국 개발(R&D)	16,487	12,390	12,390	8,890	△3,500	△28.2
기상위성자료 현업지원 기술개발(R&D)	4,621	4,849	4,849	4,875	26	0.5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R&D)	14,731	22,738	22,738	0	△22,738	△100.0
합 계	41,935	46,236	46,236	22,139	△24,097	△52.1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천리안위성 1호기 운영의 추가 연장 및 운영비 분담에 대해 사전에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49)

1) 코드: 일반회계 3137

천리안위성 1호기는 2010년 6월에 발사된 정지궤도 위성으로 기상, 해양, 통신 관측을 수행한다. 2018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3월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천리안위성 2호기A와 2호기B가 개발 중에 있으며, 2호기A는 기상관측을 위한 위성이고, 2호기B는 해양, 환경 관측을 위한 위성이다. 2호기A는 2018년 12월에 발사예정²⁾이고 2호기B는 2호기A 발사 후 1년 뒤에 발사할 예정이다.³⁾

1호기의 경우 기상, 해양, 통신을 위한 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해양수산부, 기상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관제(위성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분담률은 30 : 15 : 50 : 5이다. 2호기A는 기상위성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 기상청이 80%를 분담한다.

[천리안위성 1호/2A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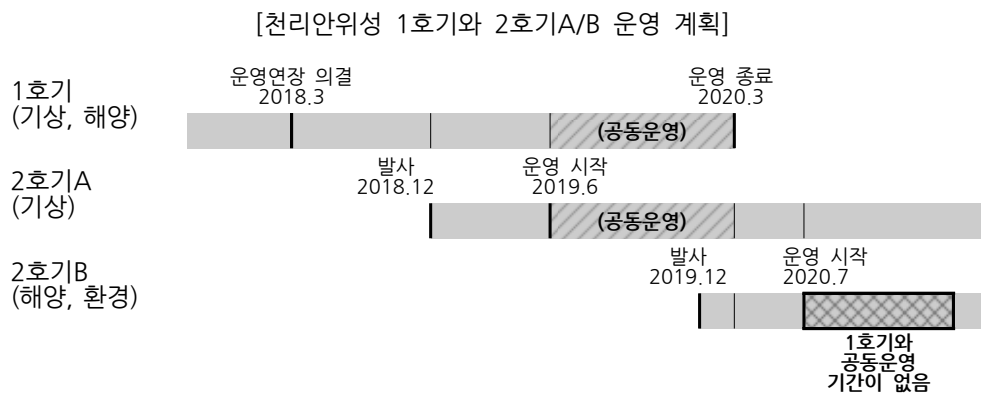
항목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위성 1호)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위성 2A/2B호)
개발기간	‘03.9~’10.12	‘11.7~’19.9
발사시기	‘10.6.27	2A(기상) ‘18.12, 2B(해양·환경) ‘19예정
임무수명	7년	10년
임무	통신, 기상/해양관측	기상/우주기상관측, 해양/환경관측
발사중량	2.5톤급	2A(~3.5톤급), 2B(~3.5톤급)
위성플랫폼 수	1기	2기(기상·우주기상, 해양/환경 각1기)
투입예산	3,549억원(위성 1기) - 과기부 1,309억원, 방통위 789억원, 국토부 702억원, 기상청 749억원	7,200억원(위성 2기) - 과기부 3,354억원, 환경부 1,238억원, 해수부 1,033억원, 기상청 1,562억원
관제운영비 분담비율	항우연 : 해수부 : 기상청 : ETRI = 30 : 15 : 50 : 5	(2호기A) 항우연 : 기상청 = 20 : 80 (2호기B) 과기부 : 환경부 : 해수부 = 20 : 40 : 40

주: 관제운영비란 위성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
자료: 기상청

2) 1호기의 경우 당초 2017년 12월 발사 목표였으나, 1년 가량이 지연되었다.

3) 2호기 A와 B의 발사시기가 1년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위성을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에서 발사 전 시험 검증 등을 동시에 할 수 없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2호기A의 정상운영은 발사(2018년 12월 예정) 후 정상궤도 진입 및 시험운영이 약 6개월 소요됨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은 2호기A가 정상운영 되더라도 1호기의 자료와 비교 분석을 위해 일정기간 공동운영이 필요하므로 1호기의 임무기간인 2020년 3월까지 공동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상청은 2호기A가 2019년 6월부터 정상운영됨에 따라 1호기를 2020년 3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2019년 말경에 발사 예정인 2호기B를 이용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1호기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재원분담으로 1호기의 운영비를 공동 분담하고 있어 추가 연장될 경우 기상청은 운영비를 추가 분담해야한다. 위성의 임무 연장 및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은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추가 임무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기상청은 1호기의 추가 운영의 연장 여부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소요예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상산업활성화¹⁾는 기상산업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기업성장지원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상청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상산업 조사·분석, 기상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기상산업육성, 기상측기 검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600만원이 증가한 104억 6,900만원이다.

[2019년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 결산	2018		2019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상산업활성화	9,136	9,663	9,663	10,469	806	8.3

자료: 기상청

동 사업은 기상산업육성, 기상기업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 등 크게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일반회계 1431-301

[2019년도 기상산업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기상산업육성(1,437)	기상기업지원(2,482)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운영(655)
세부 내역	· 기상산업 인프라 강화: 509 - 기상산업 실태 조사 등 -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 기상정보 활용촉진 지원 928 - 날씨경영활성화 - 기상산업진흥 전시·홍보 - 기상기업 대상 기상정보제공	· 국가기상 관측 품질 고도화 88 - 현장검정경비 - 검정장비 유지보수 등 · 기상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175 - 청년창업 아이템 개발비 - 창업지원금 -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등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 429 - 수출마케팅 및 컨설팅 - 국제공동현지화 지원 등	· 인건비: 4,887 · 경상경비: 1,663 - 기관 경상경비 - 기관청사 임차·관리비

자료: 기상청

6-1. 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 기업 확대 필요

가. 현 황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 창업지원과 성장지원을 위해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는 총 1,873㎡의 공간에 사무실, 회의실 등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입주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추가로 전주기 성장지원자금, 경영 애로사항 상담 등을 제공받고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으로 입주 신청자격은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매출액 15억원 미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최대 2년간 입주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거쳐 추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 신청자격]

(단위: 개)

구분	신청자격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신청년도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에 해당하는 초기창업자 중 기상기후 기술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매출액 15억원 미만) - 예비창업자: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자료: 기상청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는 동시에 15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며, 2018년 현재 누적 기준 23개사가 입주하였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지원 기업 현황]

(단위: 개)

	2015	2016	2017	2018
입주기업수	15	19	26	23

주: 연간 누적 입주기업 수입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전주기 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상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은 임대료 무료(관리비 일부 부담), 컨설팅 지원과 함께 특히, ‘전주기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기획-개발-생산-판로-마케팅’에 이르는 성장지원 각 분야에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내외로 지원받고 있다.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범위		주요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분야	
경영	종합경영 컨설팅	컨설팅	경영전략, 인사/노무, 특허/법률, 재무/회계, 마케팅 전략수립, 생산관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컨설팅
	무역	수출입	해외운송, 스케줄 관리, 물류보관 등 종합 무역지원
교육	전문교육	수강	기업 직원의 기술훈련 및 직무관련 교육
기술개발	산업재산권	기술조사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동향조사 보고서 등
		국내,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PCT, 상표, 디자인 포함)
		인증	해외 밴더 등록 및 인증 등
	공공장비 활용	장비활용	지원기관 및 대학 등의 장비 활용 수수료
디자인	시제품 제작	시제품	시제품 제작비(설계비, 재료비, 목업비, 디자인비 등)
	디자인 개발	브랜딩	제품 디자인 및 CI, BI 등 개발(개선) 등
마케팅	국내외 시장 조사 및 발굴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행사개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지원
		초청상담	해외바이어 초청상담 지원
		전시회, 학회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전문학회 참가지원(참가비, 부스 및 공간 임차료, 기자재 설치비, 물류운송비 등)
	홍보활동	홍보물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브로슈어, 팸플릿 등
		광고, 언론홍보	산업전문지, 신문광고, TV·라디오광고, 포털사이트광고, 동영상제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아이템 홍보
		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 웹/앱 제작 등 신규구축 및 고도화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전주기 성장지원사업으로 2015년 15개 입주기업에게 4억 3,000만원, 2016년 15개 입주기업에게 2억 7,400만원 2017년 13개 입주기업에게 2억 8,100만원의 성장지원 비용을 지원하였다.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합계
과제수	23	14	13	50
기업수	15	15	13	43
금액	430	274	281	985

주: 컨소시엄 과제 참여 기업은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주기 성장지원사업은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간 동안 2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5~2017년 기간 동안 전주기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비용을 지원받은 입주 기업을 분석한 결과, 총 4회 지원 받은 기업은 2개사였으며,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7,259만원이었다. 총 3회 지원기업은 5개사, 기업당 평균지원금액은 6,707만원, 2회 중복지원 기업은 7개사로 기업당 평균 4,560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주기 성장지원사업 중복지원 현황]

(단위: 개사, 천원)

지원횟수	합계	4회	3회	2회	1회
기업수	23	2	5	7	9
평균지원금액	41,550	72,591	67,069	45,591	17,333

주: 컨소시엄 과제 참여 기업은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상기업수는 2015년 371개에서 2018년 510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산업분야의 창업기업이 증가하면서 기업 매출액 규모별 비중에서도 1억 미만 기업이 2015년 57.4%에서 2016년 65.0%로 높아졌다.

[연도별·유형별 기상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기준)	예보	예보/ 컨설팅	예보/ 장비	예보/ 컨설팅 /장비	예보/ 컨설팅/ 장비/ 감정	컨설팅	컨설팅 /장비	장비	계
2016년	2	3	7	12	1	5	11	330	371
2017년	2	4	7	11	1	7	13	410	455
2018년	3	5	5	13	1	10	12	461	510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 매출액별 기상기업 현황]

(단위: %)

구분 \ 매출액	1억 미만	1억~5억	5억~10억	10억~50억	50억 이상	계
2015년 기준	57.42	21.29	8.71	10.65	1.94	100
2016년 기준	64.95	15.98	9.02	8.76	1.29	100

주: 2018년 기상산업 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는 10월 말 공표 예정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과 기상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모든 기상기업이 성장지원센터 입주를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한 검토를 거쳐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상기업 위주로 집중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상산업분야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단계별 지원이 필요한 기상기업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기술원의 성장지원사업은 성장지원센터 내 제한된 입주기업²⁾에게만 지원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전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성장지원센터 내 입주기업만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성장지원자금이 필요한 모든 기상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의 연도별 입주기업 모집경쟁률을 살펴보면, 평균 1.4 : 1 수준이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쟁률]

예산항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신청기업 수(A)	20	4	12	11	47
선정기업 수(B)	15	4	9	5	33
경쟁률	1.3 : 1	1 : 1	1.3 : 1	2.2 : 1	1.4 : 1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6-2. 날씨경영 오픈마켓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날씨경영 활성화를 위해 날씨경영 솔루션과 콘텐츠 등을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확산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마켓플레이스인 ‘날씨경영 오픈마켓’을 구축(2015.12.)하였다. 또한 기상기후산업의 기술거래를 통한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장터 시스템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도 구축(2015.12.)하여 운영하고 있다.

[날씨경영 오픈마켓 및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300	70	70	70
날씨경영 오픈마켓	200			
합계	500	70	70	70

주: 2015년은 구축비용, 2016~2018년은 운영비용임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분석의견

날씨경영 오픈마켓의 제품 등록과 판매 실적이 미흡하므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날씨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날씨경영 지원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하여 날씨경영 확산에 기여
날씨경영 컨설팅·교육 지원	날씨경영 우수기업 및 일반기업 대상 컨설팅, 전문교육 지원
날씨경영 문화 확산	날씨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날씨경영 지식포럼 등
날씨경영 오픈마켓	기상기업-수요기업 간 날씨경영 솔루션 및 콘텐츠 거래 지원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특히, 날씨경영 오픈마켓은 기상 콘텐츠 확보 및 홍보를 통한 콘텐츠 교류 촉진과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날씨경영 솔루션과 콘텐츠를 등록하여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날씨경영 오픈마켓에 2016년 13건, 2017년 43건의 제품과 솔루션이 등록되었지만, 판매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3건에 불과했으며, 2018년은 등록과 판매건수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³⁾

[날씨경영 오픈마켓 등록 및 판매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9월
등록건수	13	43	0
판매건수	2	3	0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날씨경영 오픈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기술거래사이트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 대외 노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등록 및 판매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6월
등록건수	23	75	12
판매건수	59	71	0

주: 2018년 6월 기준

자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또한, 오픈마켓 리빙랩⁴⁾ 개념 도입을 통해 수요층이 필요한 오픈마켓 솔루션을 공유하고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18년에 날씨경영 오픈마켓의 등록 건수가 아직 없는 이유에 대해 등록 제품과 솔루션의 검증체계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심의위원회를 도입하였는데, 상시적인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점 때문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리빙랩(living lab)이란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한 사용자 참여형 문제해결방식을 말한다.

이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날씨경영 오픈마켓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과의 통합 방안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이승재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박혜진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조가영 예산분석관
김태은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8년 10월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일칼라콤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42-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